

【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

결 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세 입 세 출 결 산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 기 금 결 산 】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201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결산 개요	1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
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
나. 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3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4
1) 세입결산 총괄	4
2) 세출결산 총괄	5
나. 일반회계	6
1) 세입결산	6
2) 세출결산	8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
1) 세입결산	15
2) 세출결산	16
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7
1) 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17
2) 세출결산	17
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8
1) 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18
2) 세출결산	18

3. 기금결산	19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9
1) 수입결산 총괄	19
2) 지출결산 총괄	20
나. 고용보험기금	21
1) 수입결산	21
2) 지출결산	2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3
1) 수입결산	23
2) 지출결산	25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6
1) 수입결산	26
2) 지출결산	27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8
1) 수입결산	28
2) 지출결산	28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29
1) 수입결산	29
2) 지출결산	30

II. 검토의견 **32**

1. 총괄 **32**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점검(성과보고서)	32
나. 201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검토	36
1) 2014년 신규사업의 집행실적 점검 : 집행부진 사업의 개선 필요	36

2) 주요 증액사업 집행실적 점검 : 증액사업의 상세한 예산집행계획 심사 필요.	39
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검토	41
1)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과다	42
2)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지침 수립 미흡	44
라. 정책연구사업 관리 미흡	45
2. 일반회계	47
가. 총괄	47
1) 세입: 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 필요	47
2) 세입: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제고 필요	49
나.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51
1)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51
2) 청년고용촉진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53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법적의무사항 미이행	55
4)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57
5) 고용센터 인력지원(1031-300)	59
6) 직업안정기관 운영(1032-301)	61
7)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1032-310)	69
8)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1034-303) : 사업내실화 필요	74
9) 해외취업지원(1035-304)	77
10)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1036-303)	86
11) 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90
12)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1037-310)	98
1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43-301)	102
14) 청년창직인턴제(1043-303)	109
15)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111
16) 한국잡월드운영(1049-301)	114
17)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300)	118

18)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1058-300)	125
19) 해외인턴사업(1059-300)	131
다. 직업능력개발사업(1100 프로그램)	135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135
2)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300)	137
3)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1148-300)	146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153
1) 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153
2)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338-300) : 성과 저조	154
마. 노사정책 프로그램(2000 프로그램)	156
1) 노사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156
2)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2032-301)	157
3)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161
바.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70
1)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170
2) 근로감독역량강화(3031-300)	171
3)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3031-302)	173
4) 근로감독활동지원(3032-306)	178
사. 국제고용노동협력(5000프로그램)	181
1)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181
2)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방법 개선 필요	182
3)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규정 준수	184
4)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5032-303)	186
5)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5033-309)	190
아. 고용노동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195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95
2)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7039-309)	198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1
가. 세입: 해당 없음	201
나. 세출	201
1) 세출결산 개요	201
다.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202
1) 산업재해예방사업 총괄	202
2) 진폐근로자복지(4131-302)	203
4. 고용보험기금	205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205
1)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205
2)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 참여율 제고 필요	208
나.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213
1) 고용정책사업 총괄	213
2)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1045-351)	214
3) 고용촉진지원금(1046-350)	218
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1049-354)	221
5)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050-350)	225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1056-351)	227
7)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1083-350)	231
8)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용자) 및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236
9) 자영업자 실업급여(1092-350)	240
다. 직업능력개발사업(1100 프로그램)	243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43
2) 근로자능력개발지원(1146-351)	245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147-350)	247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48-350)	255

5) 숙련기술장려사업(1150-354)	259
6)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1190-351)	266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273
1) 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273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1345-350)	274
3)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1345-352)	278
4)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1345-356)	283
5) 임금피크제지원금(1347-351)	286
6)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1347-356)	293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96
가. 산재기금 총괄	296
1) 산재예방요율제 운용 현황 점검	296
2) 경상이전수입 수납률 관리 필요	300
3)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절차적 개선 모색 : 산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제공	302
나. 산재보험 프로그램(4000 프로그램)	303
1)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303
2) 산재보험급여(4051-350)	305
3) 맞춤형서비스 지원(4053-350)	312
4) 산재보험 급여관리(4053-350)	316
5) 산재병원지원(4054-350)	318
6) 연구기관지원(4054-353)	322
다.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4100 프로그램)	326
1)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결산 개요	326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327
3)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330
4) 만성흡입독성시설 신축(4156-351)	331

라. 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7000 프로그램)	334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7084-209)	334
6. 임금채권보장기금	338
가. 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338
1) 체당금지급(3053-303)	338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345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52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총괄	352
나.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354
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입의 과소계상	357
라. 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359
1)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453-304)	359
2) 장애인취업지원(1456-311)	365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367
8. 근로복지진흥기금	372
가.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372
1)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3061-302)	372
2)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3061-314)	377
3)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14)	380
Ⅲ.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85

【 참고 자료 】

- 【참고자료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개요 389
- 【참고자료 2】 고용영향평가사업 정산조서 390
- 【참고자료 3】 소속기관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 391
- 【참고자료 4】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회수실적 제고방안 399
-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동 사업에 관한 협약서 403

Ⅰ . 결 산 개 요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에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의 99.9%를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 구조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에 특회계	계
예산액	58,413	30	58,443
비 중	99.95	0.05	100.0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세출예산의 97.4%를 일반회계가, 2.1%를 에특회계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농특회계와 광특회계는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 구조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계	광특회계	계
예산액	20,478	8	435	98	21,019
비 중	97.43	0.04	2.07	0.46	100.0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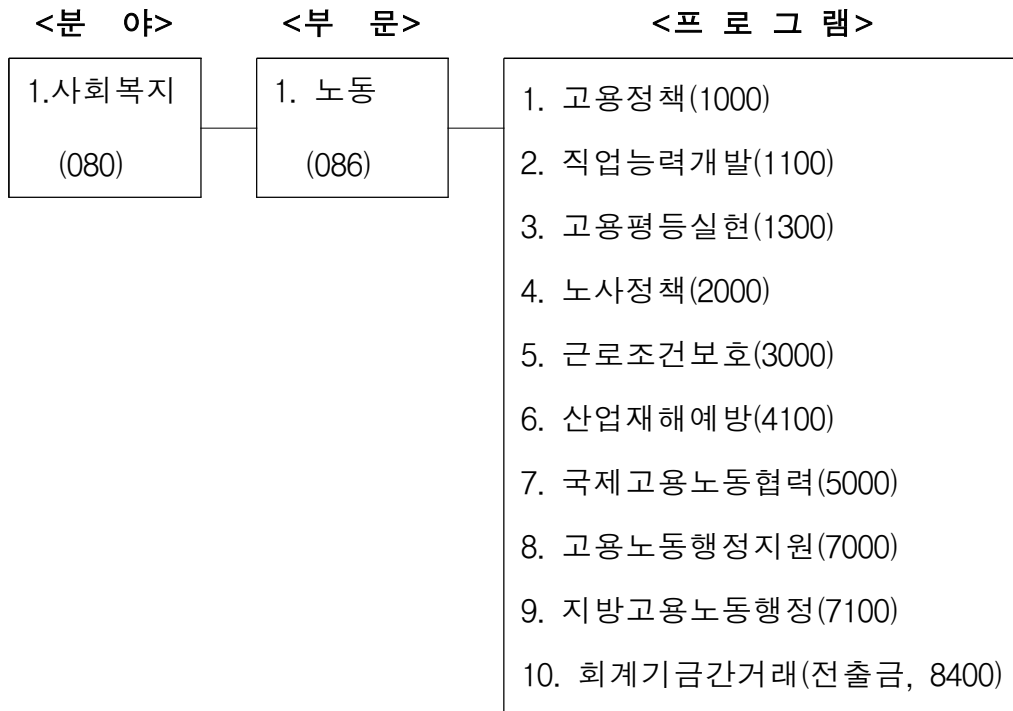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고용노동부 예산은 사회복지(080)분야에 속한 노동(086)부문에 해당되며,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 분야, 1 부문, 10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10개의 프로그램에는 다수의 단위사업이 있고, 각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이 있으며, 이 검토보고서는 주로 세부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58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03억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996억원임.

미수납액은 306억원, 불납결손액은 1억원,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6.5%로 전년 대비 4.2%p 감소하였음.

징수결정액 및 세입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의 증가와 범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증가에 따른 것임.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84	1,303	996	1	306	76.5
	(541)	(1,166)	(941)	(-)	(225)	(80.7)
일반회계	584	1,104	809	0	294	73.3
	(541)	(1,161)	(939)	(-)	(222)	(80.9)
특별회계	0.3	199	187	1	12	93.7
	(0.4)	(5)	(1.6)	(-)	(3.6)	(30.4)

주: 괄호는 2013회계연도 결산

2) 세출결산 총괄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1,019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67억원 및 예비비 185억원(중복 계산¹⁾)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1,856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8%인 2조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1억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원으로 전년보다 453억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133억원으로 전년보다 391억원 감소하였음.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1,019	467	369	21,856	20,708	14	1,133	94.8
	(20,851)	(33)	(44)	(20,928)	(18,937)	(467)	(1,524)	(90.5)
일반회계	20,478	467	185	21,130	19,989	14	1,127	94.6
	(20,291)	(33)	(44)	(20,368)	(18,385)	(467)	(1,516)	(90.3)
농특회계	8	0	0	8	8	0	0	100.0
	(8)	(0)	(0)	(8)	(8)	(0)	(0)	(100.0)
에특회계	435	0	184	619	613	0	6	99.0
	(466)	(0)	(0)	(466)	(458)	(0)	(8)	(98.3)
광특회계	98	0	0	98	98	0	0	100.0
	(86)	(0)	(0)	(86)	(86)	(0)	(0)	(100.0)

주: 1. 괄호는 2013회계연도 결산

2. 일반회계 예비비와 에특회계 예비비는 동일한 금액이나, 예산현액 합계액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표시됨.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이 에특회계로 전입되어, 에특회계 예비비로 지출됨에 따라 중복 계산되는 것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84억 1,300만원 이고, 징수결정액은 1,103억 6,800만원임. 이 중 73.3%인 809억 3,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은 2백만원, 미수납액은 294억 2,6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225억 2,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58,413	110,368	80,939	2	29,426	73.3
	(54,092)	(116,078)	(93,909)	(0)	(22,169)	(80.9)
○ 재산수입	692	1,868	1,653	0	215	88.5
	(307)	(1,868)	(1,696)	(-)	(172)	(90.8)
- 관유물 대여료	22	22	22	0	0	100.0
	(21)	(24)	(24)	(-)	(-)	(100.0)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670	1,846	1,630	0	215	88.3
	(286)	(1,844)	(1,672)	(-)	(172)	(90.7)
○ 경상이전수입	57,712	108,190	78,984	2	29,204	73.0
	(53,765)	(114,200)	(92,203)	(-)	(21,997)	(80.7)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24,697	56,515	36,940	2	19,573	65.4
	(18,730)	(46,956)	(33,258)	0	(13,697)	(70.8)
- 변상금및위약금	2	288	10	0	278	3.4
	(2)	(29)	(25)	(-)	(4)	(86.2)
- 가산금	51	751	145	0	606	19.3
	(50)	(364)	(87)	(0)	(277)	(23.9)
- 기타 경상이전 수입	32,962	50,637	41,890	0	8,746	82.7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34,983)	(66,852)	(58,833)	(-)	(8,019)	(88.0)
○ 재 화 및 용역 판매 수입	9	10	9	0	1	92.4
	(10)	(11)	(10)	(-)	(-)	(100.0)
○ 관유물매각대	0	299	293	0	6	98.0
	(10)	(-)	(-)	(-)	(-)	(-)

주: 괄호는 2013회계연도 결산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103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1,000만원 감소하였고, 2014년도 수납액은 809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7,000만원(13.9%)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73.3%로 전년대비 7.6%p 감소하였음.

미수납액 294억 2,600만원은 전년 대비 72억 5,700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그 주요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16억원, 이행강제금 79억원, 기타경상이전 수입 87억원 등임.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92억원, 납기 미도래 68억원, 기타 25억원임.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2011년 83.5%에서 2014년 73.3%로 1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미수납액
2010	15,577	37,179	25,402	163.1	68.3	11,329
2011	13,044	63,306	52,837	405.1	83.5	9,943
2012	41,231	94,122	77,692	188.4	82.5	15,904
2013	54,092	116,078	93,909	173.6	80.9	22,169
2014	58,413	110,368	80,939	138.6	73.3	29,426

2) 세출결산

가) 총 괄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2조 291억원보다 0.9% 증가한 2조 478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67억원과 예비비 18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1,130억원임.

지출액은 1조 9,98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를 지출하였고, 주요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고용정책(59.7%)
1조 1,935억원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등 직업능력개발(14.6%)
2,916억원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등 고용평등실현(1.1%)
225억원

- 노사발전재단지원 등 노사정책(1.0%)	199억원
-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등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0.9%)	182억원
- ILO분담금 등 국제고용노동협력(0.7%)	136억원
- 청사관리 및 인건비 등 고용노동행정지원(17.2%)	3,435억원
- 회계간 거래 및 회계기금간 거래(4.8%)	96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12억원임.

불용액은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77억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 221억원, 취업 성공패키지지원 145억원, 장년인턴제 90억원,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 57억원,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55억원, 고용센터 인력지원 45억원, 해외취업지원 34억원 등임.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합 계	20,478	467	185	±195	21,130	19,989	14	1,127	94.6
	(20,291)	(33)	(44)	(±447)	(20,368)	(18,385)	(467)	(1,516)	(90.3)
고용정책	12,103	456	0	±115	12,559	11,935	0	623	95.0
	(12,088)	(32)	(0)	(±417)	(12,120)	(10,519)	(456)	(1,146)	(86.8)
직업능력개발	3,200	0	0	0	3,200	2,916	0	284	91.1
	(3,383)	(0)	(0)	(0)	(3,383)	(3,136)	(0)	(246)	(92.7)
고용평등실현	390	0	0	±21	390	225	12	153	57.5
	(262)	(0)	(0)	(0)	(262)	(212)	(0)	(50)	(81.0)
노사정책	201	0	0	0	201	199	0	3	98.7
	(191)	(0)	(0)	(0)	(191)	(183)	(0)	(8)	(95.7)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191	0	0	±2	191	182	0	10	95.0
	(210)	(0)	(0)	(±1)	(210)	(195)	(0)	(14)	(93.1)
국제고용노동 협력	149	0	0	0	149	136	0	13	91.2
	(139)	(0)	(0)	(0)	(139)	(137)	(0)	(2)	(98.2)
고용노동 행정지원	3,449	11	0	±57	3,460	3,418	1	40	98.8
	(3,323)	(1)	(44)	(±29)	(3,368)	(3,308)	(11)	(49)	(98.2)
지방고용노동 행정	17	0	0	0	17	17	0	1	96.6
	(18)	(0)	(0)	(0)	(18)	(17)	(0)	(0)	(97.3)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778	0	185	0	963	963	0	0	100.0
	(678)	(0)	(0)	(0)	(678)	(678)	(0)	(0)	(100.0)

주: 괄호는 2013회계연도 결산

나) 전용 내역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총 194억 7,800만원임.

주요 전용내역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참여자수당 부족액 충당을 위해 68억원, 고용복지센터 확충을 위해 24억 1,900만원, 세월호 희생자가족 지원을 위해 23억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금 액
합 계	19,478		19,478
고용정책	11,519	○ (긴급재난특별고용지원) 사업을 신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위탁사업비) : △1,70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000-1055) : △600	2,300
		○ (직업안정기관 운영) 고용복지센터 신규시설비 및 기존센터 유지보수시설비 전용 - 직업안정기관운영(자산취득비 등→시설비): △1,319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000-1055) : △1,100	2,419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참여자수당 부족액 68억원 전용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위탁사업비→민간경상보조) : △6,800	6,800
고용평등 실현	2,110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자치단체에 직접 위탁하여 사업 실시하기 위한 전용 - 사회공헌일자리지원(위탁사업비 등→자치단체경상보조) : △2,110	2,11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173	○ (근로감독활동지원) 근로감독활동비 부족에 따른 승인전용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기타직보수→특정업무경비) : △173	173
기관 운영 등	5,676	○ (노사정위원회운영) 노사정위원회 청사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등 전용	288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금 액
		- 노사정위원회운영(임차료 등→시설비, 자산취득비) : △288	
		○ (고객상담센터운영) 고객상담센터 증원에 따른 승인 및 자체전용 -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00-7036) : △485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등(7000-7011) : △30 - 노사정위원회운영(7000-7040) : △50	565
		○ 기타 자체전용	4,823

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총 14억 1,500만원으로,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1억 5,700만원이 이월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이월사유
합 계	1,415		
고용정책	46	고용센터인력지원 38	연구용역의 설문조사 항목 및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잔금 이월
		직업안정기관운영 6	나라장터와 디브레인의 연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14.12.31. 정상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15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사회적기업육성 2	'14년도 사회보험료 미지급금 이월
직업능력개발	17	실업자능력개발지원 17	12월 훈련비·훈련장려금 지급

고용평등 실현	1,234	장년취업인턴제 77	감시단속적 근로자 공익광고를 제작하면서 '14.12.30~'15.1.3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1,157	'14.12.31.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14년 채용 인원예 대한 지원 필요(지원기간 2년)
고용노동 행정지원	118	노사정위원회운영 118	위원회 회의실의 방송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전용 결정하였으나, 전용승인이 '14.12.23에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라) 불용액 내역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1,127억 2,300만원임. 주요 불용내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277억 4,300만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220억 7,1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45억 1,200만원 등임.

(단위: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112,723		
고용정책	62,325	고용센터 인력지원 집행잔액	4,465
		해외취업지원 집행잔액	3,440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집행잔액	14,512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집행잔액	1,864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집행잔액	5,548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잔액	27,743
		직업안정기관운영 집행잔액 등	4,753
직업능력 개발	28,437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집행잔액	22,07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집행잔액	2,983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집행잔액	1,276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2,107
고용평등 실현	15,335	장년취업인턴제 집행잔액	8,964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집행잔액	5,699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집행잔액 등	672
노사정책	257	상생의노사문화구축 집행잔액	216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집행잔액 등	41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963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집행잔액	575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집행잔액	126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집행잔액 등	262
국제노동 협력	1,313	ILO분담금(ODA) 집행잔액	1,126
		고용노동분야통상협상대책추진 집행잔액	89
		외국인취업자관리 집행잔액 등	98
기관 운영 등	4,093	본부인건비 집행잔액	143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집행잔액	960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집행잔액	263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집행잔액	422
		청사이전지원 집행잔액	479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집행잔액 등	1,826

마) 예비비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184억 7,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됨.

예비비의 용도는 일반회계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진폐근로자)으로, 184억 7,1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액으로 사용함.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8,471	18,471	0	0
○ 전출금	18,471	18,471	0	0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해 징수결정액은 199억 3,800만원임. 이 중 186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3.7%이며, 미수납액은 11억 5,800만원임.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폐광 등 경영악화에 따른 진폐위로금 등의 과오 지급 회수금 11억 5,800만원임.

[2014년도 에특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0	19,938	18,679	100	1,158	93.7
○ 기타재산수입	-	1	1	-	-	100.0
○ 법정부담금	7	104	4	100	-	3.8
○ 기타경상이전수입	23	1,362	203	-	1,158	14.9
○ 일반회계 전입금	-	18,471	18,471	-	-	100.0

주: 백만원 이하 절사함에 따라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음.

2) 세출결산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9억 4,300만원으로, 이 중 61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으 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건강진단사업에서 발생하였음.

[2014년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합 계	43,472	-	18,471	-	61,943	61,339	-	604	99.0
진폐근로자 보호	43,472	-	18,471	-	61,943	61,339	-	604	99.0

[2014년도 에특회계 불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합 계		604	
진폐근로자 보호	건강진단	588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건수 및 정밀 진단자 수 감소 * '11년 10,882건→'13년 7,396건→'14년 7,080건
	진폐근로자복지	5	진폐근로자 고령화로 신규 수급자 미발생 및 고등학생 자녀 졸업 등으로 장학금수급 대상자수 감소 * '12년 10명 → '13년 8명, '14년 9명
	진폐예방기본경비	11	진폐사업 운영경비 절감액

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2014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FTA 체결에 따른 이농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1,9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음.

[2014년도 농특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합 계	819	-	-	-	819	819	-	-	100.0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819	-	-	-	819	819	-	-	100.0

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 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9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14년도 광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합 계	9,790	-	-	-	9,790	9,790	-	-	100.0
제주기관 업무지원	9,515	-	-	-	9,515	9,515	-	-	100.0
자치단체 직업 능력개발지원	275	-	-	-	275	275	-	-	100.0

3. 기금결산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 수입결산 총괄

2014년 기금운용계획현액을 보면 고용보험기금 11조 2,91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조 8,854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조 495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28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854억원 등 총 25조 40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조 4,282억원 (15.9%)이 증가하였음.

[2014년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50,379	250,401	235,506	196,851	2,434	36,221	83.6
	(216,097)	(216,097)	(200,926)	(165,816)	(1,793)	(33,316)	(82.5)
고용보험기금	112,910	112,910	105,650	94,297	321	11,032	89.3
	(95,411)	(95,411)	(92,631)	(82,511)	(182)	(9,938)	(89.1)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18,854	118,854	100,405	85,298	852	14,255	85.0
	(103,717)	(103,717)	(81,050)	(67,446)	(454)	(13,150)	(83.2)
임금채권 보장기금	10,495	10,495	19,641	8,210	1,178	10,253	41.8
	(8,325)	(8,325)	(17,375)	(6,729)	(1,091)	(9,555)	(38.7)
근로복지 진흥기금	2,832	2,854	3,454	2,832	65	557	82.0
	(3,920)	(3,920)	(4,439)	(3,807)	(58)	(573)	(85.8)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5,288	5,288	6,356	6,214	18	124	97.8
	(4,724)	(4,724)	(5,431)	(5,323)	(8)	(100)	(98.0)

주: 괄호는 2013회계연도 결산현황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9조 4,297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조 5,298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210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214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832억원 등 총 19조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035억원 증가(18.7%)하였음.

2) 지출결산 총괄

기금 전체의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25조 407억원보다 21.4%(5조 3,550억원)가 적은 19조 6,851억원(계획 대비 78.6%)을 집행하였음.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고용보험기금(3,52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47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20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9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85억원)의 불용 등 집행부진에 따름.

[2014년도 기금 지출결산 총괄]

(단위:억원)

구 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지 출 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사업비	여유자금			
합 계	250,379	250,407	196,851	123,636	73,214	8	3,972	78.6
	(216,097)	(216,110)	(165,816)	(118,537)	(47,278)	(5)	(5,042)	(76.7)
고용보험기금	112,910	112,916	94,297	70,026	24,271	7	3,522	83.5
	(95,411)	(95,413)	(82,511)	(64,812)	(17,699)	(5)	(2,547)	(86.5)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18,854	118,854	85,298	47,030	38,268	1	147	71.8
	(103,717)	(103,717)	(67,446)	(46,097)	(21,348)	(0)	(1,953)	(65.0)
임금채권 보장기금	10,495	10,495	8,210	2,953	5,257	0	20	78.2
	(8,325)	(8,325)	(6,729)	(2,550)	(4,179)	(0)	(480)	(80.8)
근로복지 진흥기금	2,832	2,854	2,832	1,055	1,776	0	85	99.2
	(3,920)	(3,931)	(3,807)	(2,048)	(1,759)	(0)	(20)	(96.8)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5,288	5,288	6,214	2,572	3,642	0	198	117.5
	(4,724)	(4,724)	(5,323)	(3,030)	(2,293)	(0)	(42)	(112.7)

주: 1. 불용액은 사업비 지출현액 중 미집행액[여유자금차액(계획현액-지출액)미포함]
2. 괄호는 2013회계연도 결산현황

나. 고용보험기금

1) 수입결산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0조 5,650억원 대비 89.3%인 9조 4,297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1,032억원 미수납되었으며, 321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계	112,910	105,650	94,297	321	11,032	89.3
○ 사회보장기여금	79,521	89,687	80,166	229	9,292	89.4
- 고용주부담금	51,329	57,482	51,503	139	5,840	89.6
- 피고용자분담금	28,192	32,205	28,663	90	3,452	89.0
○ 재산수입	1,563	1,299	1,297	0	2	99.8
- 건물대여료	1	2	2	0	0	100.0
- 기타민간이자수입	49	38	38	0	0	100.0
- 기타 재산수입	1,513	1,259	1,257	0	2	99.8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01	45	45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399	1,197	1,197	0	0	100.0
· 기타재산수입	12	17	15	0	2	88.2
○ 경상이전수입	1,086	2,768	938	92	1,738	33.9
- 가산금	33	86	22	6	58	25.6
- 연체금	312	1,256	210	84	962	16.7
- 기타경상이전수입	741	1,426	706	2	718	49.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4	0.8	0.2	-	0.6	27.4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18	913	913	0	0	100.0
○ 관유물매각대	0	21	21	-	-	100.0
- 건물매각대	0	17	17	-	-	100.0
- 토지매각대	0	4	4	-	-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9,851	10,589	10,589	-	-	100.0
- 정부예금 회수	136	317	317	-	-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985	1,500	1,500	-	-	1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6,730	8,773	8,773	-	-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72	372	372	-	-	100.0
- 일반회계전입금	372	372	372	-	-	100.0

2) 지출결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보험운영 등에 사용되며, 2014년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7,933억원(계획 대비 90.4%), 실업급여지급에 4조 1,525억원(계획 대비 103.9%)을 집행하였음.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 당초 계획액 11조 2,91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11조 2,916억원 중 83.5%인 9조 4,297원이 지출되었고, 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2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12,910	5	-	112,916	94,297	7	3,522
【 사업비 】	70,549	5	3,001	73,555	70,026	7	3,522
○ 고용정책	45,222	2	2,582	47,805	46,102	2	1,701
- 고용유지지원금	500	-	-	500	405	-	95
- 고용촉진지원금	305	-	552	857	843	-	14
- 고용창출지원사업	1,132	-	△192	940	347	-	593
- 건설근로자지원금	143	-	-	143	142	-	1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084	-	△12	1,072	824	-	248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04	-	-	304	304	-	-
- 민간고용서비스지원	565	0.4	12	577	552	-	26
- 지역고용촉진지원	811	-	-	811	789	-	22
- 실업급여	39,978	-	2,221	42,199	41,525	-	674
- 고용보험징수관리	153	-	-	153	152	-	1
- 자영업자 실업급여	50	-	-	50	36	-	14

사 업 명	계 획액	전년 이월	계 획 변경액	계 획 현액	지 출액	이월액	불용액
- 기타	197	1.5	-	199	183	2	13
○ 직업능력개발	14,597	1	-	14,598	13,356	3	1,239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996	-	-	3,996	3,702	-	293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857	-	-	2,857	2,723	-	135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2,115	-	-	2,115	1,883	0.5	231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2,397	-	-	2,397	1,936	1.5	459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 개발사업지원	1,306	-	-	1,306	1,213	-	94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 사업지원	1,137	-	-	1,137	1,129	-	8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 개발사업지원	335	-	-	335	335	-	-
- 기타 능력개발지원	454	1	-	455	435	1	19
○ 고용평등실현	9,630	0.2	419	10,049	9,490	0.3	558
- 여성고용안정지원	1,589	-	-	1,589	1,531	0.3	58
- 모성보호육아지원	6,982	-	419	7,401	7,401	-	-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038	0.2	-	1,038	544	-	494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2	-	-	12	12	-	-
- 고용환경개선융자(융자)	8	-	-	8	3	-	5
○ 장애인고용증진	29	-	-	29	29	-	-
○ 고용노동행정지원	1,073	2	-	1,075	1,050	1	24
【여유자금 운용】	42,361	-	-3,001	39,360	24,271	-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결산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0조 405억원 대비 85.0%인 8조 5,298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4,25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852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18,854	100,405	85,298	852	14,255	85.0
○ 사회보장기여금	61,175	68,253	58,007	446	9,800	85.0
- 고용주부담금	61,132	68,205	57,967	445	9,792	85.0
- 피고용자부담금	43	48	40	1	8	83.3
○ 재산수입	2,606	2,809	2,809	0	0	100.0
- 토지대여료	7	9	9	0	0	100.0
- 건물대여료	1	2	2	0	0	100
- 기타민간이자수입	121	121	121	0	0	100.0
- 기타재산수입	2,477	2,677	2,677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1,285	5,955	1,094	406	4,455	18.4
- 벌금	1	2	0	0	2	0.0
- 가산금	47	160	39	14	107	24.4
- 기타경상이전수입	1,237	5,793	1,055	392	4,346	18.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	97	97	0	0	100.0
- 잡수입	83	97	97	0	0	100.0
○ 관유물매각대	41	72	72	0	0	100.0
- 건물매각대	11	10	10	0	0	100.0
- 토지매각대	30	62	62	0	0	100.0
○ 용자및전대채권 원금회수	1,051	1,191	1,191	0	0	100.0
-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1,051	1,191	1,191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546	3,330	3,330	0	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55	155	155	0	0	100.0
- 기금예탁원금 회수	3,000	3,000	3,000	0	0	1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391	175	175	0	0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9,067	18,698	18,698	0	0	100.0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71	251	251	0	0	100.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291	0	0	0	0	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2,605	18,447	18,447	0	0	100.0

2) 지출결산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은 11조 8,854억원중 8조 5,298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로 4조 7,030억원을 지출하고, 14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3조 4,668억원임.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당초 계획액	전년 이월	계 획 변경액	계 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8,854	0	0	118,854	85,298	1	147
【 사 업 비 】	47,155	0	23	47,178	47,030	0	147
○ 산재보험	40,852	0	23	40,875	40,769	0	105
- 산재보험급여	39,305	0	0	39,305	39,266	0	39
- 산재근로자재활	588	0	0	588	559	0	29
- 요양관리	53	0	0	53	51	0	1
- 산재의료사업지원	272	0	23	295	292	0	3
- 산재보험시설	41	0	8	49	49	0	0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64	0	0	164	163	0	1
- 산재보험료징수관리	172	0	0	172	171	0	1
- 산재근로자복지 (용자)	257	0	-8	248	218	0	30
○ 산업재해예방	3,287	0	0	3,287	3,255	0	32
- 클린사업장조성	914	0	0	914	913	0	1
- 사고성재해예방	507	0	0	507	493	0	14
- 업무상질병예방	346	0	0	346	340	0	6
- 안전보건문화정착	250	0	0	250	241	0	9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84	0	0	84	83	0	1
- 산재예방시설	151	0	0	151	151	0	0
- 안전보건관리	34	0	0	34	34	0	0

구 분	당초 계획액	전년 이월	계 획 변경액	계 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정보시스템(정보화)							
- 산재예방시설용자	1,002	0	0	1,002	1,002	0	0
○ 노동행정지원	3,016	0	0	3,016	3,005	1	10
- 산재기금운영비	3,010	0	0	3,010	3,000	0	10
-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6	0	0	6	5	1	0
○ 기금간거래 (예탁금)	3,000	0	600	3,600	3,600	-	-
【여유자금 운용】	68,699	0	-623	68,076	34,668	-	-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결산

201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9,64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210억원으로 수납률은 41.8%이고, 불납결손액은 1,178억원임.

[201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0,495	19,641	8,210	1,178	10,253	41.8
○ 재산수입	178	127	125	-	2	98.4
- 기타민간이자수입	1	0.4	0.4	-	-	100.0
- 기타재산수입	177	127	125	-	2	98.4
○ 경상이전수입	4,630	15,796	4,367	1,178	10,251	27.6
- 가산금	1	3	1	-	2	33.3
- 법정부담금	3,575	3,869	3,424	12	433	88.5
- 기타경상이전수입	1,054	11,924	942	1,166	9,816	7.9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	2	2	-	-	100.0

구 분	계 획 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	2	2	-	-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454	3,494	3,494	-	-	100.0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3	39	39	-	-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749	3,202	3,202	-	-	1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662	253	253	-	-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2	222	222	-	-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	1	1	-	-	100.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200	200	200	-	-	100.0
- 예탁금이자수입	31	21	21	-	-	100.0

2) 지출결산

201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1조 495억원 중 8,210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8.2%이며, 이 중 사업비로 2,953억원을 지출하고, 2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257억원임.

[201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당 초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 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10,495	-	-	10,495	8,210	20
【사 업 비】	2,865	-	108	2,973	2,953	20
○ 체당금 지급	2,525	-	108	2,633	2,632	1
○ 무료법률구조지원	203	-	-	203	197	6
○ 체당금조력지원	4	-	-	4	3	1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용자	30	-	-	30	24	6
○ 고용노동행정지원	103	-	-	103	97	6
【여유자금운용】	7,630	-	-108	7,522	5,257	0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결산

201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6,356억원이며, 이 가운데 97.8%인 6,214억원이 수납되었고, 124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8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1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288	6,356	6,214	18	124	97.8
【자 체 수 입】	3,004	3,812	3,670	18	124	96.3
○ 부담금	2,802	3,520	3,420	12	88	97.2
○ 가산금	7	8	5	1	3	62.5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55	115	76	5	33	66.1
○ 용자금회수	71	73	73	-	-	100.0
○ 재산수입	69	96	96	-	-	100.0
【정부내부수입】	250	250	250	-	-	100.0
○ 일반회계전입금	250	250	250	-	-	100.0
【여유자금회수】	2,034	2,294	2,294	-	-	100.0

2) 지출결산

201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5,288억원 가운데 6,214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117.5%이며,

이 가운데 사업비로 41.9%인 2,606억원을 지출하고, 198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3,608억원임.

[201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변경액	계 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5,288	-	5,288	6,214	198
【사 업 비】	2,804	-	2,804	2,606	198
○ 장애인고용장려금	1,417	-	1,417	1,417	-
○ 표준사업장지원	149	-	149	149	-
○ 직업능력개발지원	224	-	224	224	-
○ 보조공학기기지원	80	-	80	80	-
○ 장애인취업지원 등	219	-	219	215	4
○ 기금운영비	490	-	490	486	3
○ 복권기금반환금	34	-	34	34	-
○ 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91	-	191	-	191
【여유자금운용】	2,484	-	2,484	3,608	-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결산

2014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3,454억원이며, 수납액은 82.0%인 2,832억원으로 중소복지계정 2,333억원, 신용보증계정 177억원, 실업대책계정 322억원 등이 있음.

[2014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당 초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832	2,854	3,454	2,832	65	557	82.0
○ 중소복지계정	2,462	2,485	2,334	2,333	0	1	100.0
- 자체수입	626	626	588	587	0	1	99.8
- 복권기금전입금	288	311	311	311	0	0	100.0
- 여유자금회수	1,548	1,548	1,435	1,435	0	0	100.0
○ 신용보증계정	146	146	765	177	65	523	23.1
- 자체수입	89	89	686	98	65	523	14.3
- 타계정전입금	58	58	58	58	0	0	100.0
- 여유자금회수	0	0	21	21	0	0	100.0
○ 실업대책계정	223	223	355	322	0	33	90.7
- 자체수입	17	17	52	19	0	33	36.5
- 여유자금회수	206	206	303	303	0	0	100.0

2) 지출결산

2014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2,854억원 가운데 2,832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9.2%이며, 85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014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 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832	0	23	2,854	2,832	0	85
【중소복지계정】	2,462	0	23	2,485	2,333	0	82
○기금관리비	77	0	0	77	73	0	4
○사업운영비	4	0	0	4	4	0	0
○근로복지지원사업비	68	0	3	71	69	0	2
- 문화예술제	6	0	0	6	6	0	0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27	0	0	27	27	0	0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12	0	0	12	12	0	0
- 퇴직연금사업 운영	19	0	0	19	18	0	1
-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4	0	3	7	7	0	0
- 자산운용전산시스템운영	0.3	0	0	0.3	0.3	0	0
○생활안정자금대부	819	0	23	842	766	0	76
○정부내부지출	58	0	0	58	58	0	0
-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 보증계정으로의 전출금	58	0	0	58	58	0	0
○차입금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0.2	0	0	0.2	0.2	0	0
○차입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	0.6	0	0	0.6	0.6	0	0
○여유자금운용	1,436	0	△3	1,433	1,363	0	0
【신용보증계정】	146	0	0	146	177	0	3
○사업운영비	38	0	0	38	36	0	2
○신용보증대위변제	108	0	0	108	107	0	1
○여유자금운용	0	0	0	0	34	0	0
【실업대책계정】	223	0	0	223	322	0	0
○여유자금운용	223	0	0	223	322	0	0

II . 검토의견

1. 총괄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점검(성과보고서)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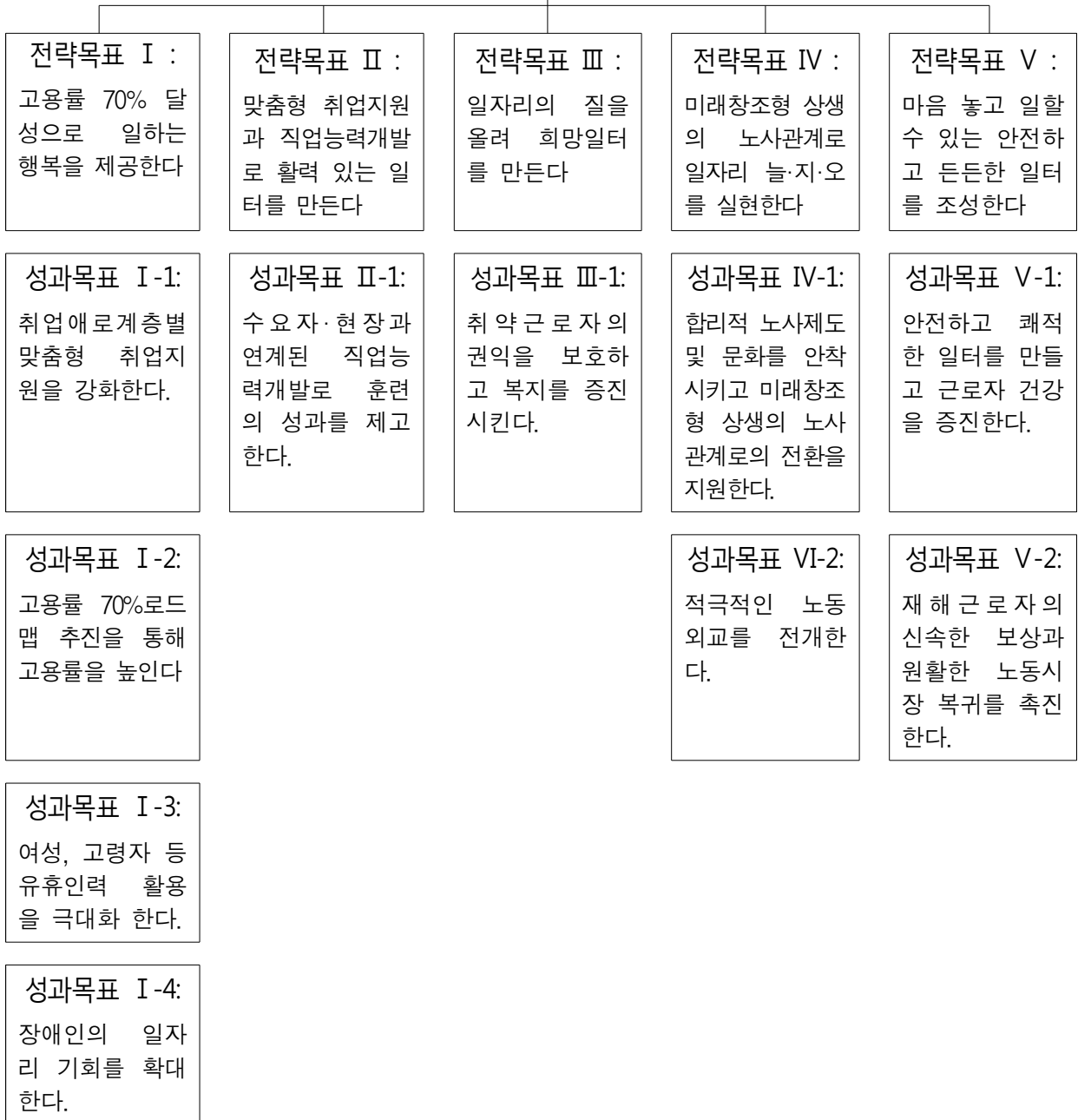
기관별 성과목표체계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로 구성되며,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0개(성과지표 18개), 관리과제 108개(성과지표 25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체계도는 아래와 같음.

[2014년도 고용노동부 전략체계도]

임무 :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달성

비전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

2014년 고용노동부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모두 합한 총 성과지표는 276개이며, 이 중 195개를 달성하여 성과달성률은 70.7%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 75.3%, 2013년 73.3%에 비해 하락한 수치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성과지표수(A)	달성한 성과지표수(B)	성과달성률 (B/A*100)
성과목표	18	8	44.4
관리과제	258	187	72.5
합계	276	195	70.7

이와 같이 전체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률이 하락한 것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하락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성과목표 10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18개의 성과달성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달성 8건, 미달성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없었음. 이는 2013년에 16건을 달성(2건은 초과달성)하였던 것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임.

이에 따라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44.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성과보고서 작성대상인 52개 기관 중 하위 3위 수준²⁾이며, 전체 기관의 평균 달성률인 78.2%에 비해 33.8%p나 낮은 수치임.

2) 고용노동부보다 성과달성률이 낮은 기관은 조달청(33.3%), 문화재청(35.7%)임.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률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5	10	18	-	8	10
		100%	-	44.4%	55.6%

주: 초과달성은 목표의 130% 이상 달성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특히 전략목표 Ⅲ(일
자리의 질)과 전략목표 Ⅳ(상생의 노사관계)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 세부]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비 고 (2013년)
전략목표 Ⅰ: 고용률 70% 달성으로 일하는 행복을 제공한다	4	8	달성 4 미달성 4	초과달성 1 달성 4 미달성 2
전략목표 Ⅱ: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 능력개발로 활력 있는 일터를 만든다	1	2	달성 1 미달성 1	초과달성 1 달성 2
전략목표 Ⅲ: 일자리의 질을 올려 희망일터를 만든다	1	3	미달성 3	달성 3
전략목표 Ⅳ: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 사관계로 일자리 늘·지·오를 실현한다	2	2	미달성 2	달성 2
전략목표 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 는 안전하고 든든한 일터를 조성한다	2	3	달성 3	달성 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를 토대로 재작성

특히, 전략목표 Ⅲ(일자리의 질)의 2014년 예산 집행률이 97.5%이고, 전략목표 Ⅳ(상생의 노사관계)의 2014년 예산 집행률이 95.9%로,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함.

따라서 해당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사업이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를 달성하기에 효율적으로 구성·집행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함.³⁾

나. 201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검토

1) 2014년 신규사업의 집행실적 점검 : 집행부진 사업의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는 2014년 4개의 세부사업(일반회계 3개, 고용보험기금 1개)을 신규로 추진하였음.⁴⁾

신규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9.8%로 가장 저조하고,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집행률은 71.6%,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사업’의 집행률은 79.1%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4개의 신규사업에서 총 76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3) 다만, 전체 결산액 대비 전략목표 Ⅲ과 전략목표Ⅳ의 결산액 비중이 각각 2.9%, 0.4%로 작아서, 예산사업 외의 부분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4) 타부처 사업 이관, 사업 분리 등을 제외한 순수 신규사업을 의미함.

[2014년 신규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 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8,544	1,688	19.8	1,157	5,699
	스펠초월채용시스템 구축	2,490	2,248	90.3	0	242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4,500	3,225	71.6	0	1,275
	소 계	15,534	7,161	46.1	1,157	7,216
고보기금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2,145	1,696	79.1	25	424
합 계		31,068	14,322	50.1	2,314	14,432

주: 해외인턴사업은 2014년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사업이므로 대상에서 제외함.

이월액 및 불용액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에서 발생하였는데, 최근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반회계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은 더욱 큰 문제라고 할 것임.

이와 같이 2014년 신규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에 기인함.

예를 들어,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 예산안 심사 당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동사업이 창출가능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수를 추산한 것이 아니라, ‘고용률 70% 로드맵’ 상의 목표에 따라 2014년에 신규로 창출하여야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수를 기반으로 지원규모를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었음. 실제로 2014년 동사업의 집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그 외에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지연 홍보 미흡, 유인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함.

예를 들어,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사업’은 실제 훈련을 8월부터 시작하는 등 일정이 지연되었고, 홍보 부족 및 기업의 훈련 기피 등으로 모집률이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음.

한편,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도 사업 초기 연도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이러한 사업은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년도인 2014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3년 신규사업의 결산 현황: 2013년 · 2014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3			201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	8,240	65	0.8	5,175	700	13.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5,000	970	19.4	2,997	2,382	79.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3,915	3,911	99.9	3,915	3,914	100.0
자영업자실업급여	2,851	1,620	56.8	4,997	3,618	72.4

세부사업명	2013			201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22,690	17,800	78.4	22,690	13,649	60.2
중견인력경력활용취업지원금	1,404	360	25.6	16,848	10,587	62.8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보급	500	500	100.0	1,215	1,210	99.6
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 양성	2,100	2,100	100.0	2,100	2,100	100.0

따라서 2014년 신규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경우, 2015년에도 집행실적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또한, 향후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은 무리하게 과다 편성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의 수요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나가는 등의 사업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증액사업 집행실적 점검 : 증액사업의 상세한 예산집행 계획 심사 필요.

2014년 예산액이 201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하 ‘주요 증액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 4개⁵⁾의 평균적인 집행률은 97.7%로 양호하였으나, 고용보험기금의 주

5) [2014년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3 예산액	2014년				2015 예산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불용	
일자리대책지원	277	550	500	90.8	50	550
고용영향평가사업	1,964	2,819	3,246	115.1	-427	3,179

요 증액사업은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2014년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증액사업은 12개이며, 수정계획액은 총 3,597억 7,500만원으로, 2013년 계획액인 1,605억 8,5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임.

[2014년 고용보험기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3년 계획	2014년				
		계획		집행액 (B)	불용액 (A-B)	집행률 (B/A*100)
		당초	수정(A)			
합 계	160,585	378,961	359,775	257,871	101,904	71.7
고용창출지원사업	47,662	113,203	94,017	34,723	59,294	36.9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4,755	6,251	6,251	6,074	177	97.2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3,162	80,266	80,266	78,365	1,901	97.6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3	819	819	526	293	64.2
고용보험사업평가	500	800	800	695	105	86.9
자영업자실업급여	2,851	4,997	4,997	3,618	1,379	72.4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905	62,577	62,577	53,227	9,350	85.1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5,429	40,259	40,259	40,259	0	100.0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10,563	22,732	22,732	16,159	6,573	71.1
임금피크제지원금	11,448	29,066	29,066	12,496	16,570	43.0
중견인력경력활용취업 지원금	1,404	16,848	16,848	10,587	6,261	62.8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843	1,143	1,143	1,142	1	99.9

세부사업	2013 예산액	2014년				2015 예산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불용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및보급	500	1,215	1,210	99.6	5	1,215
사회공헌일자리지원	2,140	6,370	5,747	90.2	623	7,002
	4,881	10,954	10,703	97.7	251	11,946

주: 1. 2013년 대비 3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

2.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과 같이 일부 위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증액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이 중 2,578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평균 집행률은 71.7%에 불과함. 특히, ‘고용창출지원’(36.9%), ‘지역고용촉진지원금’(64.2%), ‘임금피크제 지원금’(43.0%), ‘중견인력경력활용취업지원금’(62.8%) 등은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요 증액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앞서 살펴본 신규사업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수요예측 실패로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적절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예산액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예산집행계획을 마련·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⁶⁾ 검토

기금의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⁷⁾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가 부적절하여 개선이 요구됨.

고용노동부의 5개 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⁸⁾이며,

6)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총괄·다부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2015.6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임.

7)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8)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연금성기금과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기금을 의미함.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성 기금⁹⁾임. 5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유형 및 여유자금 규모]

(단위: 억원)

유형	기금명	여유자금 규모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66,78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9,779
사업성	근로복지진흥기금	1,69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018
	임금채권보장기금	6,395

주: 2014년 연중 운용 평잔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총괄·다부처]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10쪽 [표 5] 일부 발췌

1)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과다

사업성 기금의 경우, 기금 여유자금은 기금의 고유 사업에 활용되지 않으므로,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할 경우 기회비용¹⁰⁾을 유발함. 따라서 여유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성 기금의 ‘주요 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을 보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60.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156.3%,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16.6%로 나타나 여유자금의 비중이 높음.¹¹⁾

9)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임.

10) 사업에 활용되어 기금 목적 달성에 기여하거나,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발생 등을 의미함.

11) 44개 사업성 기금의 평균 여유자금 비율은 44.8%임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비중]

(단위: 억원, %)

기 금 명	여유자금 규모(A)	주요 지출 (B)	비중 (B/A*100)
근로복지진흥기금	1,693	1,056	160.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018	2,571	156.3
임금채권보장기금	6,395	2,953	216.6

주: 여유자금은 연중 운용평잔 기준, 주요 지출은 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총괄·다부처]_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16쪽 [표 7] 발췌

이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매년 의무고용률 증가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지출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지차액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2010년 789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4년 4,01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가용자산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이미 받은 바 있음.

이에 2014년 이후 상환예정이었던 380억원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 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예수금 560억원 전액을 2013년에 조기상환하고, 2014년에는 서울맞춤훈련센터 설립 등 장애인직업훈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여유자금이 과다한 상황임.

사업비지출이 2010년 2,033억원에 비해 2014년에는 2,085억원으로 불과 2.6% 증가하는데 그친 점을 볼 때,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직업생

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10년 사업주 부담금 요율이 인상된 이후,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음. 동 기금도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매년 공자기금 예탁을 실시하고 있음.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2010년 1,653억원에서 2014년 6,395억원으로 4배 증가함. 이에 따라 동 기금은 201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중기가용자산 과다판정을 받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가용자산 과다판정을 받은 2개 기금에 대한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유자금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지침 수립 미흡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및 방향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자산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안 및 자산운용체계 등임.

12) 2012년 300억원, 2014년 700억원, 2015년 1,500억원 계획

기획재정부의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산운용지침 작성시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에 대해서 수치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배분안에 대해서는 자산배분에 사용된 방법론과 주요 도출과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은 자산배분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음. 또한 자산운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자산운용지침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여 기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라. 정책연구사업 관리 미흡

2014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연구과제는 총 116건이며, 이 중 1건은 유찰로 인해 취소¹³⁾되었고, 115건의 과제가 수행되었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¹⁴⁾ 제5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 활용상황 등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

13) 「FTA 등 통합협상에서의 고용·노동 분야 논의 대응 기본방향 마련 연구」

14)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에 개정된 것

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것으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총 115건의 정책연구과제 중 53건의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음.¹⁵⁾

53건 중 35건의 과제는 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여전히 진행중(과제선정, 연구자선정 등) 과제로 관리되어 있어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음.

나머지 18건의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해당 과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외부에 공개 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임.

고용노동부는 향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관련 연구자, 국회 등에서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연구에 활용하거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체 없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5) 2015년 5월 기준

2. 일반회계

가. 총괄

세입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의 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그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세입증대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 이하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제재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1) 세입: 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 필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30개 법률에 근거¹⁶⁾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실적이 전체 실적의 90%를 상회함.

2014년 과태료 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420억 7,800만원 중 304억 4,1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2.3%로 2013년 76.2%에 비해 수납률이 감소되었음¹⁷⁾.

16) 부과근거 및 부과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함.

17) 법무부 33.4%, 경찰청 30.5%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치임.

최근 4년간 수납액 증가분이 징수결정액¹⁸⁾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수납액도 매년 상승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액은 총 127억 5,311만원이며, 체납건수는 3만 8,708건에 이릅니다.

[과태료 수입 결산 내역: 2011년~201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11	3,138	16,226	13,168	453	2,605	81.2
2012	7,616	25,595	20,398	506	4,691	79.7
2013	16,033	34,341	26,177	0	8,165	76.2
2014	20,467	42,078	30,441	2	11,645	72.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위반법률별로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법」 위반(3만 2,235건/60억 2,41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3,568건/45억 4,808만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2,529건/15억 8,39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134건, 1억 5,068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¹⁹⁾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세입의 누수라는 측면 외에 과태료

18) 201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 기회 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훈령)」 개정

19) 2015.4.30. 기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과태료관리시스템)

가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세입: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제고 필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것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수단의 하나임.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여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는,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부과된 이행강제금(징수결정액)은 143억 5,800만원이며, 이 중 64억 2,000만원이 수납되고, 79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은 44.7%에 불과함.

[이행강제금 결산 내역: 2011년~2014년]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11	5,604	6,928	2,872	0	4,055	41.5
2012	3,224	9,107	4,551	0	4,556	50.0
2013	2,697	12,540	7,007	0	9,491	55.9
2014	4,160	14,358	6,420	0	7,938	44.7

주: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던 국세징수법(제3장) 제86조(결손처분) 규정이 2011.12.31. 삭제됨에 따라 결손처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관리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런데 2011년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제명령 대비 이행종결 건수의 비율(이행률)은 2011년 81%에서 2014년 77.6%로 하락하였음.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2011~2014년]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제명령	660	802	839	893
이행종결	535	641	635	693
이행률	81.0	79.9	75.7	77.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는 것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나.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1)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4년도 일반회계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센터인력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등 26개 세부사업(전출금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도 당초 사업비는 1조 2,122억 9,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55억 8,200만원을 포함(이·전용 417억 4,700만원)한 예산현액은 1조 2,578억 7,900만원임.

2014년도 집행실적은 1조 1,95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3억 2,5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0%임.

[2014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12,297	45,582	+11,519 -11,519	1,257,879	1,195,510	46	62,325
고용센터인력지원	35,630	0		35,630	31,127	38	4,465
직업안정기관운영	25,142	0	+2,419 -1,319	26,242	25,765	6	470
일자리대책지원	550	0		550	500	0	50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405	0		405	345	0	60
고용노동통계조사	10,341	0		10,341	9,895	0	446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4,962	0		4,962	4,628	0	334
해외취업지원	23,729	0		23,729	20,289	0	3,44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217,085	0	+6,800 -8,500	215,385	200,873	0	14,512
일을 통한 빈곤 탈출상담지원	6,844	0		6,844	6,830	0	14
사회적기업 육성	14,081	0		14,081	13,128	2	951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보조)	111,879	0		111,879	110,943	0	936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29,923	0		29,923	29,260	0	663
긴급재난특별고용 지원	0	0		2,300	2,140	0	160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이전	7,551	0		7,551	7,551	0	0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12,262	0		12,262	12,262	0	0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92,702	45,071		137,773	135,910	0	1,864
청년창직인턴제	9,070	0		9,070	8,767	0	303
고용영향평가사업	2,819	511		3,330	3,246	0	84
한국잡월드운영	7,342	0		7,342	7,342	0	0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400	0		400	377	0	2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33,470	0		33,470	27,922	0	5,548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555,155	0	-1,700	553,455	525,712	0	27,743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개발및보급	1,215	0		1,215	1,210	0	5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구축	2,490	0		2,490	2,248	0	242
해외인턴사업	5,250	0		5,250	5,240	0	10
고용보험기금으로 의 전출금(자영업자 고용보험)	2,000	0	0	2,000	2,000	0	0

2) 청년고용촉진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고용촉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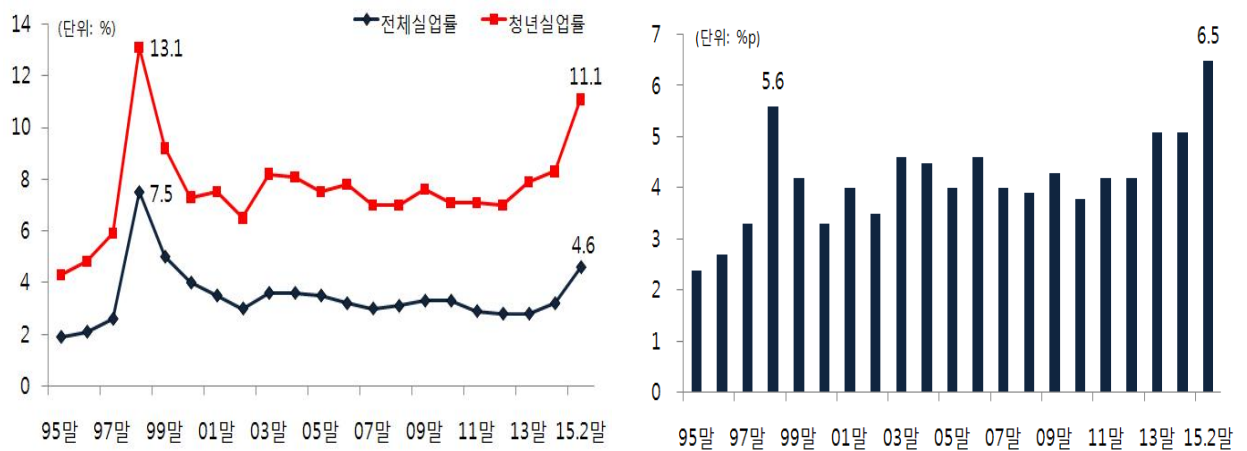
2014년에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4개 부처에서 약 1조 7,740억원(고용노동부 약 8,078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²⁰⁾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 등을 보면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전체실업률은 4.6%이며,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인 청년실업률은 11.1%를 기록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청년실업률 악

20)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정부 성과계획 평가(다부처 사업)

화가 두드러지면서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격차가 6.5%p로 벌어져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98년 말(5.6%p)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실업률 변화주이(1995-2015.2) 및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



자료: 국가통계포털

높은 청년실업률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연동되어 있는 한편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의 대책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3년간 부처별 청년고용촉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처 명	2012년	2013년	2014년
고용노동부	676,370	770,161	807,810
중소기업청	313,176	320,335	308,825
보건복지부	181,281	192,381	190,677
문화체육관광부	117,756	162,510	178,447
외교부	96,356	108,711	119,842
교육부	99,499	155,776	88,737
미래창조과학부	20,227	20,232	20,581
산업통상자원부	17,827	15,502	17,170
여성가족부	15,471	16,051	14,446
국토교통부	5,281	7,400	8,792
구)안전행정부	7,317	6,690	6,816
농림축산식품부	6,362	6,362	6,362
농촌진흥청	8,149	7,990	5,216
산림청	255	254	324
합 계	1,565,327	1,790,355	1,774,04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정부 성과계획 평가(다부처 사업)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법적의무사항 미이행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부처의 청년고용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청년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매년 1월 말까지 청년고

용 촉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하거나,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러나 청년고용 촉진계획이 지정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고, 이행상황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²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30일 이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이 한 이유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여러 부처가 각각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고용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청년고용촉진 일자리사업 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그

21) 고용노동부는 매년 1월 말까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촉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주기적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나, 2014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동 계획을 제출받고 있지 않다가 국회 등의 지적이 있자 2014년 9월이후 각 부처로부터 청년고용 촉진계획을 제출받음.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청년실업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총괄 추진계획(고용노동부),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기획재정부), 산학협력 등 교육(교육부),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산업통상자원부), 지역문제(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기관과 협의·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일자리사업의 특화된 평가기준 마련과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4)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 포함이었으나 2013년 5월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됨.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2014년 의무대상 기관 391곳 중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지킨 기관은 291곳으로 74.4%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에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이 51.3%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다소 개선되었지만 대상기관의 25.6%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54.5%로 정부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 83.3%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임.

현재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

(단위 : 개소,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관 수	청년총 채용			기관 수	청년총 채용			기관 수	청년총 채용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401	193 (48.1)	208 (51.9)	75	413	212 (51.3)	201 (48.7)	66	391	291 (74.4)	100 (25.6)	37
정부공공기관	276	155 (56.2)	121 (43.8)	32	283	156 (55.1)	127 (44.9)	36	270	225 (83.3)	45 (16.7)	10
공기업	28	19	9	0	30	21	9	1	28	22	6	1
준정부 기관	82	55	27	5	87	58	29	6	85	73	12	1
기타 공공기관 (30인 이상)	166	81	85	27	166	77	89	29	158	130	27	8
지방공기업	125	38 (30.4)	87 (69.6)	43	130	56 (43.1)	74 (56.9)	30	121	66 (54.5)	55 (45.5)	27

5) 고용센터 인력지원(1031-300)

가) 사업 개요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은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및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상담원 등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1,421명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액 356억 3,000만원 중 311억 2,700만원(87.4%)을 집행하였으며, 3,800만원을 이월하고 4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35,630	0	0	0	0	35,630	31,127	38	4,465

「직업안정법」 제4조의4²²⁾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센터에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음. 2014년 기준 직업상담원 85명, 단시간 근로직업상담원 291명, 사무원 31명, 구인상담원 100명,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800명, 취업지원명예상담원 100명 등 총 1,407명이 고용센터에 근무하고 있음.

22)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2014년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 인원 현황]

(단위: 명)

직업 상담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 상담원	취성패 상담원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계
85	291	31	100	800	100	1,407

동 상담원들의 직종이 복잡하고 직종간 담당업무와 근로조건 차이로 인하여 인력 운용상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다른 직종의 근로자간 내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회는 2014년 고용센터 인력 통합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연구개발비(260목)로 3억원을 증액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14년 동 연구개발비로 고용센터 비공무원 인력운용실태 및 통합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음.

[2014년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 연구용역 과제 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최종보고서 납품일	수행기관	수행자
고용센터 비공무원 인력운용실태 및 통합방안 연구	95	14.8.29	(주)네모파트 너즈피오씨	주용석
고용복지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50	14.12.20.	한국중소기 업학회	장욱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150	15.2.28	한국노동연 구원	김승택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소개요금 실태 조사	20	14.9.30	(사)전국고용 서비스협회	박동현

동 사업의 목적이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국회가 201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동 센터의 인력운용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용역은 고용센터 인력통합에 대하여만 수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2014년 수행된 연구용역 목록을 보면,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소개요금 실태조사, 고용복지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등 고용센터 인력운용과 관련이 없는 연구용역이 다수 수행되었음.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소개요금 실태조사, 고용복지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등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센터의 고유 업무이므로, 관련 사업인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본부 기본경비 등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성이 적은 동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더욱이 국회에서 동 사업에 연구용역비를 증액한 것은 고용센터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구조 개편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의결 목적과 달리 일반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연구용역이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직업안정기관 운영(1032-301)

직업안정기관 운영 사업은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등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현액 262억 4,200만원 중 257억 6,500만원(98.2%)을 집행하였음.

[2014년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5,142	25,142	0	1,100	0	26,242	25,765	6	471	36,397

고용센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현재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 86개소의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 고용센터 관리비,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여비 등 기본 운영비를 지원함.

[고용센터 현황]

자치단체	센 터 명
서울특별시(8)	서울, 서초,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부산광역시(3)	부산, 부산동부, 부산북부
대구광역시(3)	대구, 대구서부, 대구강북
인천광역시(2)	인천, 인천북부
광주광역시(1)	광주
대전광역시(1)	대전
울산광역시(1)	울산
세종특별자치시(1)	<u>세종(출장)</u>
경기도(19)	부천, 김포,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고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경기광주, 이천, 안양, 광명, 안산, 시흥, 평택, <u>안성(출장)</u>
강원도(7)	춘천, 강릉, 속초, 원주, 태백, 삼척, 영월
충청북도(4)	청주, 충주, 제천, <u>옥천(출장)</u>
충청남도(5)	공주, 천안, 보령, 서산, <u>논산(출장)</u>
전라북도(7)	전주, 정읍, 익산, 군산, <u>부안(출장)</u> , <u>남원(출장)</u> , <u>김제(출장)</u>
전라남도(4)	목포, 해남, 순천, 여수
경상북도(10)	경산, 칠곡,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영주, 문경, 안동, <u>울진(출장)</u>
경상남도(10)	창원, 마산, 김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u>밀양(출장)</u> , <u>하동(출장)</u> , <u>거창(출장)</u>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고용 분야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로 서비스기관이 확충되었고, 복지 분야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그러나, 서비스별·대상별로 지원기관이 각각 존재하는 다기화된 전달체계로 인하여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과도하게 경쟁하는 칸막이 현상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2014년 정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와 정부의 행정효율 제고 등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한 장소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통합모델인 ‘고용복지+ 센터’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2014년 1월 6일 설립된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부산북부, 구미, 서산, 동두천 등에 10개의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였음.

[고용복지+센터 설립 현황]

명 칭	위 치	개소일 (설립일)	주관 기관	참여기관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953,2~3층	‘14.1.6. (‘13.12.24)	고용부	고용센터, 남양주시 일 자리센터·복지팀, 여성 새일센터, 서민금융센 터, 자활센터

명 칭	위 치	개 소 일 (설립일)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14.7.22 (‘14.6.30)	고용부	고용센터, 부산북구 일 자리센터·복지팀, 여성 새일센터, 서민금융센터
구미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14.7.23 (‘14.7.7)	고용부	고용센터, 구미시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제대군인센터, 서민금융센터
천안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14.7.28 (‘14.7.7)	고용부	고용센터, 천안시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제대군인센터, 서민금융센터
서산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14.9.18 (‘14.7.21)	고용부	고용센터, 서산시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 서민금융센터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 코아	'14.12.19 (‘14.12.8)	고용부	고용센터, 동두천시 일 자리센터·복지팀, 여성 새 일 센터,제대군인센 터, 서민금융센터
칠곡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15.2.4 (‘14.12.8)	고용부	고용센터, 칠곡군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총효로 147	'14.12.19 (‘14.12.8)	고용부	고용센터, 순천시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제대군인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 계농공로 9 넥서스 프라자 빌딩 2층	'14.12.19 (‘14.12.8)	고용부	고용센터, 춘천시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제대군인센터, 서민금융센터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14.12.24 (‘14.12.15)	고용부	고용센터, 해남군 일자 리센터·복지팀, 여성새 일센터, 자원봉사센터

고용복지+센터에는 지자체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등이 입주함. 복지지원팀은 해당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접수 및 처리업무를 하며, 여성부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업무를 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이상 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함. 기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부의 문화공간이 입주함. 다만, 해당 센터의 공간과 지역사정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이 입주하지 않을 수 있음.

[고용센터 내 각 기관별 대상 및 사업내용]

명 칭	소 속	사업대상	사업 내용
일자리센터	지자체	해당 지자체 주민	취업알선·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지원팀	지자체	해당 지자체 주민	복지급여 접수·처리
새일센터	여성부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	5년이상 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취·창업 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전직지원 등 구직활동 지원
서민금융지원센터	금융위원회	저소득, 저신용 금융소외계층	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 불법사금융 피해 등 상담·신고·접수
중장년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40세이상 퇴직 또는 퇴직예정자	경력진단, 생애설계, 취·창업교육 등 (전직 및 재취업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센터	지자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문화공간	문체부	지역주민	기존 문화 및 유희 시설을 지역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

고용노동부는 운영결과 전년대비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총 70곳의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할 계획임.

[고용복지+센터 성과]

(단위: 명, %)

센터명	'13.12월 취업자수	'14.12월 취업자수	증감	증감율
남양주고용복지+센터(1월~12월)	9,665	12,980	3,315	34.3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8~12월)	4,104	6,110	2,006	48.9
구미고용복지+센터(8~12월)	4,235	4,758	523	12.3
천안고용복지+센터(8~12월)	4,828	6,556	1,728	35.8
서산고용복지+센터(8~12월)	1,888	2,086	198	10.5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중첩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동일 장소에서 수요자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며, 고용·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발굴·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복지+센터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고용복지+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고용센터의 관할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고용복지+센터가 위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복지+센터 참여를 거부할 유인이 크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4년 설립된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임.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2014년 7월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로 변화하였음. 그러나, 고용센터가 북구에 위치함에 따라 강서구청과 사상구청은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거부하였음. 이는 해당 구청에서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은 접근성이 낮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할 유인이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현황]

구분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	여성새일센터	재향군인회	서민금융상담센터
주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		여가부	민간	금융위원회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원	56명 (공무원 31명, 상담원 25명)	2명 (상담원2명)	7명 (공무원2명, 상담원 5명)	2명 (상담원2명)	1명 (민간1명)	4명 (민간 4명)
대상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전체구직자	일반 구인·구직자	복지대상자	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	서민금융 대상자
주요 업무	취업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등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	복지 상담 및 민간복지 연계 취약계층 자활지원	여성맞춤 취업상담 여성인턴	제대군인 맞춤 취업 상담	서민금융 상담 자부금 대출 신용회복 햇살론, 미소금융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주축인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고용복지+센터의 설립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즉,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자치단체 거주민은 동 센터를 방문할 지라도 취업상담만 받을 수 있을 뿐 복지급여 지원 등을 통합하여 제공받지 못함.

고용센터의 관할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고용복지+센터의 확대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 자치단체가 해당 센터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복지와 취업을 한 장소에서 제공하려는 고용복지+센터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타 지역 복지대상자 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행복e음 시스템을 연결할지라도 급여 지급 대상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체계 개선이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는 수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복지+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1032-310)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사업은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액 4억 500만원 중 3억 4,500만원(85.2%)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14년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405	405	0	0	0	405	345	0	60	385

민간 고용서비스업계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 사업은 3개로 구분할 수 있음. 동 사업에서 ①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 실시, ② 불법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구인광고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③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에 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대금 지원이 수행됨. 2014년 1만 2,239명의 직업소개종사자를 교육하였고, 8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5개소의 고용서비스우수 인증기관 정보통신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였음.

[2014년 세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직업소개종사자교육 및 민간상담인력양성과정	322	0	0	0	322	306	95.0
신고포상금	47	0	0	0	47	3	6.4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집적정보통신시설비용지원	36	0	0	0	36	36	100
합 계	405	0	0	0	405	345	85.2

이 중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직업안정법」 제40조의2²³⁾를 근거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음.

[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 위탁 내역]

(단위: 백만원)

위탁사업계약 내역					계약유형 (낙찰지결정방법)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14년도 직업소개사업종사자 교육훈련 위탁사업	240	240	(사)전국고 용서비스 협회	2014.5.27 ~ 10.31	일반경쟁(협 상에 의한 계약)

23)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현재 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됨. 공공부
문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등이 있으
며, 민간부문에서는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고용서비스를 지원함.
2014년 기준 11,953개의 직업소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유·무료 사업자는 11,781개임.

[직업소개사업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직업소개사업	소 계	10,642	11,234	11,953
	국내무료	1,152	1,620	1,548
	국내유료	9,344	9,454	10,233
	국외무료	11	11	16
	국외유료	135	149	156

고용서비스의 한 축인 민간직업소개업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상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업소개 종사자를 교육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교육은 온
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며, 2012년 14,175명, 2013년 10,068명,
2014년 12,239명의 직업소개 종사자가 동 사업의 교육을 받았음.

[최근 3년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직업소개 종사자교육	오프라인	9,944	5,552	8,145
	온라인	4,231	4,516	4,094
	합 계	14,175	10,068	12,239

교육은 4시간동안 이루어지며,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 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에 대하여 1시간씩 강의함.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내용]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시 간 (연간)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소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법 해설 - 불법직업소개행위 및 거짓구인광고 유형과 처벌 규정 등 	1H	강의 (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이론 - 직업상담기법 등 	1H	강의 실습 (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보의 수집·제공 - 고용안정 전산망 운용 - 직업소개소 프로그램(Nesa-Pro) 소개 	1H	강의 실습 (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 직업소개사업자의 윤리강령 및 자정노력 등 	1H	강의 (사이버교육)

직업소개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특별한 혜택은 부여되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014년 10,319개소의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5,719개소(55.4%)가 교육에 참여하였음.

[지역별 참석률]

(단위: 개소, %)

관할 고용노동청	대상(A)	참석(B)	비율(B/A)
서울	2,496	1,448	58.0
중부	2,909	1,789	74.8
부산	1,911	874	45.7
대전	1,124	513	45.6
광주	910	623	68.5
대구	969	472	48.7
합 계	10,319	5,719	55.4

이와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 민간사업자 중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① 지나치게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들이 실무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② 교육 참여에 의무성이 없어 교육 참여자에 대한 혜택 또는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교육에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업소개사업은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변화없는 교육내용과 이론적·개념적 교재내용 구성으로 교육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당수 제기되었음.

민간 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시장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 직업소개사업자가 법령 및 고용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건설·간병·파출·헤드헌팅 등 직업소개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특화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교육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1034-303) : 사업내실화 필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에 예산액 49억 6,200만원 중 46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 그램	4,962	-	-	-	4,962	4,628	-	334

이 사업은 강소기업체험을 희망하는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이 연수신청서를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는 연수신청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희망자의 전공, 직장근무 경험,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자, 취업애로계층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운영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단위(대표지청 포함)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있음.

이 사업은 국회·기획재정부로부터 청년인턴제사업 등과 유사·중복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업물량이 매년 감소(2012년 13,234명, 2013년 8,850명, 2014년 4,000명)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재학생들이 방학등을 활용하여 직장체험하려는 수요가 많아 사업확대 및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런데 2014년의 경우 사업물량이 전년 대비 약 50%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를 보면 ‘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및 ‘참여자 수료율’ 2가지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음.

또한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사업지침」에 따르면 연수실시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전체 참여기업의 50% 이상으로 배정하여 그 중 강소기업²⁴⁾이 10% 이상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전체

참여기업 1,935개 사업장 중 강소기업은 164개소로 8.5%만이 포함되었음.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목표	91	91	88.5	88.5	3년간(11~13년) 실적을 감안하여 3년 평균치 86.7%보다 1.8%p 상승	7점 척도에 따른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실적	86.6	87.5	86.1	-		
	달성도	95.2	96.1	97.3	-		
참여자 수료율 (%)	목표	93.3	96.1	96.1	96.2	3년간(11~13년) 실적을 감안하여 '13년 수준 유지	(수료인원/참여 인원)*100
	실적	95.6	95.8	95.3	-		
	달성도	102.5	99.6	99.2	-		

더구나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²⁵⁾ 감축이 필요하고, 연수생의 중도 탈락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업명 및 사업취지와 부합하도록 사업방식 개선, 강소기업 참여율을 높이는 등 내실있는 사업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4) 강소기업 기준 및 현황 : 각 중앙부처·지자체·민간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수기업 중 임금체불 이력 등 결격요건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후 선정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2014년에 9,692개소 선정(결격요건: ① 3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기업, ④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25)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2014.9)

9) 해외취업지원(1035-304)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2014년에 예산액 237억 2,900만원 중 집행액 20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	다음년도이월액(D)	불용액(E)
해외취업지원	23,729	-	-	-	23,729	20,289	-	3,440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고용노동부는 출연금 219억 100만원 중 34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184억 9,700만원만 공단으로 교부하였으며, 공단은 출연금 교부액 184억 9,700만원 중 17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은 불용처리 함.

공단에서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9개 내역사업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예산 219억 100만원의 약 15.5%에 달하는 34억 4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이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14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중 출연금(350-01목)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출연금 내역사업명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액	불용 액	집행액 (교부액) (A)	실집행액* (공단) (B)	이월액 (C)	불용액 (공단) (A-B-C)
합 계	21,901	3,404	18,497	17,516	980	1
①K-Move 스쿨	7,400		6,611	5,977	634	
②GE4U	4,500		2,030	2,030		
③K-Move 멘토단	870		853	507	346	-
④일자리발굴 및 홍보	1,545		1,536	1,536	-	-
⑤민간기관 취업알선지원	400		400	400	-	-
⑥취업애로청년층지원	900		73	73	-	-
⑦해외취업장려금지원	2,407		3,233	3,233	-	-
⑧월드잡 고도화	2,511		2,504	2,504	-	-
⑨해외취업지원사업관리	1,368		1,257	1,256	-	1

가) 해외취업 연수(K-Move 스쿨 및 GE4U) 사업성과 저조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 해외취업 연수 물량을 K-Move 스쿨의 경우 1,200명, 글로벌청년취업(GE4U)의 경우 1,000명의 총 2,200명으로

목표하였으나, 최근 2년간 해외취업연수 목표인원 대비 수료 및 취업 인원을 보면 목표인원 2,200명 대비 실제 개시인원은 1,690명에 불과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남.

[최근 2년간 해외취업연수 목표인원 대비 수료 및 취업인원]

(단위: 명)

연 도	구 분	목표 인원	승인 인원	개시 인원	중도 탈락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진 행 중
2013	맞춤형	1,000	1,569	883	124	759	450	-
	GE4U	1,000	960	658	26	632	433	-
	K-MOVE	140	140	155	16	139	115	-
2014	K-MOVE	1,200	1,933	1,137	116	797	62	연수중 224명 취업진행 705명
	GE4U	1,000	677	553	41	512	93	취업진행 408명

※ 2014년부터 맞춤형 연수사업은 K-MOVE 스쿨사업으로 통합됨

이는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수과정 승인률이 하락(2012년 71.2%→2013년 31.7%→2014년 40.8%)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임.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2014년에 취업인정기준을 대폭 강화(연봉기준 신설 및 1년 미만 취업비자 제외 등)함에 따라 연수인원 및 취업인원이 감소된 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 시 금년 사업비의 집행추이를 점검한 후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Move 스쿨 및 GE4U(글로벌 청년취업) 비교]

구 분	K-Move 스쿨(장/단기)	GE4U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대상	· 34세 이하 또는 구인업체 채용기준에 적합한자	· 34세 이하 또는 구인업체 채용기준에 적합한자
지원금액	· K-MOVE(장기) 1인당 800만원 · K-MOVE(단기) 1인당 580만원	· 1인당 450만원
지원유형	① 일자리 확보형 ②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이수 ③ 도제제도 연계형 ④ 구직자직접지원형	좌동
구직자 부담비율	· 최대 20%, 신흥시장 최대 10% 까지 운영기관 자율적 결정	· 구직자 비용부담 없음 (대학 자체단체 대응투자 30% 필수)
취업률 산정 (잔액연수비 30% 지급기준)	70% 이상 단, ② 유형의 경우 취업률 70% 이상시 (잔액 20%) + 자격취득율 또는 훈련 이수율 80% 이상시(잔액 10%) 반영	좌동
연수과정 구성	· 장기(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 단기(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취업인정기준	· 1년 미만 취업제한 비자 제외 및 단순서비스직종 제외 ↳ 비자의 경우 ② 유형 예외인정	좌동
연수장소	· 연수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음	· 총 연수기간의 50%이상 대학내 자체연수 또는 학점 연계 교과과정으로 운영(필수조건)
우대사항	· 정식 취업비자, 신흥시장, 기술·기능직종 · 운영기간 평가결과,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실적 우수기관 우대	· 정식 취업비자, 신흥시장, 기술·기능직종 · 운영기간 평가결과,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실적 우수기관 우대 · 정규 교과과정(학점인정)으로 운영하는 GE4U과정

나) 해외취업연수 사업의 내실화 필요

K-Move 스쿨을 포함한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성과 제고를 위해 매년 사업 추진체계 개편과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고용효과는 낮아 ‘스펙쌓기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부터 정년 연장제도 도입으로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해외취업지원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실효성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2014년 K-Move 스쿨의 취업인정 신청자의 기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1,679명의 취업인정 인원 중 국내 기업 현지법인의 취업 인원이 238명, 내국인 또는 교포기업이 626명에 달하고, 순수한 해외기업의 취업인원은 2014년 취업인원의 41.9%에 불과한 704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K-Move 스쿨 취업인정 신청자의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외국기업	한국진출기업	한인기업	기타
합 계	1,679	704	238	626	111
	(%)	(41.9)	(14.2)	(37.3)	(6.6)

구 분	계	외국기업	한국진출기업	한인기업	기타
알 선	818	356	139	295	28
	(%)	(43.5)	(17.0)	(36.1)	(3.4)
연 수	861	348	99	331	83
	(%)	(40.4)	(11.5)	(38.4)	(9.6)

해외진출 국내 기업은 필요한 국내인력에 대하여 자체적인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하여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상기업 유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더구나 해외취업 연수 사업은 2013년부터 사전에 취업처를 확보한 이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취업처에 실제로 취업하는 비중, 근속유지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취업애로 청년층 지원 집행 부진

해외취업 장려금은 해외취업 성공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150만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해외취업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고,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해외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사업으로 추진한 해외취업 장려금 및 취업애로청년층지원의 집행현황을 보면 취업애로 청년층 지원의 경우 예산액 9억원의 8.1%에 해당하는 7,300만원만 집행되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최근 2년간 해외취업장려금 및 취업애로청년층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내역	예산액	실 집행액	월별 실적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해외취업장려금	3,600	141	인원	1차	-	-	-	-	-	-	-	3	4	-	21	66
					2차	-	-	-	-	-	-	-	-	-	-	-	-
				지급액	-	-	-	-	-	-	-	4.5	6	-	31.5	99	
	취업애로청년층	900	142	인원	-	-	-	26	7	1	3	1	2	1	3	23	
지급액				-	-	-	68	9	2	5	1	2	2	5	48		
2014	해외취업장려금	2,407	3,233	인원	1차	-	0	77	95	127	198	178	182	155	241	209	-
					2차	-	10	29	40	50	50	76	105	120	206	7	-
				지급액	-	15	159	202	266	372	381	431	413	670	324	-	
	취업애로청년층	900	73	인원	-	-	-	11	2	2	2	6	1	0	2	10	
지급액				-	-	-	20	2	3	4	10	3	0	3	28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은 사후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절차가 까다롭고, 취업애로 대상이라고 인식되는 ‘낙인효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다고 보이므로 취업애로청년층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취업애로청년층이 대부분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현지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고, 취업애로청년층의 50% 이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취업애로청년에게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사업 비교]

연도	구 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애로청년층 지원
2013년	대 상	5분위 이하 가구원인 청년	차차 상위계층이하,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용	최대 300만원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최대 300만원
2014년	대 상	8분위 이하 가구원인 청년	차차 상위계층이하,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용	최대 300만원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최대 400만원

라) 사고이월 부적정

2014년에 청년층의 해외취업·인턴·창업·봉사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여러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서 독립된 시스템을 통해 각각 제공하던 것을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해외취업(고용노동부)과 인턴(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정보망을 통합하기로 결정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K-Move 스쿨 등 해외취업연수 경비의 불용예산액 중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부처이견 등의 이유로 시스템 개발을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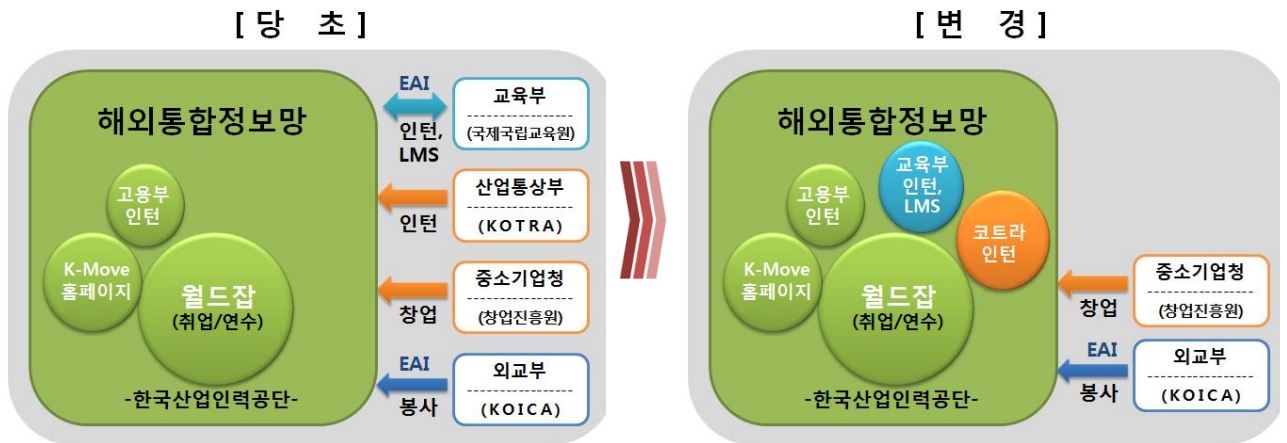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집행임.

또한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인데, 이 지침에 따라 기관장은 예

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 바,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현황]



10)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1036-30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을 전담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임. 자치단체가 직업상담사를 고용하면 정부는 해당 상담사 인건비를 100% 지원함. 2014년 예산액 68억 4,400만원 중 68억 3,000만원(99.8%)이 집행되고 1,400만원이 불용처리됨.

[2014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6,844	0	0	0	0	6,844	6,830	0	14

동 사업에서 지원되던 직업상담사를 고용센터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동 사업은 종료되었음.

직업상담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경로 설정 및 지원을 의뢰함. 더불어 조건부수급자 외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적정 서비스를 연계함.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주요 업무 내용]

역할	업무 내용
① 취업대상자 발굴·의뢰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취업대상자 발굴
② 기초상담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기초상담 * 인적사항, 학력, 자격증, 경력, 건강상태 등 조사 → 확인된 내용을 통합조사관리팀에 통보
③ 자활역량평가 실시	▪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를 면담하고 자활역량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 결정 의견서 작성
④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지원	▪ 고용센터 의뢰 취업대상자 발굴
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관리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진행상황 관리 * 프로그램 이행 상황 및 참여 취소자, 불성실 중도탈락자 등 관리
⑥ 취업 유·무 확인	▪ 수급자 취업(소득·고용유지기간 등) 확인
⑦ 탈수급자 관리	▪ 고용센터에 탈수급자 현황 제공

정부는 2014년 171개소 지방자치단체에 178명의 직업상담사를 지원 하였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수가 2010년 2,480명에서 2012년 11,519명, 2014년 14,356명으로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2014년 시도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보조금	시·도	보조금
서울특별시	955	강원도	308
부산광역시	616	충청북도	262
대구광역시	77	충청남도	577
인천광역시	385	전라북도	269
광주광역시	308	전라남도	616
대전광역시	192	경상북도	577
울산광역시	179	경상남도	462
세종특별자치시	38	제주특별자치도	77
경기도	910	합계	6,807

동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²⁶⁾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²⁷⁾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2

26)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용된 금액이 확정된 보조금보다 적은 경우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이는 정부 결산 이전에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확정하여 결산을 내실 있게 점검하고, 부당한 사유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사업 종료 후 5개월이 경과한 2015년 5월 현재 지원받은 171개 기초자치단체 중 59개소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년도인 2013년 지원된 기초자치단체 중 11개 기관이 보조금 반환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보조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3년 미반환보조금 내역]

(단위: 원)

시·도	납부자명	미수납금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1,341,28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1,608,79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585,88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53,4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11,5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687,79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1,857,66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1,182,270
전라북도	군산시장	11,096,490
충청남도	청양군	5,848,950
경상북도	청도군	4,594,890
소 계		31,669,060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책임이 있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보조금 반환을 받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도 보조금 반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을 해태하는 경우 감독 관청은 보조사업자에게 동종 사무 보조금 교부를 정지하거나 차년도 보조금과 상계할 수 있음.²⁸⁾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2014년도 보조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보조사업 전산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것임.

2014년에 예산액 140억 8,100만원 중 13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5,1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2014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회적 기업육성	14,081	-	-	-	14,081	13,128	2	951

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²⁹⁾ 육성 사업은 알콜·도박 중독자, 상습범죄자, 노숙인,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중에서 사회통합이 곤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곤란한 자를 정책대상(200명)으로 하여 상담 및 치료, 일경험,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정규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2014년 기능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8억 4,8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이 27.6%에 머물러 집행실적이 미흡함.

29)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또는 취업능력을 높여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유럽 주요 12개국의 경우 약 1만5천개의 다양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임(출처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2014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391	0	0	0	3,391	2,884	0	507
사회보험료	6,286	0	0	0	6,286	6,567	2	-283
부처협력네트워크	100	0	0	0	100	100	0	0
노동통합형	848	0	0	0	848	234	0	614
사회적기업 담당자 교육	240	0	0	0	240	190	0	50
모태펀드	2,500	0	0	0	2,500	2,500	0	0
운영비	716	0	0	0	716	653	0	63
합 계	14,081	0	0	0	14,081	13,128	2	951

또한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참여인원은 당초 목표인원 2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99명만 참여하여 실적이 저조함.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예산 집행률			지원인원(일자리 참여인원) 달성률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목표(C)	실적(D)	달성률(D/C)
2014년	848	234	27.6	200	99	49.5

취업이 매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정책대상 중 사회통합이 곤란하고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곤란한 자를 구별하여 선발하기 어렵고, 구별 선발이 어려울 경우 결국 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정책대상과 동일해 질 수 밖에 없어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구 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		취업애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 곤란한 극 취약계층에게 상담 및 치료, 일경험, 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규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사회비용 최소화	낮은 자격을 가진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위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추진방법		건강·심리 치료상담→재사회화를 위한 직업능력 배양→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취업알선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취업알선
참여자	대상	도박·알콜중독자, 성범죄자, 상습범죄 출소자, 노숙자,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중에서 사회통합이 곤란하고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곤란한 자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기간	5월, 10월	최대 1년 (1단계 1월, 2단계 8월, 3단계 3월)
	지원내용	참여자 수당(40만원/월, 연수생 신분) 취업성공금(20~30만원)	참여수당(1단계 20, 2단계 40만원/월) 취업성공금(20~50만원)
	취업처	사회적기업, 대기업 등 연계기업	일반기업
참여기관	대상	사회적기업(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4개소 예정	고용센터(82개소)/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기간	5월, 10월	최대 1년
	지원내용	취업성공금(4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30만원 운영비(30만원/월) 관리전담 인력비용(300만원/월)	취업성공금(40~5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30만원 위탁비(70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재구성

참고로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었지만, 향후 고용노동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계속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내실화 필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규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소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2014년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인증업무를 위한 회의장 임차료 등의 경비로 6,200만원을 집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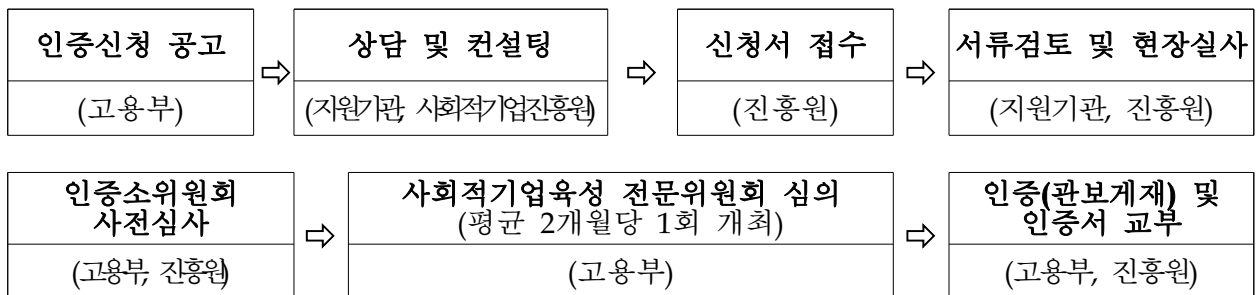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경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4년 편성내역		집행액
210-01 (일반수용비)	1. 인증매뉴얼 제작	5,000	20,840
	2.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수당 등	21,000	24,218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소위 수당 등	10,500	5,080
210-07 (임차료)	1.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회의개최 -회의장 임차	6,000	5,192
240-01 (사업추진비)	1.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비용	5,400	5,629
	2.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사소위 운영	4,500	1,135
합 계		52,400	62,094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소위원회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작성·제출하는 현장조사표, 인증요건 검토서, 검토요약표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한 후 육성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심사결과를 최종 심의·결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감사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³⁰⁾에 따르면 2013년 및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2013년 519건, 2014년 362건)의 경우 절차적으로는 인증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증소위원회 단계에서 인증여부가 결정(2013년 : 96.54%, 2014년 : 97.52%)되고 있는 바, 육성전문위원회 단계에서는 인증소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대로 결정하고, 인증소위원회 단계에서 판단을 보류한 일

3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감사원, 2015.2)

부 사항(2013년 : 519개 신청건 중 3.46%인 18건에 불과, 2014년 : 362개 신청건 중 2.48%인 9건에 불과)에 대하여만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인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에는 위원 선정기준, 심의대상, 의결정족수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한 ‘인증소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인증심사기준에 “인증심사소위원회는 8인 이하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세부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인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향후 고용노동부는 위원 선별기준, 심의대상, 의결정족수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한 인증심사소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다)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장·단기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 사회적기업 육성(1037-301)사업에 4,500만원의 국외여비 예산을 편성하여 4,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함.

고용노동부는 2014년 3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 등을 위한 선진국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국외출장 경비를 집행하였는데, 각기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를 전용 및 내역변경의 절차 없이 사회적기업육성과 본부기본경비의 2가지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용 및 내역변경의 절차 없이 2가지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국외여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가지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국외여비 현황]

(단위: 원)

출장 기간	방문국	출장 인원	준비금 (여행자 보험)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운임	계	예산 과목
2014.3.24 ~ 3.30.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인	11,380	132,123	438,209	755,060	3,485,800	4,822,572	1037-301-22 0-02 (사회적기업 육성)
		1인	9,860	132,123	438,209	755,060	3,485,800	4,821,052	1037-301-22 0-02

출장 기간	방문국	출장 인원	준비금 (여행자 보험)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운임	계	예산 과목
									(사회적기업 육성)
		1인	17,180	264,247	1,008,543	2,823,000	9,087,000	13,199,970	7011-252-22 0-02 (본부 기본경비)
		1인	9,460	114,507	363,340	138,910	3,485,800	4,112,017	7011-252-22 0-02 (본부 기본경비)
			0	0	0	1,197,530	0	1,197,530	1037-301-22 0-02 (사회적기업 육성)

12)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1037-310)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것임.

2014년도 예산액 1,118억 7,900만원 중 1,109억 4,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중 850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8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여 교부액 대비 집행률은 76.7%임.

[2014년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A)	실집 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보조)	111,879	110,943	936	110,943	110,943	85,080	-	25,863

가) 복합지원공간 조성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복합지원공간 조성 사업³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기능을 제공하는 복합지원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임. 2014년 예산액 15억원 중 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이 62.7%에 머물러 집행실적이 저조함.

[2014년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사업 기능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84,459	84,459	0	0	84,459	81,218	0	0

31) 주요 기능 : ①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전시 및 판매 ②사회적기업간 회의, 네트워킹 및 사회적기업 대상 교육 ③공동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및 경영컨설팅 ④통합지원기관, 사회적기업지역협의회 및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⑤스마트워크 공간 제공 등

세사업 명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업개발비	25,920	25,920	0	0	25,920	25,544	0	376
복합지원공간 조성	1,500	1,500	0	0	1,500	940	0	560
합 계	111,879	111,879	0	0	111,879	107,702	0	936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지원공간 사업 미신청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14년 5월까지 단 2차례만 사업공모가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바,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일부 피보조기관의 실집행률 저조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2014년 지자체 실집행률을 보면 76.2%로, 인천, 경기, 충북,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평균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교부액 1,100억 300만원의 23.5%에 달하는 258억 6,3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중도탈락율을 20%로 추계하였으나 실제로 중도탈락율이 28%로 높게 발생하였고, 2014년에 국고보조율이 2013년 대비 하향조정됨

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의 부담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2014년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A)	교부	집행 (B)	집행률 (B/A)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합계	110,379	110,003	84,140	76.2%	84,459	62,551	74.1%	25,920	21,589	83.3%
서울	8,245	8,245	7,081	85.9%	6,396	5,473	85.6%	1,849	1,608	87.0%
부산	9,020	9,020	7,533	83.5%	7,275	5,900	81.1%	1,745	1,633	93.6%
대구	7,069	7,059	5,548	78.5%	5,819	4,400	75.6%	1,250	1,148	91.8%
인천	6,920	6,915	5,134	74.2%	4,820	3,590	74.5%	2,100	1,544	73.5%
광주	8,073	8,050	6,790	84.1%	6,433	5,318	82.7%	1,640	1,471	89.7%
대전	4,040	4,040	2,657	65.8%	2,930	1,810	61.8%	1,110	847	76.3%
울산	4,181	4,155	2,898	69.3%	3,681	2,552	69.3%	500	346	69.2%
경기	12,597	12,566	7,654	60.8%	9,037	5,220	57.8%	3,560	2,434	68.4%
강원	6,752	6,752	5,260	77.9%	4,842	3,693	76.3%	1,910	1,567	82.0%
충북	6,135	6,114	4,131	67.3%	4,785	3,019	63.1%	1,350	1,111	82.3%
충남	5,715	5,564	5,060	88.5%	4,269	3,925	91.9%	1,446	1,135	78.5%
전북	8,135	8,117	6,419	78.9%	6,435	4,748	73.8%	1,700	1,671	98.3%
전남	8,055	8,055	5,772	71.7%	6,155	3,900	63.4%	1,900	1,872	98.5%
경북	8,342	8,342	6,872	82.4%	6,352	4,946	77.9%	1,990	1,926	96.8%
경남	6,568	6,479	4,984	75.9%	4,998	3,830	76.6%	1,570	1,154	73.5%
세종	532	532	346	65.0%	232	225	97.0%	300	122	40.7%

※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예산액 1,118억 7,900만원 중 복합지원공간 조성비(15억원) 제외

1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43-30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층에게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임.

2014년에 전년도 이월액 450억 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77억 7,300만원중 1,35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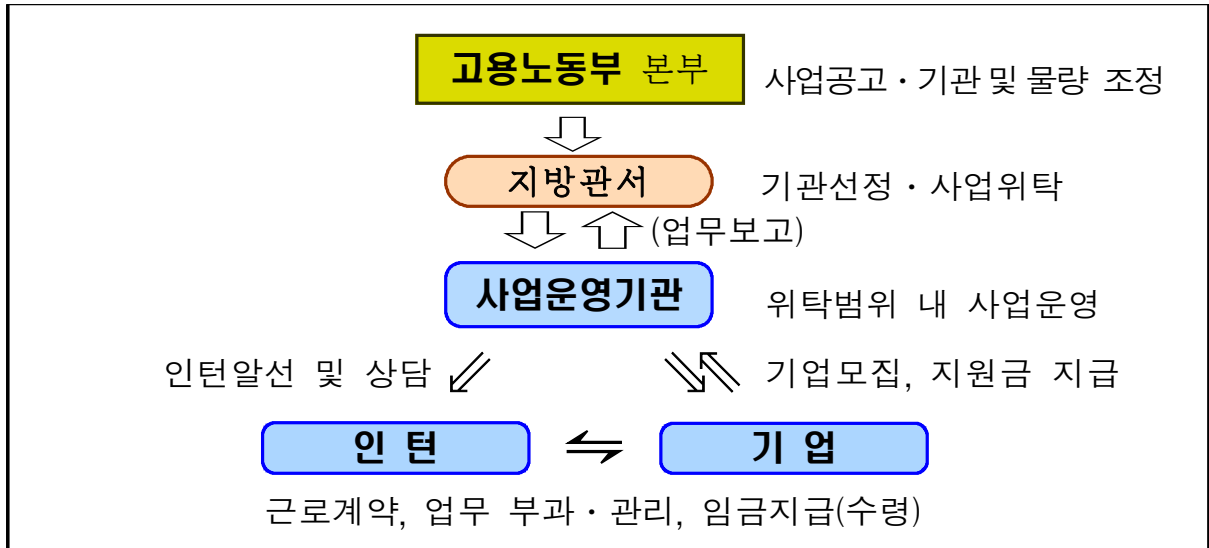
[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E)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92,702	45,071	-	-	137,773	135,910	-	1,864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추진체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기업 지원금으로 인턴기간(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3개월, 50~99인 4개월, 50인 미만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를 지급³²⁾하고,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인턴참여자에게(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인당 220만원, 전기·전자 관련직 및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인당 180만원) 청년취업지원금을 지급함³³⁾.

32) 정규직 전환 후의 기업지원금은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을 추가지원 하는데, 정규직 전환 후의 기업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33)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기업지원금의 경우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 3-6개월간 임금의 50%지원(8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월 60만원으로, 취업지원금의 경우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180만원에서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정규직 전환후 50%, 6개월 시점 50%지원→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함.

가) 지원금(기업지원금 및 청년취업지원금) 집행관리 철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금융위기(2008년)에 따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청년고용률이 낮아지는 등 청년층의 체감실업이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사업실시 후 매년 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 수	294	195	150	206	189	45
금 액	871	1,087	833	1,412	774	142

기업지원금 및 청년취업지원금의 부정수급이 고용센터 등의 점검·조사 및 내부고발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4년 청년인턴을 고용한 민간업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업

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불법보조금수령자인 민간업체가 승소하였음³⁴⁾.

현행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은 기업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취업지원금 등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고, 기업지원금은 보조사업자인 운영기관(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정규직전환지원금과 취업지원금은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집행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기업지원금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환수주체를 현재 「청년인턴제사업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수령자인

34) □ 사건 경위

- (주식회사)○○○은 '09년~'13.4월 청년인턴 37명을 채용, 인턴지원금 99백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43백만원 수령
 - * 인턴에게 월 임금을 130만원 지급하고도 150만원처럼 속여 12백만원 과다 수령
- 서울강남지청은 2013년 7월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13.9.25 지원금 반환(142백만원) 및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신규채용금지 처분
- '14.3.11, (주)○○○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6.20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강남지청 '14.7.4 항소)

□ 판결요지

- (인턴지원금) 기업은 행정청이 아닌 운영기관을 통해 보조금(인턴지원금)을 수령했는데, 행정청이 직접 보조금 반환처분을 한 것은 위법
 - *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행위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보조사업자가 반환명령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행정청에 의한 반환명령 규정은 미비
 - ** 청년인턴제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에는 행정청의 반환명령 규정이 있으나 법원은 불이익처분을 위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부인
- (정규직전환지원금) 행정청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하고 반환명령할 수 있음(대법원 판례)
- (2년간 신규채용금지) 침익적 처분이므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법적근거 없이 한 처분은 위법
 - * 법원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장관(지침)에게 위임했으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까지는 위임하지는 않았다고 봄

실시기업(민간기업)에 직접 환수명령하고 반환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기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보조금수령자인 실시기업이 아닌 국고보조금법 상 보조사업자인 운영기관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업지원금 부정수급 시 고용센터를 통해 조사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운영기관을 통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청년인턴제사업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용노동부소관 일자리 사업에 관한 관련 사업지침을 재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중도탈락 인원 과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나 침체로 인한 빈곤을 완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 전환 등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턴을 수료해야 하나 인턴수료 이전 중도탈락 비중은 2011년 31.1%, 2012년 29.5%, 2013년 25.9%이고, 2014년은 인턴 중인자 12,745명을 제외하고 15.5%로 나타나고 있어 인턴참여 인원의 중도이탈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음.

[연도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진 현황³⁵⁾]

(단위: 명, %)

구 분	인턴채용 (A)	중도 탈락	중도 탈락율	수료종료 (B)	수료종료율 (B/A)	정규직전환(C)		
						소계	C/B	C/A
2011	32,069	9,987	31.1	22,092	68.9	20,164	91.3	62.9
2012	36,451	10,762	29.5	25,689	70.5	23,203	90.3	63.7
2013	43,560	11,298	25.9	32,262	74.1	29,001	89.9	66.6
2014.12	37,023	5,724	15.5	18,554	50.1	15,643	84.3	42.3

주: 3~6개월의 인턴기간으로 인해 2014.12월 기준 사업진행 중으로 인턴 중 인자 12,745명 있음.

청년층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인턴수료 중 중도탈락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턴기간 수료 이전에 중도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알선기관, 대학교 등 민간위탁기관은 기업과 참여인턴간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상담역할을 강화하여 취업의사 및 구인의사를 조율한 이후 인턴직을 배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2013년 및 2014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주요사항]

구 분	2013년	2014년
실시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⑩최근 3년('09~'11)동안 매년 인턴을 채용하고 중도탈락율이 매년 50%를 초과한 기업	·(제외대상) <u>해당 조항 삭제</u> * 3년('10.7.1.~'13.6.30. 기간에 인턴 근무를 시작한 청년 대상)간 평균 중도탈락율이 50%를 초과한 기업의 참여제한 조항은 '14년부터 시행 예정
인턴 참여자격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35세로 한다 ○(신설) ·(제외대상)신설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u>만 15세 이상 34세 이하</u> 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조항삭제 ○(신설) <u>만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턴참여가 가능하다</u> <u>(제외대상) ⑧사업자등록중인 자</u>
지원기간중 감원방지	·(결원보충) 최근 3년('09~'11)동안 2년 이상 참여 기업 중 중도탈락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간이 2년 일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결원보충) <u>해당 조항 삭제</u>
정규직 전환통보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 및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u>해당 조항 삭제</u>
운영기관의 지원금 지급절차	*교부시 확인사항: 신청대상(인턴, 기업)의 적격 및 인위적 감원, 선발절차 준수여부	* <u>교부신청시 확인사항(운영기관):</u> 신청대상(인턴, 기업)의 적격 및 인위적 감원, 선발절차 준수여부
취업지원금	(제도개요)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및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 지급한다.(대기업은 제외)	(제도개요) 인턴참여자가 <u>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u> 및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대기업은 제외)

구 분	2013년	2014년
부정지출·수급방지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14) 청년창직인턴제(1043-303)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은 창직·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창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에 예산액 90억 7,000만원 중 87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청년창직인턴제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	다음년도이월액(D)	불용액(E)
청년창직인턴제	9,070	-	-	-	9,070	8,767	-	303

이 사업은 보조사업(지원비율 50%)으로 15~34세 미취업 청년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이하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직인턴제는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인턴기간 동안 중도탈락율이 높고, 인턴수료 이후에도 창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실적]

(단위: 개소, 명, %)

구분	운영기관	예산상 목표 인원	창직인턴			수료	취업/창직			중도 탈락	인턴 중
			인원	고 졸	기업수		계	수 료 후 취 업	창 업 · 창 직		
2012	14	4,000	3,568	703	2,102	2,826	725	347	378	742 (20.8)	-
2013	18	3,000	2,804	558	1,760	2,414	858	609	249	390 (13.9)	-
2014	12	3,000	2,675	452	1,624	1,739	747	730	17	358	57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5.20.기준)

또한 이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의 하나인 참여자 수료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구조 설계시 세밀한 정책 마련이 부족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참여자 수료율 (%)	목표	-	732	90	-	'13년 수료율 보다 0.3%p 상향 설정	(수료인원/참여 인원)*100
	실적	-	897	80	-		
	달성도	-	1225	88.9	-		

참고로 이 사업은 다른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개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아 2015년부터는 창직 및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때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의 중복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15)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가) 사업개요

‘고용영향평가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 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도 예산현액은 34억 800만원이며, 이 중 32억 4,600만원을 집

행하고 1억 6,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수행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 (KLI)의 고용영향평가센터임.

[2014년도 고용영향평가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819	589	0	3,408	3,246	162	115.1	95.2

동 사업은, 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2014. 7. 1. 시행)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제안 반영의무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②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고용 효과’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③ 「15년 예산편성지침」에 각 부처가 예산요구 시 고용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④ 「지방대학육성법」 제정에 따라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가) 고용영향평가 공개의 개선 필요

고용영향평가사업은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영향평가의 효용성과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런데,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에서 동 사업은 평가결과

중 최하위 평가(부진)를 받았고, 그 이유는 “평가결과의 외부인지도가 낮아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였고 일반국민들이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음³⁶⁾.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은 외부인지도와 외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³⁷⁾.

나) 위탁사업 관리·감독의 강화방안 마련

동 사업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에 위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업무협조요구를 할 수 있거나 사업에 필요한 정산자료 등을 수시로 제출받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³⁸⁾.**[참고자료 2: 고용노동영향평가 위탁사업 정산조서]**

앞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위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사업수행에 관하여 적절한 집행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보고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로서도 동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6) 고용노동부,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2015.2. 참조.

37)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인 제도개선으로 동 사업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 선정과정부터 국민들의 공모를 실시할 예정임.

38) 특히, 한국고용정보원과 달리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러한 위탁 사업을 수행하므로 위탁사업비 중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기타경비를 소요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음.

16) 한국잡월드운영(1049-301)

한국잡월드운영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직업세계관, 진로설계관 및 체험관 운영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에는 예산액 73억 4,200만원이 한국잡월드에게 교부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14년 한국잡월드운영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	다음년도이월액(D)	불용액(E)
한국잡월드 운영	7,342	-	-	-	7,342	7,342	-	-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의 운영을 한국잡월드 법인에 위탁하여 매년 운영비를 예산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예산은 잡월드의 총지출에서 자체수입(입장료와 부대수입, 광고수입 등)을 차감한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한국잡월드는 2014년 예산편성 당시 자체수입을 총 15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입장수입 80억 6,500만원, 광고수입 52억 6,000만원, 부대수입 13억 2,700만원, 이월수입 7억 300만원임.

그러나 2014년도 한국잡월드가 실제로 거둔 자체수입은 137억 7,5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 대비 수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최근 2년간 한국잡월드 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총수입	23,188	19,050	22,697	21,117
○ 정부 출연금	7,526	7,526	7,342	7,342
○ 자체수입	15,662	11,524	15,355	13,775
- 입장수입	8,486	7,537	8,065	7,105
- 광고수입	6,000	2,749	5,260	3,013
- 부대수입	1,176	1,238	1,327	2,954
- 이월수입	-	-	703	703

2014년 자체수입의 세부내역을 보면 입장수입과 광고수입이 계획보다 부진함.

이 중 입장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것은 2014년의 경우 관람객 방문 수가 84만 8,853명으로 전년(91만 4,227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방문 학생 수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어느 정도 수입감소의 타당성이 있음.

[한국잡월드 관람객 방문 실적]

(단위: 명)

구 분	개관 일수	청소년 체험관	어린이 체험관	일반관람	공연 및 기타행사	합 계
2014년	302	441,840	300,355	34,605	72,053	848,853
2013년	307	489,587	296,006	52,500	76,134	914,227
2012년	208	336,840	219,803	41,272	66,274	664,189
합 계	817	1,268,267	816,164	128,377	214,461	2,427,269

그러나 광고수입의 경우 한국잡월드는 전시·체험관 운영위탁사(주식회사 CJ CGV)와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등 광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해당 운영 위탁사의 협찬광고 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임.

[최근 3년간 한국잡월드 협찬광고 유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협찬기관 수					협찬장소				계약 금액	재 계약
	계	공공	중소	재단	대기업	계	체험관	전시관	기타		
2012년	7	3	-	-	4	9	8	1	-	22.88	-
2013년	13	4	2	-	7	16	13	2	1	28.15	7곳
2014년	17	5	1	2	9	22	19	3	-	33.67	9곳

※ 입금기준에 따른 광고수입 '12년 22.52억원, '13년 27.49억원, '14년 30.13억원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잡월드의 광고수입이 감소하면 결국 한국잡월드에 대한 출연예산의 확대에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잡월드는 광고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4년 광고참여 기업 현황]

구 분	협찬기관명	협찬장소	광고시작일	광고종료일
공공기관 &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로봇공학연구소	2012-05-15	2016-05-14
	근로복지공단	재활치료실	2012-09-11	2015-09-10
	안전보건공단	세상의 숨은일꾼	2012-11-20	2015-11-19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윤리체험관	2013-06-25	2015-06-24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회사&건축현장	2014-11-01	2015-12-31
	편강한의원	한의원	2014-06-03	2015-06-02
	(주)스마일게이트홀딩스	게임개발회사	2014-08-21	2017-08-11
중소기업	메이크샵앰퍼니	택배회사	2013-04-02	2014-04-01
	코리아센터닷컴	인터넷쇼핑몰	2013-04-09	2016-04-08
대기업	우리은행	은행	2012-05-15	2015-05-14
	현대자동차	자동차연구개발센터/디자인센터/마케팅센터	2012-08-17	2015-08-16
	삼성물산	건설현장	2012-10-01	2014-12-16
	삼성화재해상보험	소방서	2012-12-10	2014-12-10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쇼장/패션디자인실	2013-02-19	2014-02-18
	금호타이어	자동차정비소	2013-05-28	2015-05-27
	한화호텔앤리조트	홍보영상	2013-09-01	2014-08-31
	한화호텔앤리조트	여행사/광고관	2014-11-20	2018-11-19
	CJ헬로비전	방송국	2014-05-06	2015-05-05
	CJ제일제당	슈퍼마켓	2014-05-27	2017-01-26
	CJ오쇼핑	패션쇼장	2014-09-02	2015-09-01
	CJ대한통운	택배회사	2014-08-05	2015-08-04

17)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300)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은 청년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 하여금 대학·일반고교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과정 등을 실시한 후 취업 등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334억 7,000만원으로, 이 중 27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5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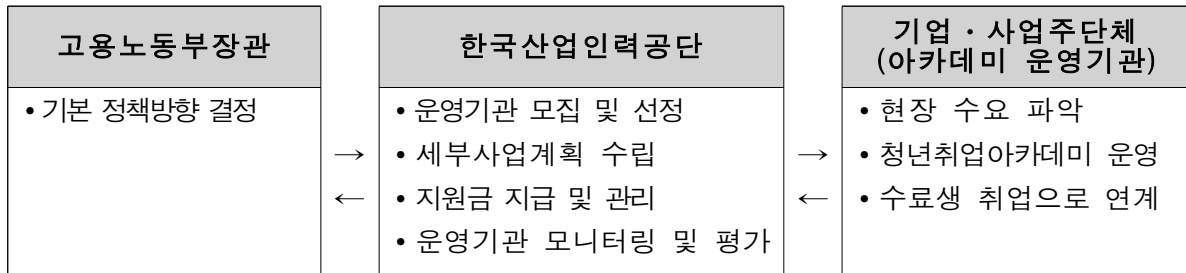
사업명	2014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3,470	-	-	-	33,470	27,922	-	5,548

이 사업은 운영기관³⁹⁾이 협약을 체결한 대학 및 참여기업⁴⁰⁾과 협력하여,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과(부)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학과(부)생이 참여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주체임.

39) “운영기관”이란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말함.

40) “참여기업”이라 함은 해당기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수생을 적극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추진방식]



가)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부적정

이 사업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함)」에 따라 추진되는데, 2014년 사업지침을 보면 운영기관 참여 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취업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면서 주당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 고용여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또한 취업실적에 따라 지원금의 30% 금액을 지급할 때에도 고용률과 고용유지기간만 반영할 뿐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고용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보임.

2014년에 고용노동부는 사업 지침에 따라 참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다수의 취업처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참가요건을 갖춘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지급하면서 각 운영기관이 취업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금의 70%는

연수 종료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연수 종료 후 참여자 취업률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였음.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K-move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구인처의 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참가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등과 연계시키도록 하면서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과 구인처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여부만 다를 뿐 사업취지 및 운영방식이 유사함.

“K-move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단기과정 등은 연 1,500만원, 장기과정은 연 2,400만원 이상의 급여수준인 경우에만 취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만 취업실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 I”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월 가구 소득이 차차상위계층(1인가구 기준 월 905,105원) 이하인 가구원 등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K-move 해외취업지원”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I”사업의 집행방식을 감안하면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도 참여자를 취업과 연계할 때에는 참여자가 취업을 통하여 재정지원 없이 자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근로시간이나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취업처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취업과 연계할 때 자립 및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⁴¹⁾.

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저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 330억 3,400만원 중 275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5,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의 불용률이 16.5%로 과다함.

41) 고용노동부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지침 개정으로 표준약정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운영중에 있다고 함.(2015년 표준약정서 : 취업처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정한 기업을 알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도 주3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채용하는 기업을 알선)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운영기관	사업시행주체(한국산업인력공단)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320	01	84개 기업·사업주단체	33,034	-	33,034	27,581	-	5,453	16.5

민간경상보조금의 약 16.5%에 해당하는 54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임.

당초 연수생 모집 계획이 17,000명이었으나, 운영기관 모집 미달 및 학생의 참여 저조로 인해 실제 13,689명만 모집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54억 5,300만원의 과다한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 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다)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미흡

이 사업은 참여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훈련을 청년들에게 제공

한 후 참여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수료한 대학생이 얼마나 참여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는 취업률과 함께 대학생들의 취업수요에 부합하는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음.

이는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낮을 경우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직업훈련과 차별화되기 어렵기 때문임.

사업이 완료된 2013년 실적⁴²⁾을 보면, 전체 취업인원 6,569명 중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인원은 933명으로 전체 취업인원 대비 14.2%에 불과하고 2011년(26.4%) 및 2012년(18.8%)보다 참여기관으로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사업 취업자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현황]

(단위: 명, %)

구분	취업인원(A)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인원(B)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B/A)		
	조기 취업자	수료 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수료 후 취업자	소계	조기 취업자	수료 후 취업자	소계
2011	1,266	2,997	4,263	296	830	1,126	23.4	27.7	26.4
2012	1,165	3,016	4,181	184	602	786	15.8	20.0	18.8
2013	1,512	5,057	6,569	191	742	933	12.2	14.8	14.2

42)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최종 추진실적임(2014년의 최종실적은 최종과정이 2015년 2월에 종료되어 교육수료 후 6개월간 취업률과 고용유지 3개월의 성과를 평가하여 잔금(사업비의 30%)을 지급함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산출 가능함)

이를 운영기관별로 보면 2013년에 총 82개 운영기관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0%인 기관이 25개, 0% 초과 10% 미만인 기관이 33개에 달하고 있어, 운영기관 중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10% 미만 기관의 비율이 70.7%나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운영기관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분포]

(단위: 개, %)

구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				
	0%	0% 초과 10% 미만	10% 이상 40% 미만	40% 이상	계
2011년 운영기관수 (비중)	6 (12.0)	19 (38.0)	14 (28.0)	11 (22.0)	50 (100.0)
2012년 운영기관수 (비중)	25 (42.4)	23 (39.0)	4 (6.8)	7 (11.8)	59 (100.0)
2013년 운영기관수 (비중)	25 (30.5)	33 (40.2)	15 (18.3)	9 (11.0)	82 (100.0)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참여 학생들의 구직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참여 학생들의 구직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1058-300)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사업은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해당 분야 대표 멘토의 실무형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24억 9,000만원으로, 이 중 22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스펙초월채용 시스템구축	2,490	-	-	-	2,490	2,248	-	242

이 사업은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고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년선발, 멘토스쿨에서 멘토링 실시,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취업연계로 이루어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주체임.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절차]

[1단계] 청년선발	[2단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3단계] 청년인재은행	[4단계] 취업매칭								
<p>상담을 통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 관심분야 도출</p>	<p><문화·정보통신 콘텐츠 분야 예시></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운영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멘토스쿨</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프트웨어 산업협회</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조현정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식정보보안 산업협회</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수정의 정보보안기술스쿨</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한국산업 디자이너협회</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정국현의 산업디자인스쿨</td> </tr> </table>	운영기관	멘토스쿨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현정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	지식정보보안 산업협회	신수정의 정보보안기술스쿨	한국산업 디자이너협회	정국현의 산업디자인스쿨	<p>인터뷰 등 멘토의 평가를 통해 청년인재은행 DB 구축</p>	<p>(2차 멘토) 기업 채용담당자</p> <p>(평가 및 채용) 심층면접, 역할 연기 등 역량평가를 통해 채용</p>
운영기관	멘토스쿨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현정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										
지식정보보안 산업협회	신수정의 정보보안기술스쿨										
한국산업 디자이너협회	정국현의 산업디자인스쿨										

가) 멘토스쿨 사업성과 불투명

고용노동부는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보안 등 문화·정보통신 콘텐츠 분야에서 “조현정의 소프트웨어개발 스쿨”, “권석철의 시큐리티 스쿨” 등 멘토스쿨 12개 과정별로 3~6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가능) 기간의 멘토스쿨을 운영하였고, 멘토스쿨 운영기관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멘토스쿨에 참여하는 멘티에게는 1인당 1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급함.

[2014년 스펙조일 멘토스쿨 추진 현황]

(단위: 명, %)

프로그램명	과정 내용	참여 인원	수료자 (율)
조현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스쿨	소프트웨어를 응용하여 전문 프로그램 개발 (1차: '14.5.7~8.29, 2차: 9.1~12.31)	48	35 (72.9%)
권석철의 시큐리티 스쿨	침해사고 대응방법 및 현장중심의 팀프로젝트 수행 ('14.6.23~9.26, 4개월)	35	32 (91.4%)
김유경의 캐릭터 스쿨	캐릭터 제작과정의 이론 및 실습, 캐릭터의 상품화 통합 마케팅 등 ('14.5.1~10.30, 3개월)	40	35 (87.5%)
이경일의 모바일게임 스쿨	java, 웹프로그래밍 등 기초기술 이론 및 Unity3D 전문기술 실습 ('14.5.7~10.31, 6개월)	50	45 (90.0%)
민효기의 빅데이터스쿨	데이터관리 기본이론, 빅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실습 ('14.6.30~11.1, 5개월)	35	32 (91.4%)
유충길의 유니티3D 게임개발스쿨	유니티 3D개발 기초 프로그래밍 이해와 게임개발 앱 개발자 양성 ('14.7.7~12.29, 5개월)	50	48 (96.0%)
신명용의 사용자경험 (UX)스쿨	UX를 겸비한 웹 모바일 관련 개발 및 모바일 개발 전문 프로그래밍 인재양성 (1차: '14.6.25~12.9, 2차: 7.14~12.31)	49	42 (85.7%)
박윤하의 벤처기업 보안스쿨	벤처기업에 필요한 기술 및 네트워크 보안 등 실무중심 교육 ('14.7.1~12.31, 6개월)	50	47 (94.0%)
정석원의 브랜딩스쿨	브랜딩에 필요한 시각디자인분야 5개과정 이론·실습교육 ('14.5.1~10.31, 6개월)	50	46 (92.0%)
전동진의 정보보안스쿨	정보보안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전문 보안 정보보호 인재양성 ('14.7.7~11.2, 4개월)	30	28 (96.6%)
정욱의 Unity기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스쿨	유니티 솔루션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양성 ('14.9.14~12.16, 3개월)	43	41 (95.3%)
최형욱의 IoT(사물인터넷) 스쿨	IoT(사물인터넷) 단말화 위한 디지털논리회로, 프로그래밍 교육 ('14.8.18~11.29, 3개월)	20	17 (85.0%)
계		500	448 (89.6%)

주 : 2개 멘토스쿨이 2개반으로 운영되어 총 14개의 과정 운영

이 사업은 과정별로 최대 6개월의 짧은 교육기간동안 기존의 스펙을 뛰어 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시되는 점, 2014년

에 실시한 12개 멘토스쿨 프로그램을 보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표 멘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임을 감안하면, 이 과정이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201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를 보더라도 멘토스쿨 취업률이 당초 목표 취업률 70%에 훨씬 못 미치는 27.5%에 불과함. 취업률 실적이 멘토스쿨 수료 후 6개월까지 취업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됨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극히 저조함.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스펙초월 멘토스쿨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70	70	청년취업아카데미 초기 취업률 목표 반영	스펙초월 멘토스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 비율
	실적		신규	27.5	-		
	달성도			39.2	-		

아울러 이 사업은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8개 과정(예산 11억원, 240명 참가)의 취업률을 보더라도 52.6%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는 향후 취업률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13년 스펙초월멘토스쿨 운영 실적]

(단위: 명, %)

목표 인원	모집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중도탈 락인원 (탈락률)	단순 취업인원			고용유지취업		
				취업인원 (취업률)	일반 기업	참여 기업	고용 유지인원	일반 기업	참여 기업
240	240 (100)	213 (88.8)	27 (11.2)	112 (52.6)	103	9	107	98	9

나) 성과지표 부적정

고용노동부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로 스펙초월 멘토스쿨 취업률과 운영개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의 성과지표는 단순한 운영기관의 수만을 고려한 지표이므로 이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지표로 보임.

이 사업과 유사 사업인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300) 사업의 경우와 같이 성과지표를 수료율, 동종업종으로의 취업률 등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 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스펙초월 멘토스쿨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70	70	청년취업아카데미 초기 취업률 목표 반영	스펙초월 멘토스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 비율
	실적		신규	27.5	-		
	달성도			39.2	-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 (단위: 개)	목표		신규	10	10	사업 내실화를 위해 10개 과정 운영을 목표로 추진	실제 운영된 멘토스쿨 개수 측정
	실적		신규	12	-		
	달성도			120	-		

다) 피보조기관 이월 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 20억 3,200만원 중 14억원을 집행하고 6억 3,2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의 이월률이 31.1%로 과다함.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교부액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320	01	한국산업인력 공단	2,032	0	2,032	1,400	632	0	68.9

이에 고용노동부는 피보조기관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스펙초월 멘토스쿨 사업비의 경우 2회(선금금 70%, 잔금 30%)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취업성과(취업률, 3개월 고용유지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년의 경우 11~12월에 교육과정이 종료되어 최종 취업률이 2015년 7월에야 산정되므로 잔금이 금년 11월경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인해 이월의 발생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보조기관의 과다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하므로 사업의 조기추진과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일정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편성하여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9) 해외인턴사업(1059-300)

해외인턴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인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52억 5,000만원으로, 이 중 5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해외인턴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해외인턴사업	5,250	-	-	-	5,250	5,240	-	10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부처별로 추진됨에 따라 해외인턴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이유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교육부의 해외인턴 사업 일부(9개 사업)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추진하였고, 2015년부터는 해외취업지원(1035-304) 사업에 통합되어 진행 중에 있음.

가) 해외취업률 제고 필요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 글로벌무역인턴십 등 1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인턴생 671명이 참여하여 192명이 국외에 취업하였음.

그런데 최근 4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연계 시스템 미흡 등의 이유로 해외취업률이 2011년 5.1%, 2012년 7.2%, 2013년 6.4%, 2014년 28.6%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해외취업률 실적이 2014년의 경우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해외인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인력양성보다 취업연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해외취업률 제고 등 취업성과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향후 고용노동부는 운영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 등 해외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최근 4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

사 업 명	년도	참여자	국내취업	국외취업	해외취업률	전체취업률
합 계	2011	1,305	876	66	5.1	72.2
	2012	1,204	605	87	7.2	57.5
	2013	1,462	307	93	6.4	27.4
	2014	671	-	192	28.6	28.6
글로벌무역인턴십	2011	153	39	8	5.2	30.3

사 업 명	년 도	참 여 자	국 내 취 업	국 외 취 업	해 외 취 업 률	전 체 취 업 률
	2012	123	59	3	2.4	50.4
	2013	124	23	6	4.8	23.4
	2014	102	-	15	14.7	14.7
글로벌지역전문가인턴십	2013	266	23	5	1.9	10.5
	2014	106	-	2	1.9	1.9
플랜트해외인턴	2011	400	371	1	0.3	93.0
	2012	280	239	2	0.7	86.1
	2013	281	90	2	0.7	32.7
	2014	79	-	5	6.3	6.3
전시회해외인턴	2011	302	255	7	2.3	86.8
	2012	156	100	1	0.6	64.7
	2013	217	66	1	0.5	30.9
	2014	90	-	11	12.2	12.2
해외한인기업해외인턴	2012	102	40	10	9.8	49.0
	2013	158	12	25	15.8	23.4
	2014	80	-	34	42.5	42.5
국제전문여성인턴	2011	29	26	3	10.3	100
	2012	32	19	2	6.25	65.6
	2013	39	4	3	7.69	17.9
	2014	24	-	0	0.0	0.0
물류인력해외인턴	2012	60	42	12	20.0	90.0
	2013	62	20	14	22.6	54.8
	2014	72	-	25	34.7	34.7
중소기업해외인턴	2011	186	91	32	17.2	66.1
	2012	237	70	43	18.1	47.7
	2013	214	48	30	14.0	36.4
	2014	"사업종료"				
해외관광인턴십	2011	95	47	14	14.7	64.2
	2012	104	30	12	11.5	40.4
	2013	51	18	5	9.8	45.1
	2014	"사업종료"				

사 업 명	년 도	참 여 자	국 내 취 업	국 외 취 업	해 외 취 업 률	전 체 취 업 률
외식기업해외인턴	2011	140	47	1	0.7	34.3
	2012	110	6	2	1.8	7.3
	2013	50	3	2	4.0	10.0
	2014	“사업종료”				
섬유·패션분야글로벌인재양성(2014신규)	2014	33	-	33	100.0	100.0
글로벌중간관리자양성(2014신규)	2014	33	-	31	93.9	93.9
판매및마케팅전문해외인턴(2014신규)	2014	20	-	18	90.0	90.0
동남아호텔관광인턴(2014신규)	2014	32	-	18	56.2	56.2

※ 섬유패션분야글로벌인재양성/글로벌중간관리자양성/판매및마케팅전문해외인턴/동남아호텔관광인턴 과정의 경우, '14년 고용노동부로 해당 사업이 이관된 이후 신규 개설 과정임에 따라 '14년 이후 통계 보유

나) 성과지표 부적정

해외인턴사업의 2014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인데, 해외인턴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지표이므로 개선이 요구됨.

[해외인턴사업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구 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점)	목표		신규	3.0		'14년 고용부 이관됨에 따라 만족도 '보통'	(프로그램만족응답 자수*점수)합계/조사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3.3	-			
	달성도			110.0	-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9개 내역사업이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해외인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인턴사업 중 인력양성보다 취업연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취업성과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프로그램참석자 만족도’는 해외인턴 경험이 해외취업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지표인 바, 이 사업의 이관목적에 감안할 때, 해외인턴사업은 취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다. 직업능력개발사업(1100 프로그램)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013년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3년도 당초 사업비는 3,382억 6,700만원이며, 이월 및 이·전용 없이 예산현액은 3,382억 6,700만원임.

2013년도 집행실적은 3,13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46억 2,9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7%임.

[2014년도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21,222	0	0	321,222	292,763	0	28,441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및보급	1,215	0	0	1,215	1,210	0	5
실업자능력 개발지원	72,135	0	0	72,135	50,046	0	22,071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2,227	0	0	2,227	2,115	0	112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52,869	0	0	52,869	52,198	0	671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24,024	0	0	124,024	123,319	0	705
한국기술대학교 운영지원	34,358	0	0	34,358	34,128	0	230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3,333	0	0	3,333	3,333	0	0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717	0	0	3,717	3,328	0	389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2,844	0	0	22,844	19,861	0	2,983
중장년취업 아카데미운영	4,500	0	0	4,500	3,225	0	1,275

2)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300)

가) 사업 개요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의 채용 후 학습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취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임.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물량배정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실시되는 훈련과 참여자의 수요가 부합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2010년부터 훈련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훈련을 받고 국가는 해당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이른 바 “내일배움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음. 내일배움카드제는 대상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력에 따라 재원이 다른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는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함.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의 2014년 예산 721억 3,500만원 중 500억 4,700원(69.4%)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0억 7,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불용액이 예산의 30.6%에 이를 정도로 집행이 저조한 것은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인원이 감소한 데 기인함.

[2014년 내일배움카드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일반회계)	72,135	0	0	72,135	50,047	17	22,071

실제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인원은 2014년 165,438명으로 2013년 215,248명에 비하여 23.1% 감소한 반면, 훈련 미참여인원은 2013년 18,706명에서 2014년 26,065명으로 28.2% 증가하였음. 신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29,078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인원 및 훈련 실적]

(단위: 명)

구분	신청 인원	발급 인원			해당기간 발급인원중 훈련참여인원			해당기간 발급인원대비 훈련미참여인원			발급시점 관계없이 해당기간의 훈련참여인원		
		계	신규	전직	계	신규	전직	계	신규	전직	계	신규	전직
2008년	10,732	10,450	4,155	6,295	4,482	1,762	2,720	5,968	2,393	3,575	4,482	1,762	2,720
2009년	152,681	149,748	46,351	103,397	83,508	24,776	58,762	66,240	21,575	44,635	87,181	26,345	60,869
2010년	351,214	311,324	80,981	230,343	211,707	55,930	155,926	99,617	25,051	74,417	246,589	66,138	180,630
2011년	378,939	237,804	53,010	184,794	177,694	42,345	135,582	60,110	10,665	49,212	224,367	53,292	171,344
2012년	377,801	189,525	46,926	142,599	163,419	41,224	122,383	26,106	5,702	20,216	191,560	48,939	142,833
2013년	468,839	215,248	48,410	166,838	196,542	44,734	152,115	18,706	3,676	14,723	232,129	53,902	178,564
2014년	402,490	165,438	39,797	125,641	139,373	29,078	110,787	26,065	10,719	14,854	166,812	35,260	132,062

정부는 계좌발급인원 및 훈련참여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실업자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2014년 상반기 제도개편을 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음. 제도개편에서는 훈련희망자의 훈련 필요성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훈련생 관리 및 수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우수훈련기관에게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음.

나) 자부담 환급 미흡

취업성공패키지를 거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에 직접 참여하는 훈련생은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30~50%를 부담함. 이는 훈련생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과잉인 분야에 훈련생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자부담 여부]

훈련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경유여부	계좌제 참여과정	자부담 여부	수당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 취업성공패키지 경유	⇒ 특화·일반 과정 참여	⇒ 없음	⇒ 4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미 경유 (내일배움제 직접참여)	⇒ 일반과정 참여	⇒ 있음 (30~50%)	⇒ 11.6만 원

※취약계층 :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청년 : 18~34세로서 대학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및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중장년층 : 35~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등

다만, 훈련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해당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고 취업한 경우 훈련생이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해 줌으로써 취업을 목적으로 성실히 훈련을 수강한 훈련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교육생이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간 지속근무하는 경우, 자부담한 금액을 환급함.

2014년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과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한 교육훈련생의 자부담액은 총 191억 3,899만원이며, 자부담환급액은 이 중 11.8%인 22억 5,740만원임.

[2014년 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액 및 자부담환급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자부담액	자부담환급액	비 율
신규실업자	3,350,263,859	226,922,490	6.8%
전직실업자	15,788,735,706	2,030,473,378	12.9%
합 계	19,138,999,565	2,257,395,868	11.8%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자의 취업률이 신규실업자 34.7%, 전직실업자 47.5%인 점을 감안할 때, 자부담환급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은 취업을 하여 자부담환급 대상이 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자부담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자부담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자부담 환급에 대한 인식 부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됨. 자부담환급제도는 구직자가 성실하게 훈련을 이수하고 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부담액의 11.8%만이 환급되고 있는 것은 환급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동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연례적 위탁사업비 전용

일반회계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210-15목)를 2013년과 2014년 1억 3,300만원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결과 고용노동부는 동 위탁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예산현액	이전용액	집행액	집행률
2012	133	133		95	71.4
2013	133	3	△ 130	0	0
2014	133	3	△ 130	0	0

위탁사업비를 연례적으로 세목 조정하여 일반수용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당초 위탁사업으로 홍보를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일학습병행제 홍보 등이 필요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로 내역변경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위탁사업비의 편성목적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수용비로 전환하여 동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일학습병행 홍보 등에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동 사업의 특성상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홍보비를 편성하였음에도 홍보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비목의 전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이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라) 특화과정 성과 저조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수요자인 실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훈련대상자인 실업자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업교육훈련시설 등은 사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³⁾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시설과 장비, 훈련내용, 훈련교사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과정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하며,⁴⁴⁾ 고용사정의 변화, 긴급한 훈련수요 발생,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별도로 특화과정을 인정할 수 있음.⁴⁵⁾ 2014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들을 위하여 한식조리기능사반 등 5개의 특화과정을 인정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음.

43)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6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①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4)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의 특례) 제17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심사·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설·장비, 훈련교사·강사, 훈련내용, 산업·지역별 훈련과정 공급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1. 현장훈련이 포함된 훈련과정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훈련과정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
4. 삭제
5.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 가. 취업취약계층 특화과정
 - 나. 훈련교사의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 다. 훈련수료생 능력평가를 통해 훈련의 품질관리가 우수한 과정

45)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고용사정의 변화, 긴급한 훈련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화과정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 실업자 훈련에 비하여 취업률 등 성과지표가 낮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훈련생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2014년 훈련내역을 보면 훈련인원 과다 직종으로 지목된⁴⁶⁾ 음식, 미용, 디자인, 회계 관련 직종 훈련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대 훈련인원 과다직종은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실업자가 다수 훈련받고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므로, 취업취약계층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타 직종에 비하여 전반적인 취업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실제 2014년 특화과정의 취업실적을 보면, 수료인원 40명 가운데 6명만이 취업되어 취업률이 15%에 불과함.

46) 경영·회계·사무 관련,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음식서비스 관련 직종을 4대 훈련인원 과다 직종이라 함.<감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2014.5>

[내일배움카드제 특화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취약계층 구분	과정명	훈련기관명	훈련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고용유지인원
북한이탈 주민	한식조리 기능사반	사)북한전통음식 문화연구원 부설 능라전통음식문화평생교육원	5	5	1	0
	그래픽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한국입체교육정보원	9	9	1	1
	전산회계경리실무(회계1,2급 통합)과정	한국입체교육정보원	26	21	2	3
결혼 이민자	헤어 자격증 기초반	주)효경직업개발원	4	4	2	0
	의류수선사 양성과정	모다인	2	1	0	0
합 계			46	40	6	4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별도로 훈련을 공급하려는 기관이 적어 훈련과정을 다양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 및 취업취약계층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화과정을 다양화하도록 훈련기관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1148-300)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을 재설계하고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도 예산액 45억원 중 32억 2,500만원 (72.8%)이 집행되고 12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14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4,500	-	-	-	4,500	3,225	-	1,275	0

주: 동 사업은 '15년 고용보험기금 중장년층취업지원(1300-1347-352) 내역사업으로 통합운영

저출산·고령화로 핵심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고학력이며 전문분야 직업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널리 인정됨. 그러나, 중장년 노동자들은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에게 생애재설계 멘토링을 하고 그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동 사업을 수행함.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며, 사업세부계획 수립,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함. 운영기관은 중장년층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력진단과 함께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수행업무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정책방향 결정 -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도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 세부계획 수립 - 운영기관 모집 및 심사, 선정 - 운영기관과 약정체결 - 운영상황 관리·감독 - 지원금 지급 · 관리 - 운영기관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홍보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운영 및 관리 -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운영상황 월별보고 -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성 - 취업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연수생 경력관리 및 사후관리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시범사업 당시 92.2%의 수료율, 50.0%의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임에 따라 2014년부터 본격 수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고용보험기금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통합되었음.

[2013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시범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

지역	훈련기관	정원	모집인원	모집율	중도탈락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순중도탈락	조기취업				
서울	연세대 산학협력단	30	30	100.0	1	1	28	93.3	18	64.3
	중앙대 인적자원개발연구소	25	25	100.0	0	1	24	96.0	10	41.7
	한국생산성본부	30	18	60.0	1	1	16	88.9	2	12.5
	한국표준협회 본부	30	30	100.0	0	0	30	100.0	8	26.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66	66.0	5	5	56	84.8	15	26.8
	CJ푸드빌	40	48	120.0	4	2	42	87.5	13	31.0
수원	(주)케이티	120	108	90.0	1	3	104	96.3	104	100
용인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	115	103	89.6	5	2	96	93.2	32	33.3
성남	YTC직업전문학교	15	10	66.7	2	0	8	80.0	0	0
계		505	440	86.7	19	15	404	92.2	202	50.0

가) 채용연계실적 저조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의 수행과정에서 ① 전체 취업률과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② 훈련생 선발 이후 경력진단이 모호하고, 세부적인 커리어 코칭이 부재하며 ③ 중장년은 프리랜서 활동,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나 취업률 산정시 프리랜서나 창업 등의 고용을 불인정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① 계획인원의 50% 이상 채용약정을 의무화하고 ② 훈련프로그램 단계를 “선발-생애재설계-기본교육-기업맞춤취업훈련-커리어코칭-사후관리”로 개선하며, ③ 훈련기관이

중장년의 경제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취업률로 인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실시하였음.

2014년 사업 수행 결과 전체 수료자 1,523명 중 462명(30.3%)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업관리기간이 종료한 수료자 중 49.0%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2014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실적]

구분	전체 취업률	취업관리기간 종료	취업관리기간 중
취업률	30.3%	49.0%	27.4%
수료자	1,523명	208명	1,315명
취업자	462명	102명	360명

다만, 전체 59개 과정 중 취업률이 20% 미만인 과정도 1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과정의 성과가 저조하며, 취업인원에는 프리랜서 활동, 창업 인원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한 인원은 수료자 1,523명 중 307명(20.2%)으로 파악됨.

[2014년 취업률별 실시과정수]

(단위: 개)

	0~20%	20~40%	40~60%	60~80%	80~100%	계
개수	14	16	17	7	5	59

특히, 2014년도에는 사전에 모집인원의 50%이상을 취업시키기로 기업과 약정한 운영기관만이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실제 2014년도 기업들은 966명의 인원을 채용하기로 운영기관과 약정하였으나, 해당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은 11.0%인 107명에 불과함.

[2014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별 성과]

(단위: 명)

연번	훈련과정	취업인원	창업	프리랜서	순수취업			채용약정인원	채용약정기업으로의취업자수
					계	고보가입	고보미가입		
계		462	54	101	307	259	48	966	107
1	산업강사 양성	8	0	0	8	8	0	10	8
	의료관광컨설턴트(1차)	1	0	0	1	1	0	13	0
	의료관광컨설턴트(2차)	2	0	0	2	2	0	13	0
	ERP컨설턴트	7	0	0	7	7	0	7	7
	Room Attendant	12	0	0	12	12	0	30	0
2	브레인 트레이너(1차)	16	0	14	2	2	0	35	14
	브레인 트레이너(2차)	21	0	18	3	3	0	35	18
	인텔리전트빌딩매니지먼트	12	0	0	12	12	0	45	2
	NCS기반 과정개발전문가(1차)	4	0	0	4	4	0	0	0
	NCS기반 과정개발전문가(2차)	8	0	0	8	7	1	0	0
3	사회적협동조합창업(1차)	6	0	0	6	3	3	0	0
	사회적협동조합창업(2차)	3	1	0	2	2	0	0	0
	사회적협동조합창업(3차)	2	0	1	1	0	1	0	0
4	창조경제진로취업플레너	17	1	8	7	6	1	12	8
5	글로벌의료관광코디네이터(1차)	4	0	2	2	1	1	20	1
	글로벌의료관광코디네이터(2차)	8	1	4	3	0	3	20	3
	평생교육HRD컨설턴트(1차)	14	0	13	1	1	0	13	1
	평생교육HRD컨설턴트(2차)	6	0	4	2	2	0	13	0
6	아파트관리소장 취업과정	12	0	0	12	12	0	27	8
7	노후설계컨설턴트(1차)	16	1	13	2	1	1	10	9
	노후설계컨설턴트(2차)	12	0	9	3	2	1	10	2
8	외식산업중간관리자	8	0	0	8	8	0	36	0

연번	훈련과정	취업인원	창업	프리랜서	순수취업			채용약정인원	채용약정기업으로의취업자수
					계	고보가입	고보미가입		
9	silver호텔리어 양성	2	0	0	2	0	2	31	2
10	녹색항공물류관리자	7	1	0	6	5	1	35	0
11	커리어컨설턴트양성(1차)	19	7	5	7	7	0	36	0
	커리어컨설턴트양성(2차)	12	0	4	8	7	1	36	0
	커리어컨설턴트양성(3차)	3	0	1	2	1	1	36	0
12	영어전문보육사	12	0	0	12	4	8	19	2
13	건설업공무관리자(1차)	7	0	0	7	7	0	26	0
	건설업공무관리자(2차)	5	0	0	5	5	0	26	0
14	광고컨설턴트양성	19	6	5	8	6	2	17	12
15	내장목공인테리어(1차)	13	0	0	13	13	0	13	8
	내장목공인테리어(2차)	6	1	0	5	4	1	13	1
16	지식서비스IT컨설턴트	1	0	0	1	1	0	13	0
17	보험컨설팅전문가	4	0	0	4	4	0	215	0
18	요트운항관리사	0	0	0	0	0	0	25	0
19	현장융접기능과정	11	1	0	10	7	3	20	0
20	요트운항관광사	4	0	0	4	4	0	25	0
21	양재수선리폼	10	1	0	9	6	3	11	1
22	사회공헌협동조합창업	4	1	0	3	3	0	0	0
23	카페창업(2기)	9	5	0	4	3	1	0	0
	카페창업(3기)	15	4	0	11	7	4	0	0
	카페창업(4기)	12	3	0	9	8	1	0	0
	카페창업(5기)	9	3	0	6	6	0	0	0
	카페창업(6기)	6	1	0	5	5	0	0	0
	카페창업(7기)	9	1	0	8	8	0	0	0
	베이커리창업(2기)	4	0	0	4	4	0	0	0
	베이커리창업(3기)	5	2	0	3	3	0	0	0
	베이커리창업(4기)	6	0	0	6	4	2	0	0
	베이커리창업(5기)	4	0	0	4	4	0	0	0
	베이커리창업(6기)	3	1	0	2	2	0	0	0
	베이커리창업(7기)	6	4	0	2	2	0	0	0
	이탈리안레스토랑창업(2기)	5	3	0	2	1	1	0	0
	이탈리안레스토랑창업(3기)	8	2	0	6	6	0	0	0
	이탈리안레스토랑창업(4기)	4	1	0	3	2	1	0	0
	이탈리안레스토랑창업(5기)	2	0	0	2	2	0	0	0
이탈리안레스토랑창업(6기)	8	1	0	7	5	2	0	0	
이탈리안레스토랑창업(7기)	5	1	0	5	4	1	0	0	
24	세무회계컨설팅전문가	4	0	0	4	3	1	20	0

전과정이 수료인원 중 50% 이상을 기업에서 채용하기로 약정하고 시작한 것임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채용을 약정한 기업에서 사정 변경, 훈련인원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채용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생 또한 채용약정기업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 환경등이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아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중장년층이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직업훈련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제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채용약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채용약정기업이 채용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약정에 법적 또는 행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채용약정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불필요한 투자를 유발하며, 약정기업으로의 취업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채용약정이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되도록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정부는 채용수요가 실제 존재하는지 보다 엄밀히 심사하고, 약정 불이행 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요자인 중장년층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사전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용약정기업으로의 취업이 부진한 것은 동 사업의 훈련을 받은 중장년층이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거부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수료자가 해당 기업의 취업을 거부한 것은 해당 기업이 구직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바, 정부는 향후 보다 질 높은 구인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층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1) 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일반회계 고용평등실현사업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도 예산액은 390억 2,800만원으로, 이 중 22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3,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3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함.

[2014년도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 용	전기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424	-	-	1,424	1,374	0	50
사회공헌일자리지원	6,370	-	-	6,370	5,747	0	623
장년취업인턴제	22,690	-	-	22,690	13,650	77	8,963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8,544	-	-	8,544	1,688	1,157	5,699
합 계	39,028	-	-	39,028	22,459	1,234	15,335

2)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338-300) : 성과 저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85억 4,400만원으로, 이 중 16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6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544	-	-	-	8,544	1,688	1,157	5,699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1345-352))외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순증한 경우와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 등으로 빈일자리가 발생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데, 2014년의 당초 목표인원 30,6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2,433명만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못하였다고 보임.

또한 이 사업은 전일제 근로자 대신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임금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직원 복지비용 등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인당 약 50,000원의 사회보험료 지원으로는 사업주의 유인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 사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목표와는 달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취약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업 개시년도인 2014년에 동 사업을 종료함.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마. 노사정책 프로그램(2000 프로그램)

1) 노사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노사정책 프로그램의 예산현액은 201억 2,500만원이고, 이 중 19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8.7%임

[2014년도 노사정책 프로그램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노동단체및비영리법인지원 (2031-300)	4,588	4,555	0	33	99.3
상생의노사문화구축 (2032-301)	3,179	2,963	0	216	93.2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032-305)	2,845	2,837	0	8	99.7
노사발전재단지원 (2036-311)	9,513	9,513	0	0	100.0
합 계	20,125	19,868	0	257	98.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2032-301)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은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포상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노사협력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14년에는 예산현액 31억 7,900만원 중 29억 6,300만원을 집행(집행률 93.2%)하고, 2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이월액	불용액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3,179	0	3,179	2,963 (93.2)	0	216
내역 사업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기반 구축	587	0	587	531	0	56
	지역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420	0	420	370	0	50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471	0	471	452	0	19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홍보	915	0	915	888	0	27
	공공노사관계경쟁력강화	286	0	286	267	0	19
	임금직무체계 개선 지원	500	0	500	455	0	4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가)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 혼재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사문화구축에 중점이 있으나, 2013년부터 성격이 상이한 임금직무체계개선 지원사업이 내역사업에 포함됨.

임금직무체계개선 지원사업은 ①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② 임금직무혁신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임금직무센터⁴⁷⁾에서 수행함.

임금직무혁신이 결과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문화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성격이 이질적인 사업이 내역사업에 혼재되어 있으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의 목적 및 성격이 모호해지고, 성격이 다른 내역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야 할 것임.

특히, 임금직무센터가 노사정의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고, 향후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별도사업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47) 2013.5.30., 노사정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서 ‘임금직무센터’를 설치하고, 임금체계 실태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나)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운영의 이원화 해소 필요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2008년부터 구축·운영되었음.⁴⁸⁾

현재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콘텐츠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센터에서 제공·관리하고 있음.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은 한국노동연구원(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구축·운영하다가 2009~201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이관 이후 관련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해 오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정보 관련 실태조사 등의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는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이 2015년부터 정보시스템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음.⁴⁹⁾

어느 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콘텐츠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가 각각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48) 당시에는 시스템 명칭이 「임금정보시스템」이었으나, 2011년부터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됨.

49) 2015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시스템 운영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임금직무센터지원사업 예산 활용)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이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임금근로시간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시스템의 이관 및 재이관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다) 관련 홈페이지 관리 부실

동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대국민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으로 구축된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노사상생 플러스’는 노사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 사업 예산으로 구축·운영 중인 홈페이지임.⁵⁰⁾ 고용노동부는 2013년 공모를 통해 홈페이지 이름을 ‘노사브라보’에서 현재의 ‘노사상생 플러스’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동 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홈페이지 개편 이후 ‘노사상생 플러스’ 홈페이지 관리 현황을 보면, 노사문화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2013년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등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됨.

50) www.nosawinwin.or.kr

[노사상생플러스 홈페이지 관리 현황]

홈페이지 카테고리		관리 현황
노사문화 우수기업	생산적교섭우수사례	최종업데이트: 2012. 5
	노사파트너쉽	2014년 실적: 39건
	노사의 사회적책임	최종 업데이트: 2012. 8
지역노사민정	우수사례	2014년 실적: 3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3년 사업내용 설명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노사관계리더		최종 업데이트: 2012. 9
노사정오피니언		2014년 실적: 1건(광고)
노사관계정보	노사뉴스 등	2014년 실적: 6건 최종 업데이트: 2014. 7

주: 2015년 5월 조회

고용노동부는 정책 홍보, 국민의식 제고 등을 위해 각종 홍보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홍보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적은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은 노사공동사업을 통해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임.

노사발전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교육, 국제교류협력,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예산현액 95억 1,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⁵¹⁾

[2014년도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		9,513	0	9,513	9,513 (100)	0	0
내역 사업	노사상생협력교육	397	0	397	397	0	0
	노동분야 국제 교류협력	416	0	416	416	0	0
	노사파트너십프로 그램지원	3,530	0	3,530	3,530	0	0
	노사관계전문가육 성지원	825	0	825	825	0	0
	차별없는일터지원 단운영지원	598	0	598	598	0	0
	일반관리비	3,747	0	3,747	3,747	0	0

주: 1.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은 2013년까지 노사발전재단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4년부터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보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변경됨.

2. 노사관계전문가육성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나, 2014년부터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간접보조사업으로 전환됨.

3.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지원은 별도 세부사업(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4년부터 기관보조사업으로 변경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가) 노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노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이하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노동 분야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국투자기업 및 해외투자기업의 노사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51) 노사발전재단을 기준으로 한 실적집행액은 93억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임.

주요 사업내용은 국제교류협력사업(주요국 노사대표단 초청 등), 외투·해투기업 지원, 노동관계 대외홍보 사업,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개선(국제심포지엄 등)임.

노사발전재단은 해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신규로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14년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노사발전재단이 이를 변경하여 추진한 것임.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해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이 기존에 진행하던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와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적어서 이를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임. 더욱이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의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는 해당 국가 노사정 관련자 초청사업과 함께 진행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음.

[해투기업 지원 사업 비교]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
목적	해외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실적	5회 2014.3.4. 베트남 2014.4.23. 중국	3회 2014.4.10.-11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
	2014.6.18. 인도네시아 2014.8.20. 우즈베키스탄 2014.11.27 미얀마 회당 27명 내외	2014.11.5.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2014.12.23. 베트남, 인도네시아 회당 25명 내외
교육 내용	해당 국가의 노동환경, 법, 제도 인사노무관리 사례 등	경영환경 이해, 문화 이해 분쟁 사례
교육 시간	1회당 3시간 내외 2개 주제 발표	1회차: 1박2일로 진행 2·3회차: 국가별 1-2시간
비고	초청사업과 함께 진행	

주: 2015년에는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만 진행하고 있으나, 2-3개 국가 묶어서 발표, 국가당 1-2시간 내외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이 좀 더 심층적인 교육으로, 워크숍 형태의 1박 2일 교육 또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차별성이 있다고 함.

그러나 2015년에는 ‘해투기업HRM전략세미나’만을 진행할 예정⁵²⁾인 점을 감안할 때 차별성이 많지 않았다고 보여짐.

이상을 종합하면, ‘해투기업 노사분쟁 예방교육’은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안 심사시 논의된 내용과 달리 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52) 노사발전재단, 2015년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 사업계획

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지원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지원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차별없는일터지원단’⁵³⁾을 지원하는 사업임.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차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의 차별 진단과 개선지원,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 예산액은 15억 7,500만원⁵⁴⁾임.

동 사업은 2010년 차별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교육, 상담 홍보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2년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장의 차별진단과 자율개선을 지원하기 시작함.

그러나 사업방향 전환된 이후에도 뚜렷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① 사업장 자율진단 및 차별개선지원

‘사업장 자율진단 및 차별개선지원’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을 진행하고, 자율진단 사업장 중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을 지원(심층진단)하는 것임.

53) 인원: 총 22명(사무소 당 3명 내외)

지역사무소: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54) 사업비 5억 9,8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7,700만원

동 사업의 2014년 성과를 살펴보면, 자율진단을 받은 사업장 수는 2013년 1,168개사에서 2014년 1,983개사로 증가하였고, 진단 결과 ‘차별있음’으로 진단된 사업장 수도 2013년 376개사에서 2014년 945개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차별있음’으로 진단된 사업장 중 개선지원을 받은 비율(지원율)과 개선사항을 이행한 비율(이행율)은 2014년에 오히려 감소하였음. 지원율은 2013년에 비해 9%p 감소(44.1%→35.1%)하였고, 이행률은 3.8%p 감소(7.2%→3.4%)한 것으로 나타남.⁵⁵⁾

[개선지원과 개선이행 실적]

	자율진단	차별있음(A)	개선지원(B) (지원율: B/A)	개선이행(C) (이행률: C/A)
2012	423개사	149개사	-	27개사 (18.1%)
2013	1,168개사	376개사	166개사 (44.1%)	27개사 (7.2%)
2014	1,983개사	945개사	332개사 (35.1%)	33개사 (3.4%)

자료: 노사발전재단(연세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4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14.12를 토대로 제작됨

자율진단 물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차별을 개선한 사업장은 6개사(2013년, 27개사→2014년, 33개사) 증가에 그쳐, 개선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고용차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5) 이에 대해 노사발전재단은, 자율진단 대상은 늘렸으나, 예산 한계로 개선지원 대상을 늘리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동 사업의 최종 목적이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진단이 개선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자율진단건수에서 제도의 최종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지원율 또는 이행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고용차별예방교육

고용차별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체교육, 방문교육, 강사양성교육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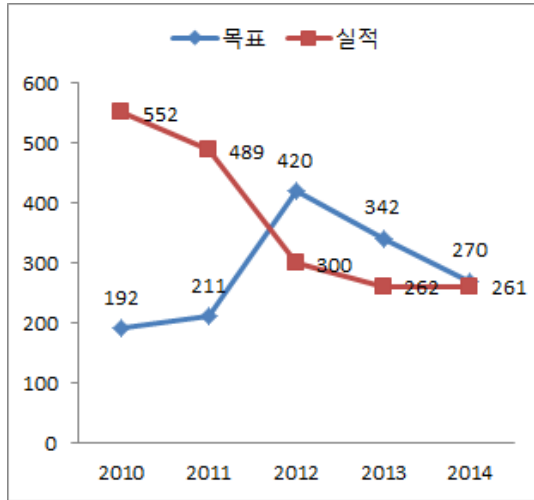
2014년에는 261회에 걸쳐, 총 1만 3,219명을 교육하여 2013년보다 교육횟수는 다소 줄고, 교육인원은 다소 증가함. 그러나 2010년이나 2011년 보다는 성과가 낮아졌음.

이는 2012년부터 차별개선진단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면서 교육사업 및 상담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정된 교육대상과 매년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교육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⁵⁶⁾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차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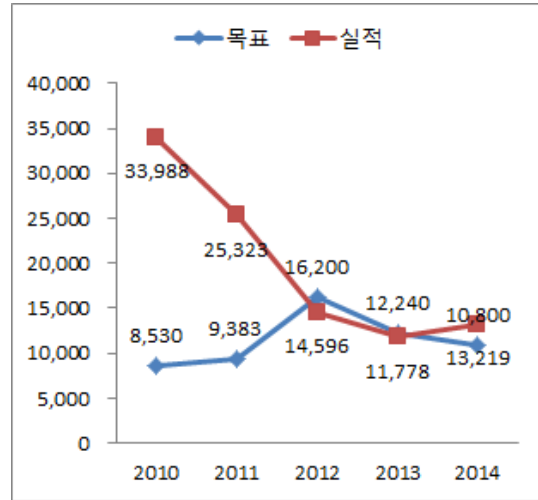
56) 차별없는일터지원단에서도 교육수요 발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2013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연도별 교육의 횟수와 교육인원의 목표와 실적]

< 교육횟수 >



< 교육인원 >



자료: 노사발전재단, 「2014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3쪽, <그림II-8>

한편, 2013년 및 2014년 교육사업에 대한 설문조사⁵⁷⁾에서 교육참여자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각각 14.0%,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사업이 비정규직 뿐 아니라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되어야 하나, 고용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이 교육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57) 「2013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14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③ 상담

6개 지역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⁵⁸⁾ 상담은 내방 및 전화(1588-2089), 온라인, 이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4년 고용차별상담 실적은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인 1,583건인데, 지원단별로 나누어보면, 상담실적은 하루 약 1건 정도에 불과함.⁵⁹⁾

[고용차별상담 실적]

(단위: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인 원	1,890	1,807	1,540	1,583

자료: 노사발전재단

더욱이, 2014년 상담사업에 대한 설문조사⁶⁰⁾ 결과, 상담 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문제 해소 여부에 대한 만족도(3.59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조사된 점을 볼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상담과 구분되는 특성화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8)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기초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상담으로 연계시키거나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권유하기도 함.

59) 1583건/6개소=연 약 264건

60) 노사발전재단, 「2014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바.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2014년도 일반회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은 근로감독역량강화,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등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 192억 2,600만원 중 18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6,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0%임.

[2014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단위 사업-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계	19,224	2	-173 173	19,226	18,261	-	963	95.0
근로감독역량강화 (3031-300)	524	-	-	524	493	-	31	94.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 호 (3031-302)	4,570	-	-173	4,397	3,822	-	575	86.9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3031-304)	1,279	-	-	1,279	1,153	-	126	90.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 원 (3031-307)	1,483	2	-	1,485	1,372	-	111	92.4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3031-308)	5,808	-	-	5,808	5,753	-	55	99.1
근로감독활동지원 (3032-306)	4,178	-	173	4,351	4,350	-	1	100.0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034-313)	1,300	-	-	1,300	1,236	-	64	95.1
일반회계에서 임채기 금으로의 전출금(임채 기금운영)(8425-885)	82	-	-	82	82	-	-	100.0

2) 근로감독역량강화(3031-300)

가) 사업개요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근로감독관의 역량향상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의 교육과정과 법무연수원의 수사실무과정 등으로 구성됨.

2014년도 예산현액은 5억 2,400만원임. 이 중 4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근로감독역량강화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524	0	0	524	493	31	94.1	94.1

나)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서 근로감독행정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100%에 가까운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만족도의 측정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조사결과 반영이고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역량강화 성과지표]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근로감독행정 만족도 (점)	목표	77	81	82	82.5	감독행정 여건 변화, 근로감독행정 만족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13년 목표대비 1%p 상향조정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조사결과 반영, Likert 5점 척도 조사결과를 100점으로 환산	내부문서(고객행복팀 만족도 평가 결과 활용)
	실적	81	77.5	80.75	-			
	달성도	105.2	95.7	98.5	-			

그런데,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그 성과는 대상자의 교육효과와 훈련 효과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을 적절히 측정하여 성과로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현재처럼 교육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서 교육성과를 제대로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만족도 대신 사업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정하거나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필요

동 사업은 근로감독관에게 각종 노동관련 법률, 노동사건 실무, 조정 및 심판업무, 노동사범 수사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다만, 현재 고용노동연수원과 법무연수원⁶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근로관계법·노사관계법 훈련과정, 근로감독업무 과정, 조사관 기본과정 등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비행과 비위⁶²⁾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직무훈련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현재의 교육과정에 조사기법, 업무태도, 공직기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3031-302)

가) 사업개요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① 지방관서에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운영하여 노무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② 최저임금제 홍보 및 지도·감독,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및 홍보를 수행하며, ③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2014년도 예산현액은 4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38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61) 법무연수원 프로그램은 더욱 단순한데 근로감독관 수사실무과정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과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의 법무연수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어오고 있다고 보임.

62) 2015년 초 부산지역 근로감독관의 “노예” 발언으로 문제되었던 바대로, 폭언 등도 근로감독관의 비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문제된 사건 이후 해당 근로감독관이 적절히 직무관련 교육을 받았었는지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논의된 바 있음.

[2014년도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570	0	-173	4,397	3,822	575	83.6	86.9

나) 최저임금 준수 등 홍보사업의 역량강화 필요

동 사업은 최저임금준수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 지원,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홍보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광고와 스티커배부, 책자보급 등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한 지출규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근로계약서작성·교부의무나 초과근로수당지급의무, 주휴수당지급의무와 최저임금액에 대한 공시·홍보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문제된 사업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홍보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향후 매체광고⁶³⁾, 현장교육, 상담, 지도, 스티커배부, 책자배포 등 기존사업 체계의 개편방안을 채택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3) 광고의 수준도 정보를 전달하고 준수사항을 고지하는 방식에 다소 머물러 있고, 지난 여러해동안 크게 변화한 바는 없다고 보임.

[동 사업 관련 각 홍보사업 일람(발췌)]

(단위 :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약 기간	수주자
서면계약 라디오 홍보(CBS)	20	0	20	20	0	0	'14.6.15 ~8.14	CBS
서면계약 라디오 홍보(SBS)	40	0	40	40	0	0	'14.6.15 ~8.14	SBS
라디오 광고물 제작	7	0	7	7	0	0	-	-
서면근로계약 버스광고	131	0	131	131	0	0	-	-
서면계약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50	0	50	50	0	0	'14.6.12	열림기획
최저임금액 광고(지하철, TV, 신문) 및 안내 리플릿·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108	0	108	90	0	18	-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툰키 홍보	150	0	150	150	0	0	'14.4.17 ~12.10	(주)커런트코 리아미디어 에이전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알바십계명 책자 및 알바지킴이 홍보 스티커 제작	24	0	24	24	0	0	'14.2월/7 월	디자인세륜

다) 청소년(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확대 필요

동 사업은 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 외에도 ② 청소년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연중), ③ “알바신고센터” 운영, ④ 특성화고 대상 노동 관계법 특강 실시, 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 ⑥ 청소년 고용 다수 사업장인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협업(공동 캠페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 중 청소년 관련 세사업 일람(밀줄 부분)]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 구성·운영('14.2월~)
 - * '14.12월 현재 변호사 22명, 공인노무사 28명, 민간조정관 98명 근무 중
 - ** '14.12월 현재 권리분쟁 조정대상 35,157건 중 22,924건 조정·해결(65.2%, 전체 민원대비 8.2%)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100명)'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 693개소 적발 및 법제도 개선사항 홍보(46,411개소)
 - *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39만부) 및 리플릿(29만부) 제작·배포(지방관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
 - * 전국 지하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14개 노선) 광고(12월)
 - * YTN 자막광고(12월), 신문 광고(경인일보 등 11개사, 12월) 및 월간노동 광고(2~4월)
- 서면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실시
 - * 전국 시내버스(서울·경기 80대, 대구·부산 50대, 대전·광주 40대) 외부 광고(6.16~7.15)
 - * 라디오(SBS-R, CBS-R) 광고(6.15~8.14) 및 전국 전광판 광고(100여기, 5월)
 - * 표준근로계약서(66만부) 및 스티커(25만부)·포스터(11만부) 제작·배포
-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6,763개소, 연중)
 - * 2,404개소에서 5,678건의 범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43건)
- 민·관 협업을 통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0개소) 지정·운영 등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신고체계** 개편
 - * 교육청과 특성화고 대상 노동법 특강(249회, 39,791명), 고용노동연수원 주관 청소년 노동교육 심화과정(187회, 25,292명), 고용센터 취업특강(300회, 19,970명) 등
 - **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14.11월 현재 전국 131명)하여 교육·상담 실시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미디어 광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프랜차이즈 기업(10개소)과 공동 캠페인 전개 등 청소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 지하철 광고(7.15~8.15), 구인구직 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 이벤트 진행, 알바십계명 소책자(13만부), 리플릿(5만부), 포스터(4,000여개교) 배포 및 SNS 운영 등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연소자) 근로실태, 알바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해왔고⁶⁴⁾, 앞으로도 청소년(연소자)의 근로환경, 근로조건 개선과 청소년 근로자(알바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여부는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보여짐.

그런데 동 사업 예산의 편성·배분을 보면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세사업인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예산의 75.4%가 지출되는 반면 그 나머지 중(24.6%)에서도 일부만이 청소년(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동 사업의 기능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3,445	0	-173	0	3,272	2,786	0	486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406	0	0	0	406	346	0	60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262	0	0	0	262	267	0	-5
연소근로자근로조 건보호	457	0	0	0	457	423	0	34
합 계	4,570	0	-173	0	4,397	3,822	0	575

64)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고용노동부 소관)』 및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각각 여러 건 이상의 지적이 명시되어 있음.

이처럼 청소년(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여러 사업이 2억원 내지 4억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전체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의 일부(25% 상당)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규모의 측면으로만 볼 경우에도 청소년(연소자)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개선요구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시행주체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관련사업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각 기능별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근로감독활동지원(3032-306)

가) 사업개요

‘근로감독활동지원’ 사업은 체불임금 청산·예방, 임·단협 교섭과 노사분규의 사전예방 및 해결지도,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감독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도 예산현액은 4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4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근로감독활동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178	0	173	4,351	4,350	1	104.1	100

나) 정원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도모

전국 각지의 노동청(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직무는 노동현장과 직접 접촉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최일선에서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청(지청)에서는 매년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현안질의에서 다루어졌고 그 요지는 ‘근로감독관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의 적절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동 사업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사범 등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정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업무의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사명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함. 다만,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여전히 현원에 필요한 예산 현액이 부족하여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으로부터 재원을 이·전용한 바 있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4년도 근로감독활동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3	4,178	4,178	0	74	0	4,252	4,238	101.4	99.7	0	14
2014	4,178	4,178	0	173	0	4,351	4,350	104.1	100	0	1

[2014년도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 사업)	목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 사업)	목	
전용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3031-302)	110-02	173	근로감독활동지원 (3032-306)	250-03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총당

현재 근로감독관의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한때 80%대 후반까지 낮아진 충원율이 조만간 정원(100%)에 근접하도록⁶⁵⁾ 노력하고 있음.

향후 정원 충원에 따라 동사업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필요가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함으로써 예산액 부족으로 이·전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65) 현재(2015.5)는 92%상당의 지표를 보이고 있음.

사. 국제고용노동협력(5000프로그램)

1)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7,000만원임. 이 중 135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은 91.2%임. 2014년 불용액은 대부분 분담금 등 납부 당시 환율이 하락하여 발생하였음.

[2014년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집행률
합계	14,870	13,558	0	1,312	91.2
ILO분담금(5031-300)	10,297	9,171	0	1,126	89.1
한-OECD 협력지원 (5031-301)	88	81	0	7	92.0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5031-302)	468	436	0	32	93.2
한-ILO 협력지원 (5031-303)	1,120	1,120	0	0	100.0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5032-303)	410	321	0	89	78.3
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 (5032-305)	109	95	0	14	87.2
외국인취업자관리 (5038-308)	985	944	0	41	95.8
외국인력상담센터 (5038-309)	1,393	1,390	0	3	99.8

주: 1. 외국인취업자관리, 외국인력상담센터는 2014년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이었으나, 2015년부터 국제고용노동협력(5000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국제고용노동협력 프로그램에서 다름.

2. 그 외 외국인력지원센터(1055-350)는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2014년 예산 62억 5,100만원 중 60억 7,400만원을 집행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방법 개선 필요

국제고용노동협력 프로그램의 일부 사업에서 사용되는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래 표에 제시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성과지표나 성과측정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2014년도 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일부 발췌)]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구분	2012	2013	2014	측정방법
한-OECD 협력지원	한-OECD 협력지원건수 (단위: 건)	목표	1	1	2	사전협의 자료조사, 중간 및 최종보고서 발간
		실적	1	1	2	
		달성도(%)	100	100	100	
한-ILO 협력사업	한-ILO 협력사업 LoA 체결건수 (단위: 건)	목표	1	1	1	협력약정(LoA) 체결 건수
		실적	1	1	1	
		달성도(%)	100	100	1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① 한-OECD 협력지원사업

‘한-OECD 협력지원사업’은 협력지원건수를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목표인 2건을 모두 달성하여 100%의 달성도를 나타냄.

2013년까지는 연구비 송금 건수를 성과로 측정하였고, 2014년에는 OECD 연구진 방문시 협력 실적⁶⁶⁾을 성과로 산정함.

고용노동부는 연구 사업비 송금은 연구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로서, 자료조사 등 연구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 사업성과와 더 밀접하다고 판단되어 측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나, 연구진 방문시의 협력활동도 사업지표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입지표나 단순 산출지표보다는 가급적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⁶⁷⁾

동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있어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② 한-ILO 협력사업

‘한-ILO 협력사업’은 우리 정부와 ILO간 당해 연도 협력사업 관련 협력약정(LoA⁶⁸⁾)을 체결한 건수를 성과 지표로 함. 매년 1건의 협력약정 체결을 목표로 하여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협력약정 체결은 사업계획서 승인과 유사한

66) 2014년 이주 근로자 정책 연구사업의 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OECD 사무국 소속 연구진이 방문(1월, 6월)

67)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총괄·다부처), 36쪽

68) Letter of Appointment

성격으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함.⁶⁹⁾

따라서 협력약정 체결 1건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동 사업의 추진 여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목표로 보기 어려워 개선이 요구됨.

3)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규정 준수

고용노동부의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운영규정」⁷⁰⁾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제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어야 함.

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노동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2인, 정부대표 4인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차관이 의장임.

동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협의회 개최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0년 12월 이후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으며, 2013년에는 실무협의회만 2차례 개최하였음.

69) 2014년 사업 추진 절차: ILO에 가이드라인 송부(2013.11.29)→사업제안서 제출(2014.2.21)→집행위원회 개최(2014.3.24 ILO본부와 사업점검회의 개최)→협력약정 체결(2014.6.21)→기여금 송부(2014.6.27)→협력사업 수행

70) 개정 2008.9.11, 노동부 훈령 제673호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 2008.6월, 9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 2009.10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 2010.12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 2013.2월, 4월 국제노동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동 규정은 2008년 8월 개정 당시, ILO 3자협의 협약(제144호)⁷¹⁾ 제 5조에 따라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해당 규정이 준수되었음.

2011년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계속 반영되었으며, 2014년 예산각목에도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참석위원수당이 반영⁷²⁾되어 있으나, 실제 개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2008년 훈령 개정취지와 ILO 3자협의 협약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5년간 협의회 소집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71) 1976년 6월 2일 ILO 제61차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사정 3자 협의에 관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99.11.15 비준함.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 비준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정부-사용자-근로자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든 권한 있는 기관 내에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 간격을 두고 협의를 하되 최소한 일년에 1회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72) 7만원*5명*2회=70만원

4)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5032-303)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사업’은 FTA,⁷³⁾ WTO 등 통상협상의 고용노동분야⁷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시작된 사업임.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 타결된 FTA의 이행을 점검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1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4억 1,0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3%임. 정책연구용역 유찰에 따른 연구개발비 미집행(4,000만원)과 예산절감(4,900만원)으로 인해 8,900만원이 불용됨.

[2014년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	410	0	410	321 (78.3)	0	8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73)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 인도(2010), 미국(2012), 호주(2014) 등과 FTA를 체결 함.

74) FTA에서 고용노동분야는 국제노동기준 준수(노동 Chapter), 고용노동서비스 시장개방(서비스 Chapter)에 해당됨.

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동 사업의 2014년 국외업무여비(220-02목)는 총 1억 6,615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그런데 동 사업의 2014년 예산편성내역⁷⁵⁾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당초 통상협상을 위해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노동협정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국, 페루, 콜롬비아, 벨기에, 일본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국외업무여비의 일부가 동 사업과 목적이 다소 다른 ILO 총회 및 이사회 참석에 집행됨. 이에 따라 인도, 캐나다, 미국, 페루, 콜롬비아 등을 방문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고 노동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추진하지 못함.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통상협상을 위해 지출한 국외업무여비는 총 4,256만원, ILO 총회와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집행액은 1억 2,359만원으로, ILO 총회와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집행액이 전체 국외업무여비 집행액의 74.4%를 차지함.

75) 고용노동부, 201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2014년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추진사업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단위: 명, 만원)

구 분	출 장 목 적	출장지	시기(인원)	집행액
통상협상	한-중FTA 관련	중국	2014.1 (2) 2014.5 (1) 2014.8 (1) 2014.9 (1) 2014.10 (3)	1,202
	한-뉴FTA 관련	뉴질랜드	2014.2 (1)	422
	한-베 FTA 관련	베트남	2014.7 (2) 2014.11 (1)	593
	한중일 FTA 관련	일본	2014.11 (2)	270
	한-EU FTA 관련	벨기에	2014.12 (4)	1769
	소 계			
ILO	제103차 ILO 총회 참석	스위스	2014.6 (15)	5,908
	제322차 ILO 이사회 참석	스위스	2014.11 (9)	6,450
	소 계			
합 계				16,61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동 사업에서 ILO 총회 및 이사회의 참여를 위해 여비를 사용하는 부절적인 예산집행실태는 2013년 결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ILO 총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부족하여 동 사업 예산으로 ILO 총회 등의 참석을 추진하였다고 함.

ILO 총회 등의 참석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동 사업의 예산을 활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매년 동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은,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시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ILO 정이사국 선출 등으로 인해 ILO 이사회 및 총회 참석 규모 확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산을 동 사업이 아닌 기본경비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

ILO 총회 참석, ILO 이사회 참가(3월, 11월) 예산은 고용노동부 기본경비(7011-252)의 국외업무여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2014년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음.

[기본경비(7011-252) 중 ILO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역: 2014년]

(단위: 백만원, 명)

	예산편성내역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합계	833	8	626	20
ILO 총회 참석	552	6	308	11
ILO 이사회 참가	281	2	318	9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2014년 ILO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대책 추진사업의 국외업무여비를 활용하였음.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동일인이 ILO 참석을 위해 국외출장을 가면서, 두 사업의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4일간 ILO 총회에 참석하면서 집행한 국외업무여비 중 394만원은 기본경비에서, 231만원은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대책추진사업에서 집행함. 이러한 사례는 기본경비로 ILO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20명 중 12명에 해당함.

두 세부사업의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각 사업의 추진 목적이 다르고, 세부사업간 예산의 과·부족시 예산 전용제도를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5033-309)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전화상담을 통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억 9,300만원 중 13억 9,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8%임.

[2014년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사업	1,393	-	1,393	1,390 (99.8)	-	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가) 외국인상담원 장기 미채용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차질

외국인력상담센터는 2011년 개소시 10개국 통역언어를 지원하다가 2013년에 이르러 15개 고용허가제 전 송출국의 언어를 지원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는 총 33명의 현지어상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5월말 현재, 27명만이 현지어상담원으로 채용되어 있음. 특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는 현지어상담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임.

[현지어 상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파키스탄	중국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정원	33	3	2	2	5	3	2	2	2	1	1	3	1	4	1	1
현원	27	3	2	2	5	2	2	0	2	1	1	2	0	4	0	1

주: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총 정원 50명(상담원 45명)이며, 5월말 기준 현원은 44명(상담원 39명)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특히, 동티모르는 2013년 8월부터,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3월부터 현지어 상담원이 결원인 상태여서, 현지어 상담 공백기간이 1년을 상회하고 있음.

[현지어 상담원 결원 발생일]

동티모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013. 8. 17	2014. 3. 6	2014. 3. 1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는 동티모르어 등은 소수언어로 지원자가 거의 없고, 지원자의 대부분이 상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비자의 소지자이며, 한국인이 지원할 경우 해당 국가 언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상담센터의 지리적 위치 상 지원자의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보다 급여가 적어 현지어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소수언어 상담원 채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설치목적이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언어 상담원을 채용하여 현지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담센터 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임.

또한, ‘외국인취업자관리사업’을 통해 고용센터에 배치된 통역원⁷⁶⁾의 경우, 대부분 주요 송출국가 언어 사용자라는 점에서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소수 언어 사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보여짐.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지어상담원이 없는 국가(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출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인접국가 상담원이 응대하고 있어⁷⁷⁾ 상담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파키스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의 E-9 체류자격 체류인원은 증가한 반면, 해당 언어 상담 실적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현지어 상담원의 공백이 해당 언어 사용 외국인근로자의 상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⁷⁸⁾

76) 2014년 기준, 34개 고용센터, 80명

77)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동티모르→인도네시아

78) 동티모르와 유사한 체류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현지어 상담원이 채용되어 있으며, 2014년 상담실적은 1,250건으로 동티모르(216건)에 비해 약 6배 높음.

[미채용 현지어 상담원 상담실적(체류인원 대비)]

구 분		2012	2013(A)	2014(B)	증감 (B-A)
파키스탄	체류인원(명)	4,020	4,002	4,113	111
	상담건수(건)	246	1,937	1,106	△831
동티모르	체류인원(명)	1,008	1,189	1,302	113
	상담건수(건)	84	821	216	△605
우즈베키스탄	체류인원(명)	15,414	16,407	17,466	1,059
	상담건수(건)	26,551	15,110	4,571	△10,539

주: 체류인원은 각년도 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지어 상담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담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내역변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미집행액 사용

현지어상담원 미채용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동 사업의 불용액은 300만원에 불과함. 현지어상담원 미채용에 따라 발생한 위탁사업비(약 8,000만원) 미집행액을 12월 19일 예산내역을 변경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상담원 격려, 워크샵 개최 준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임.⁷⁹⁾

그러나 기념물품 제작, 상담원 격려, 워크샵 개최 준비 등은 당해

79)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예산내역변경 사유서, 2014.12.16

연도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상담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집행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발생한 미집행액을 당해 연도 집행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주의가 요구됨.

아. 고용노동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가) 노사정위원회 인건비(7002-150)

‘노사정위원회 인건비’는 노사정위원회의 전문임기제공무원⁸⁰⁾에 대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2014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8억 5,400만원 중 3,600만원을 타 사업에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8억 1,700만원 이며, 이 중 8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함.

80) 노사정위원회에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위해 12명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음(2015년 5월말 기준)

[2014년도 노사정위원회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노사정위원회 인건비	854	△36	817	813	0	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노사정위원회는 동 사업 예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파견수당⁸¹)를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파견수당을 동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인건비를 전용(1,800만원)하여 지급하고 있음.

당해 연도에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매년 10여명의 공무원 파견이 이루어져 파견수당 집행이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파견수당을 동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나) 노사정위원회 운영(7040-307)

‘노사정위원회 운영사업’은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⁸¹ 직급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지급

2014년에는 총 예산 32억 4,600만원 중 4억 5천만원을 타 사업에 전용하였으며, 예산현액 27억 9,600만원 중 2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3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14년도 노사정위원회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B/A)	이월액	불용액
노사정위원회 운영	3,246	△450	2,796	2,585 (79.6)	118	9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4월 갑자기 정부서울청사에 입주⁸²⁾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의 절감액을 청사이전에 필요한 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함.

그 외에 절감액 중 일부 예산액(1억 1,800만원)을 당초 계획에 없던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전용하였으나,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이월함.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방송장비의 내용연수가 16년을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 이후 방송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기획재정부의 전용승인이 12월 23일에서야 통보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

82)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1월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도록 통보받음.

가파르게 예산 전액을 이월한 것이라고 함.

그러나 내용연수가 16년인 방송시설의 노후화는 2014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기획재정부의 전용승인이 늦어 해당 예산을 사고이월하였다고 하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11월 말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월에 대한 책임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늦은 것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임.

2)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7039-309)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사업’은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문별 위원회 운영(회의수당 및 안전검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액은 42억 3,900만원이며, 1억 8,100만원을 전용⁸³⁾하여 예산현액은 44억 2,000만원임. 이 중 43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을 불용함.

[2014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4,239	181	4,420	4,314	0	10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83) 조정 및 심판사건 등이 증가함에 따라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비가 부족하여 전용함.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위원·조사관전문성장화사업’은 위원 워크숍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임.⁸⁴⁾ 2014년에는 예산액 6억 4,700만원 중 3억 1,800만원을 회의수당 등으로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3억 2,900만원이며, 이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함.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별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에게 사례비(1일 10만원)를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4년 위원의 워크숍 참석 사례비로 편성된 예산은 2억 405만원⁸⁵⁾임.

그러나 노동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수당이나 안전검토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워크숍에서 강의나 사례발표 등을 하는 강사나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것만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 지급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수당을 지급할 타당한 사유도 찾기 어려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워크숍은 업무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위원으로서의 소양 함양, 책임의식 고취, 사례발표 및 토론, 의견 수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석 위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사무 조력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생업에 종사하는

84) 노동위원회전문성장화사업의 내역사업은 ①위원·조사관전문성 강화(6억 4,700만원), ②부문별 위원회 운영(28억 3,400만원), ③ 체계적 노사분쟁조정지원(3억 5,200만원), ④ 송무수행이행강제금반환(4억 600만원)임.

85) 산정내역: 10만원*1,855명*55%(참석률)*2일

위원의 워크숍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사례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괄적으로 워크숍 참석 여부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워크숍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 해당 없음

나. 세출

1) 세출결산 개요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9억 4,300만원으로, 이 중 61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14년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합계	43,472	-	18,471	-	61,943	61,339	-	604	99.0
진폐근로자 보호	43,472	-	18,471	-	61,943	61,339	-	604	99.0

[2014년도 에특회계 불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합계		604	
진폐근로자 보호	건강진단	588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건수 및 정밀 진단자 수 감소 * '11년 10,882건→'13년 7,396건→'14년 7,080건

	진폐근로자복지	5	진폐근로자 고령화로 신규 수급자 미발생 및 고등학생 자녀 졸업 등으로 장학금수급 대상자수 감소 * '12년 10명 → '13년 8명, '14년 9명
	진폐예방기본경비	11	진폐사업 운영경비 절감액

다.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1) 산업재해예방사업 총괄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재해예방사업은 진폐위로금지급, 건강진단, 진폐근로자복지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도 당초 사업비는 434억 7,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전입금 184억 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9억 4,300만원임.

이 중 61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0%임.

[2014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3,472	0	18,471	61,943	61,339	0	604
진폐위로금지급	39,956	0	18,471	58,427	58,427	0	0
건강진단	2,178	0		2,178	1,590	0	588
진폐근로자복지	17	0		17	12	0	5
진폐예방기본경비	687	0		687	676	0	11
건강진단지원금	634	0		634	634	0	0

2) 진폐근로자복지(4131-302)

가) 사업개요

‘진폐근로자복지’ 사업은 광업에 종사하였거나 재직 중인 진폐근로자(장해등급 제13급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임.

2014년도 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이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진폐근로자복지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7	0	0	17	12	5	70.6	70.6

나) 점진적인 사업 폐지 검토

동 사업은 진폐근로자의 고교생자녀의 학자금을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그 대상자도 줄어들고 사업비 또한 대폭 감소 추세임.

진폐근로자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12,638명 중 60대 이상이 90%, 70대 이상이 58%(7,336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사업 대상인 진폐장

학생 수도 2013년도 8명에 이어 2014년도에도 9명에 그쳐 사업대상자가 미미한 상태임.

따라서 향후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진폐 요양판정자, 장애판정자 통계('14.말)]

(단위 : 명)

판정결과	계	3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요양	2,437	7	149	623	1,311	334	13
장애	10,201	28	1,066	3,429	4,735	914	29
총계	12,638	35	1,215	4,052	6,046	1,248	42

[동 사업의 현황: 년도별 진폐장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진 폐 장 학 생 수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2014	9	2	1	6
2013	8	1	6	1

※ 년도별 진폐장학생 수 : '11년 24명⇒ '12년 10명⇒ '13년 8명⇒ '14년 9명

4. 고용보험기금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1)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설치되었음.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은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이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4년 고용보험기금 수입액은 9조 4,297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사업주분담금+근로자분담금)이 8조 166억원, 여유자금 회수가 1조 589억원 등임.

[2014년 고용보험기금 수입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계	112,910	105,650	94,297	321	11,032	89.3
사회보장기여금	79,521	89,687	80,166	229	9,292	89.4
재산수입	1,563	1,299	1,298	-	2	99.9
경상이전수입	1,086	2,768	938	91	1,738	33.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4	0.8	0.2	-	0.6	27.4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18	913	913	-	-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9,851	10,589	10,589	-	-	100.0
일반회계 전입금	372	372	372	-	-	100.0

고용보험기금은 수혜자의 성질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자영업자의 실업급여계정,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⁸⁶⁾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계정에 급여의 0.65%씩 납부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주가 급여의 0.25~0.85%를 납부함.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계정에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 0.25%를 납부함.

86)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구분]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주: 자영업자는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서는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2014년 고용보험기금은 사업비로 7조 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조
4,271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음.

[2014년 고용보험기금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12,910	5	-	112,916	94,297	7	3,522
【 사 업 비 】	70,549	5	3,001	73,555	70,026	7	3,522
고용정책	45,222	2	2,582	47,805	46,102	2	1,701
직업능력개발	14,597	1	-	14,598	13,356	3	1,239
고용평등실현	9,630	0.2	419	10,049	9,490	0.3	558
장애인고용증진	29	-	-	29	29	-	-
고용노동행정지원	1,073	2	-	1,075	1,050	1	24
【여유자금 운용】	42,361	-	-3,001	39,360	24,271	-	-

2)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 참여율 제고 필요

가) 사업개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⁸⁷⁾ 따라서 실업급여 계정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는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 각각 보험료를 납입함.

87)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고용보험료 체계]

구분	주요 내용	보험료율(%)
실업급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이직을 방지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u>실업급여</u>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u>모성보호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근로자 0.65, 사업주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 구축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사업주훈련지원, 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p>*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p>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내 기금을 통하여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함.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으로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실업자 훈련으로는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 기타 공공훈련 사업이 있음.

[훈련대상 및 훈련 주체에 따른 사업구조 체계]

구분	재직자 훈련				실업자 훈련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 능력 향상	근로자능력개발 지원	실업자능력개 발지원 전직실업자 능력개발지원	국가기 간·전략 산업직종 훈련	공공훈련
내용	재직자 훈련비를 사업주에 게 지원	중소기업 이 대기업 등의 인프 라 이용 지원	중소기업 에 적합 한 고급 훈련 선 정, 지원	근로자 직업능 력개발훈련 카 드제 이용(중소 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 일용 근로자)	내일배움카 드제 이용	건축, 용 접 등 인 력이 부 족한 직 종 육성	한국폴리 텍 대학/ 한국기술 교육대학 교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감사원, 2014. 5.)를 재구성함

나)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참여비율 제고 필요

재직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실업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재직자 직업훈련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재직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⁸⁸⁾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음. 2012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31.0%였으나, 2014년 29.0%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300인 이상의 기업의 근로자 참여율은 2012년 62.0%에서 2014년 49.1%로 크게 감소하였음. 또한 300인 미만 기업

⁸⁸⁾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을 모두 포함한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전체를 의미함.

근로자의 참여도 2013년 22.2%에서 2014년 21.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 추이]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전 체	31.0	31.1	29.0
300인 미만 기업(A)	18.8	22.2	21.2
300인 이상 기업(B)	62.0	54.3	49.1
격 차(B-A)	43.2	32.1	27.9

주: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훈련참여자/피보험자 *100)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감소한 것은 대규모기업 편중 지원 해소를 위해 2014년 3월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을 하향 조정(80% → 50%)한 데 기인함. 지원을 조정 결과 2014년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근로자는 2013년에 비하여 10만 8,000명 감소하였음.

[기업규모별 지원 인원수]

(단위: 천명)

		2013	2014	증감
참여율		31.1%	29.0%	-2.1%P
기업규모별 지원건수	계	3,601	3,454	-147
	50인미만	1,128	1,130	2
	50-99인	218	221	3
	100-299인	502	465	-37
	300-499인	192	178	-14
	500-999인	271	273	2
	1000인 이상	1,290	1,182	-108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재직근로자 훈련 참여비율의 격차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이나, 재직자 훈련지원 사업(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을 모두 포함)의 목표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참여자수 감소는 사업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임.

정부는 기업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상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1) 고용정책사업 총괄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당초 사업비는 4조 5,221억 6,6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2,581억 7,8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은 4조 7,805억 3,500만원임.

2014년도에는 4조 6,10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1억원은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임.

[2014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14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522,166	0	-20,411 278,589	4,780,536	4,610,196	240	170,100
고용유지지원금	44,823	0	0	44,823	39,795	0	5,028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5,175	0	0	5,175	700	0	4,475
고용촉진지원금	30,487	0	55,221	85,708	84,330	0	1,378
고용창출지원사업	113,203	0	-19,186	94,017	34,723	0	59,294
고용안정지원금	1,000	0	0	1,000	15	0	985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 지원금	10,368	0	0	10,368	10,335	0	3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3,915	0	0	3,915	3,914	0	1

세부사업	'1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14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108,441	0	-1,225	107,216	82,413	0	24,803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4,399	0	0	4,399	4,399	0	0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542	0	0	1,542	1,542	0	0
고용동향조사	2,962	0	0	2,962	2,954	0	8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고 용동향분석	1,566	0	0	1,566	1,566	0	0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22,646	0	0	22,646	22,646	0	0
고용보험전산망관리(정보화)	7,733	0	0	7,733	7,733	0	0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6,251	0	0	6,251	6,074	0	177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42,781	42	0	42,823	40,466	0	2,357
고객상담센터지원	7,430	0	1,225	8,655	8,623	0	32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80,266	0	0	80,266	78,365	0	1,90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19	0	0	819	526	0	293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6,426	0	0	6,426	6,292	0	134
근로자이동실태조사	496	0	0	496	489	0	7
구직급여	3,860,168	0	222,143	4,031,618	3,976,839	0	54,779
조기재취업수당	137,353	0	0	188,046	175,433	0	12,613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96	0	0	296	273	0	23
고용보험사업평가	800	150	0	950	695	240	15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3,370	0	0	13,370	13,274	0	96
근로자고용보험정보관리	1,901	0	0	1,901	1,901	0	0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융자)	415	0	0	415	167	0	248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137	0	0	137	96	0	41
자영업자 실업급여	4,997	0	0	4,997	3,618	0	1,379

2)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1045-351)

가) 사업의 개요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

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재량지출사업⁸⁹⁾으로서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음.

2014년도 예산현액은 51억 7,500만원임. 이 중 7억원을 집행하고 44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5,175	0	0	5,175	700	4,475	13.5	13.5

나) 사업의 독립존치 필요성 검토

동 사업은 과거 집행 부실의 사례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집행률이 0.8%, 2014년도에는 13.5%에 불과하였음. 경기변동, 구조조정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과 비교할 때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했던 것을 알 수 있음.

동 사업은 그동안 (주)쌍용자동차, (주)한진중공업, (주)펜택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하여 기존 지원금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능을 다하였음⁹⁰⁾. 다만, 그 이후 2015년 현재(6월)에는 사업요건에

89)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의무지출사업임.

90) 2014년도에는 (주)펜택 소속의 무급휴직 근로자 235명에 대하여 7억원을 집행하였고 1인당 지원단가를 4만 3,000원으로 인상조정하기도 하였음.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동 사업이 매년 사업대상 선정과 사업비 지출에 애로를 겪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대량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무지출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1045-350)사업이 있고 그 사업 또한 집행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비적 성격을 가진 동 사업은 독립적인 존치의 이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사례⁹¹⁾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대량의 무급휴업·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주지원이 아닌 근로자지원의 재량지출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에 있음.

그러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른 사업(지원금사업)이 있으므로 집행률이 저조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상 독립존치의 이유가 있는지 제도적·정책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91)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팬택 등

[고용유지지원제도와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제도의 비교]

구 분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제도
지원수준		2/3(우선대상) 또는 1/2	평균임금 50% 이내
대상결정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모두 지원(의무지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도 심사 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 (재량지출)
지원금상한액		1일 40,000원	1일 40,000원
지원기간		매년 180일	최대 180일
고용 조정 불가 피한 사유 (요건)	기준시점	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재고량	50%이상 증가	50%이상 증가
	생산량	15%이상 감소	30%이상 감소
	매출액	15%이상 감소	30%이상 감소
	재고량· 매출액추이	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감소) 추세	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 가(감소) 추세
	업종·지역 경제 여건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사전절차요건		없음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 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 실시
휴업·휴직 규모율 요건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초과	*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의 -50% 이상(19인 이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 9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3) 고용촉진지원금(1046-350)

가) 사업개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임⁹²⁾⁹³⁾.

2014년도 계획현액은 857억 800만원인데, 이 중 84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고용촉진지원금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85,708 (당초: 30,487)	0	0	85,708	84,330	1,378	98.4	98.4

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 정비 필요

동 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

92)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13년도 평가대상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 2차고용유지율의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93)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에 “미흡”판정을 받았음. 그 후 제도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는 사유 등으로 사업이 점차 활성화 단계를 맞이하고 있음.

주 및 취약계층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특히 ‘고용률70%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⁹⁴⁾(1036-301)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 또한 연계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동 사업은 종래에 집행부진의 문제를 겪다가 최근 들어 제도개선외의 효과가 나타나면서⁹⁵⁾ 당초 계획액을 넘어서서 초과 집행이 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최근 4년 간 고용촉진지원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1	57,184	37,045	-	37,045	19,651	53.0	53.0	-	17,394
2012	47,892	27,247	-	27,247	15,254	56.0	56.0	-	11,993
2013	39,057	39,057	-	39,057	29,653	75.9	75.9	-	9,404
2014	30,487	85,708	-	85,708	84,330	98.4	98.4	-	1,378

다만, 사업활성화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첫째, 사업목적과 다른 제도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이 보다 원활해지고 있음. 최근 제도개선안으로 요건

94)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95) 제도개선 내용 : 지원금 지급주기 조정(6→3개월), 지원수준 인상(650→860만원) 등

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한 것은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나, 산업현장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그것은 ①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를 채용함으로써 ‘값싼 인력 활용(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⁹⁶⁾ ② 사업대상 근로자로서도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지원금 지급기간(최대 1년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으로 향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둘째, 성과지표의 적절한 관리와 목표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서는 “1차 고용유지율”, “2차 고용 유지율”인데, 동 사업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2차 고용유지율은 동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비교적 높은(70%) 1차 고용유지율 목표에 비하여 2차 고용유지율 목표는 약 45% 정도로 낮은 수준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영속성 보장을 적절히 독려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지표설정으로 보임. 향후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면 해당 지표의 적절한 관리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⁹⁷⁾.

96) 실제로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를 채용시 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 경영·노무·세무 등의 조언을 하는 일부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이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동 사업을 컨설팅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97) 실제 단기간(1년이내)에만 인력활용의 방안으로 고용취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후에도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고용촉진지원금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차 고용유지 율 (%)	목표	65.0	70.0	70.0	60.0	전년 수준 유지	취업지원프로 그램 참여자의 취업후 6개월 시점 고용유지율	고용보험시스템
	실적	64.6	64.8	69.0	-			
	달성도	99.4	92.6	98.6	-			
2차 고용유지 율 (단위)	목표	신규	35.0	45.9	45.0	전년 수준보다 2%p 상향조정	취업지원프로 그램 참여자의 취업후 12개월 시점 고용유지율	고용보험시스템
	실적	신규	43.9	49.6	-			
	달성도		125.4	108.1	-			

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1049-354)

가) 사업개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임.

2014년도 계획현액은 39억 1,500만원임. 이 중 39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915	0	0	3,915	3,914	1	100	100

나) 성과지표 개선

동 사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1일 완성형, 20일 모듈식 훈련과정(120시간)으로 운영되며, 조적, 미장, 타일, 방수, 배관, 도장, 건축목공, 철근, 용접 등 9개 직종 별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직종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인력공급 부족직종, 실업자 훈련 등에서의 공급 부족직종을 중심으로 선정됨.

동사업의 성과지표는 “훈련수급률”과 “훈련생 만족도”이며 2014년 성과목표는 모두 달성하였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수료율 (단위: %)	목표		72.0	82.2	82.2	'13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를 상향설정	(수료자수)/ (참여자수-조 기취업자수)* 100	훈련결과보 고서
	실적		82.2	86.3	-			
	달성도		114.2	105.0	-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생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0.0	80.0	80.0	'13년 목표를 유지	5점 척도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실적		78.3	80.3	-			
	달성도		97.9	100.4	-			

성과지표는 단순 산출지표보다는 가급적 최종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그 목적이 능력향상을 통한 취업성과제고(실업자) 또는 생산성제고(재직자)이므로 대체로 취업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취업자수나 자격취득자수는 동 사업(교육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임.

향후 취업자수⁹⁸⁾, 자격취득자수 등이 지표로 반영된다면 각 분야(직종)별로 성과를 관리하여⁹⁹⁾ 취약·미흡 기능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인력부족직종에 우수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8) 만약 취업률이 성과지표로 측정될 경우, 훈련과 취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음은 자명함.

99)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 직종별로 취업자실적과 자격취득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취업자 및 자격취득자수]

2013	훈련생 4,670명 중 취업자: 1,434명(36.87%), 자격취득: 133명(3.7%)
2014	훈련생 4,703명 중 취업자: 2,312명(56.1%), 자격취득: 248명(6.7%)

① 직종별 취업자 실적

- '13년도 취업률은 36.9%이나 '14년도에는 56.1%로 19.2%p 증가
 - '13년도 취업률 상위직종은 용접(60.0%), 미장(39.3%), 건축목공(38.8%)순임
 - '14년도 취업률 상위직종은 조적(67.8%), 용접(62.5%), 건축목공(58.2%)순임

(단위: 명)

구분	계	건축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2013	1,434	409	19	131	2	19	144	37	50	623
	조기취업	68	6	29	1	9	41	1	8	118
	수료자	986	111	304	64	96	199	135	135	1,578
	취업률(%)	38.8	16.2	39.3	3.1	18.1	60.0	27.2	35.0	36.7
2014	2,312	616	174	100	37	198	334	143	59	651
	조기취업	87	16	22	3	33	106	33	14	136
	수료자	972	341	166	75	344	428	178	136	1,030
	취업률(%)	58.2	48.7	53.2	47.4	52.5	62.5	67.8	39.3	55.8

*훈련중 조기취업자수: '13년(281명), '14년(450명)

*수료자수: '13년(3,608명), '14년(3,670명)

* 취업률: 취업자수/(수료자+ 조기취업자수)*100

② 직종별 자격취득 실적

- '13년도 자격취득률은 3.7%이나 '14년도에는 6.7%로 3%p 증가
 - '13년도 자격취득률 상위직종은 도장(11.7%), 배관(7.3%), 타일(5.6%)순임
 - '14년도 자격취득률 상위직종은 배관(18.0%), 방수(12.0%), 타일(10.9%)순임

(단위: 명)

구분	계	건축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2013	133	21	13	3	-	7	-	-	1	88
	수료자	986	111	304	64	96	199	135	135	1,578
	취득률(%)	2.1	11.7	1.0		7.3			0.7	5.6
2014	248	18	28	1	9	62	7	11	-	112
	수료자	972	341	166	75	344	428	178	136	1,030
	취득률(%)	1.9	8.2	0.6	12.0	18.0	1.6	6.2		10.9

*훈련중 조기취업자수: '13년(281명), '14년(450명)

* 자격취득률: 자격취득자수/ 수료자수*100

5)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050-350)

가)사업개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만 15세~34세 미취업청년이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6개월 간 65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2014년 계획액은 1,084억 4,100만원으로, 이 중 82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248억 3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108,441	-	△1,225	-	107,216	82,413	-	24,803

나) 사업성과 저조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은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원하는 것이며,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된 이 사업은 동일인이 인

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임. 참고로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상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와 민간경상보조금 중 기업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음.

이 사업은 당초 2013년 인턴참여자(47,000명)의 인턴수료 후 계속고용자(26,605명) 및 2014년 인턴참여자(37,000명)의 인턴수료 후 계속고용자(1,200명) 총 27,805명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 1,08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24억 1,3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248억 300만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됨.

이는 2013년 인턴참여자 목표인원이 47,0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43,560명만 참여하여 당초 인턴참여자 목표인원에 미달하였고, 중도탈락자가 과다하며,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도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에 기인함.

최근 4년간 중도탈락율 및 고용유지율 현황을 보더라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남.

[최근 4년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중도탈락율 및 고용유지율 현황]

(단위: 명, %)

사업 년도	인턴 채용 (A)	중도 탈락	수료 종료 (B)	수료 종료율 (B/A)	정규직전환(C)			지 원 종료자 (D)	종료 퇴직자	지원종료 후 6월 시점 고용유지자(E)		
					소계	C/B	C/A			계	E/D	E/C
2011	32,069	9,987	22,092	68.9	20,164	91.3	62.9	16,066	4,083	11,983	74.6	59.4
2012	36,451	10,762	25,689	68.9	23,203	90.3	63.7	18,164	4,437	13,727	75.6	59.2
2013	43,560	11,298	32,262	74.1	29,001	89.9	66.6	22,631				
2014	37,023	5,724	18,554	50.1	15,643	84.3	42.3					

* 지원종료자(D): 전환후 6개월경과자, 종료후 퇴직자: 전환후 6개월경과 후 1년미만 근무자

* 고용유지율은 정규직 전환후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자의 비중을 말하는바, 인턴참여후 최대 1년 6개월경과(인턴기간 3-6개월, 정규직 전환후 1년)되어야 산출 가능하므로 2013년도 하반기 참여자는 2015년 상반기 이후에 최종 고용유지율 산출 가능함.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인턴수료, 정규직 전환, 6개월간 고용유지 과정에서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연례적으로 성과가 저조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시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1056-351)

가) 사업개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

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경기도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상남도 통영시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음.

2014년도 계획현액은 8억 1,900만원임. 이 중 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819	0	0	819	526	293	64.2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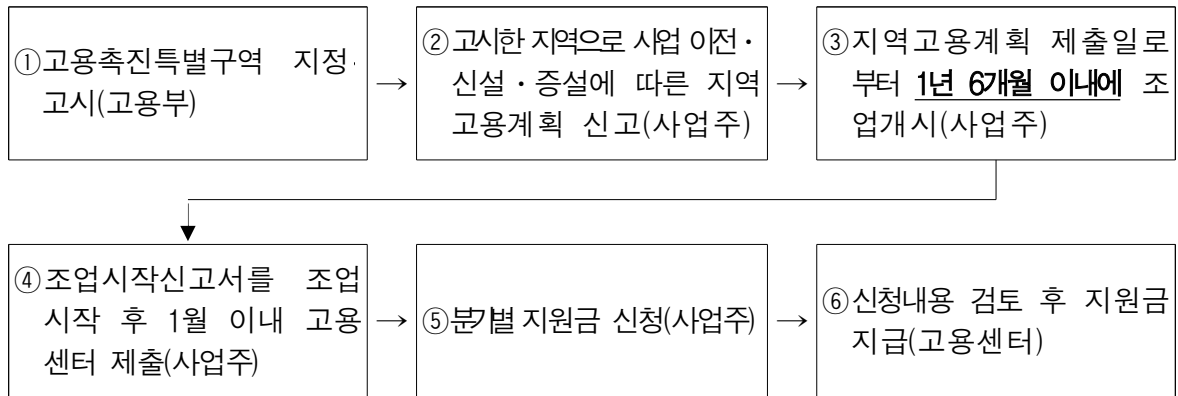
나) 사업의 지속여부 검토

동 사업은 고용촉진특별구역(이하 “특별구역”이라 함)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임금의 반(半)¹⁰⁰⁾을 지원(1일 한도 4만원)하는 사업임¹⁰¹⁾.

100) 정확하게는 월임금의 절반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임(1/3에서 1/2까지 지원)

101) 근거: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사업체계]



※ 지정기간 내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제출 후, 1년 6개월 내 조업 및 근로자 채용 시 지원 가능하므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이후 최대 3년 6개월까지 지원

2014년도에 통영시의 경우 동 사업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었고 2013년, 2014년 2년 간 171억원 상당이 지원되었음.

[통영 특별구역 사업 추진 결과(2013~2015)]

지원 사업명	지 원 내 용		
	지급건수(개)	인원수(명)	지금액(백만원)
계	722	8,429	17,110
고 용 유 지 지 원 금	50	5,230	9,680
지 역 고 용 촉 진 지 원 금	40	367	649
소 상 공 인 지 원	199	199	4,851
취 업 성 공 패 키 지	159	159	61
직 업 능 력 개 발지 원	266	266	278
지 역 맞 춤 형 일 자 리 사 업	8	2,208	1,591

이를 보면 통영 특별구역에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나 소상공인지원사업이 활성화된 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사업이나 기타 지원사업 등은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⁰²⁾. 이는 2013년도에 비해 비교적 나아진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동 사업의 경우 순인원 75명에 대하여 5억 2,6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음.

동 사업은 평택시에서 쌍용자동차 및 관련 업체의 대량해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안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적절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으나¹⁰³⁾, 그 이후 지정된 통영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액

102) 이에 대하여 지역 언론에서도 이러한 편증현상을 보도한 바 있음.(2014년 3월 31일 자 경남신문 보도)

통영지역이 올해 정부의 고용촉진특별지구로 지정 연장됐지만 관련 예산이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 분야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통영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소강당에서 통영시고용협의회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정용길 경상대 해양과학대 교수,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팀장, 서문진 경남테크노파크조선해양에너지플랜트 팀장, 박태주 통영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동훈 통영고용센터 소장, 고영호 통영시 지역경제 과장 등 7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팀장은 “고용촉진특별지구 지정 검토 당시 고용촉진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안정 분야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업교육 업무 등에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영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은 27건, 31억4586만7000원이 지급돼 연인원 2510명이 혜택을 본 반면,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은 3건, 5119만2000원에 그쳤다. 지역 고용촉진 지원대상 인원도 24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지역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 분야에 사업실적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용촉진지구제도가 통영 경제의 장기적 안정화에 당초 목적인 만큼의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란 통영고용센터기업지원팀장은 “현재 지역 고용지원 촉진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업장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절차를 실행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지원기간도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이 돼야 가능한 특수성이 있다”며 “선박 건조물량이 늘고 있고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인 연구위원은 “통영고용촉진특별지구 재연장 조치가 고용문제를 완화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지역의 산업경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선 분야 기대 목표치를 적정선으로 하향설정하고 산업구조도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103) 평택시 특별구역에 대한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원 내용	1,073억원 (‘09.8.13~’10.8.31)
신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 채용 시 임금 1/2(대규모기업 1/3) 1년간 지원	16.9억(1,383명) (‘13.2까지 79.2억, 4,960명)
확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3/4, 대기업 2/3(1일한도 4	7.7억(75건)

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수혜인원도 크지 않다고 보임¹⁰⁴).

향후 신규 특별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동 사업의 집행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1083-350)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액 133억 7,400만원 중 132억 7,400만원(99.3%)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다 음 년 도 이 월 액(D)	불 용 액 (E)	계 획 액
당 초	수 정 (A)						
13,370	13,370	0	13,370	13,274	0	96	14,177

	만원) → 소요비용 90%(1인당 1일한도 5만원)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대기업 2/3, 중소기업 전액(1인한도 300만원)→ 소요비용 90%(1인한도 400만원) 지원	
우선지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디딤돌 일자리, 전직실업 자취업훈련 등 9개 사업	87.2억
추가 특별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등 2개 사업 (중기청)	961.3억

104)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적어도 1년 6월 이내에 조업을 개시하고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시차가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그 적용대상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임.

2011년 이전 4대 사회보험¹⁰⁵⁾은 각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각각 징수하고 있었으나, 4대 보험은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유사하므로 단일 기관에서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할 경우 재정절감 및 국민편익 증대를 이룰 수 있어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 징수를 수행하고 있음.¹⁰⁶⁾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연혁]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은 각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당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배치된

105)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11.12.31.>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정수인력의 실인건비에 따라 분담하며,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담당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음. 이에 고용보험기금은 인건비의 4.5%,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5.9%를 분담하기로 함.

[기금별 위탁사업비 분담기준]

(단위: 명, %)

	인건비	사업비 , 경상운영비	
	분담비율 (실 인건비 기준)	전 환인력	분담비율 (전 환인력 비율기준)
고용보험	4.5	149	5.9
산업재해보상보험	5.0	168	6.6
국민연금	26.0	712	28
국민건강보험	64.5	1,512	59.5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집행내역을 보면 합의한 비율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상운영비를 비교하면, 고용보험기금은 5.9%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2.9%, 2012년 7.3%, 2013년 6.7%, 2014년 6.3%를 분담하는 등 분담비율보다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도 합의된 비율 6.6%보다 많은 2011년 14.1%, 2012년 7.7%, 2013년 7.3%, 2014년 7.1%를 편성·집행하였음.

[2011~2014년 4대 기금의 경상운영비 예산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예산(B)	비율 (B/A)	예산(C)	비율 (C/A)	예산(D)	비율 (D/A)	예산(E)	비율 (E/A)
고용보험	322	12.9	158	7.3	244	6.7	272	6.3
산업재해보상보험	352	14.1	167	7.7	264	7.3	306	7.1
국민연금	729	29.1	729	33.8	1,140	31.5	1,152	26.6
국민건강보험	1,101	44.0	1,101	51.1	1,973	54.5	2,594	60.0
합 계(A)	2,504	100.0	2,155	100.0	3,621	100.0	4,324	100.0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합의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은 기금별로 예산 편성주체, 편성시점이 다른데 기인함.

첫째, 편성주체의 차이임.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에서 계획안을 편성하는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 기금계획운용안을 편성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위탁사업비 총액이 결정되고 각 기금이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금의 사정에 따라 징수위탁비를 각각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각 기금별 예산 편성 및 심의 주체]

	편성주체	심의 확정주체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둘째, 예산편성시점의 차이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¹⁰⁷⁾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됨.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므로 연례적으로 11월에 편성되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

이로 인하여 징수위탁비 총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11월에 이르러서야 확정이 되며, 각 기금은 총액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기금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경우, 일부 기금이 합의된 비율보다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가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저해

107)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게 됨. 따라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전 위탁사업비 총액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각 기금이 합의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8)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용자) 및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가) 사업 현황¹⁰⁸⁾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1090-350)¹⁰⁹⁾은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취업이 어려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직자에게 생계형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도에는 계획현액 4억 1,500만원 중 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8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40.2%임.

[2014년도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15	0	0	415	167	248	40.2	40.2

108)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사업(1090-350)과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7076-233)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하에서 같이 검토를 하기로 함.

109)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여성가장 또는 실직고령자에게 최고 7천만원 범위 내 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이자: 연리 3%, 매월 균등납부)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10년 12월 31일에 신규지원을 종료하였음. 다만, 기존 지원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자에 대한 이전지원 및 재계약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지원(용자)사업의 최근 사업실적]

2010	142명에 대하여 8,711 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90억원)
2011	28명에 대하여 1,258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16억원)
2012	24명에 대하여 937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10억원)
2013	12명에 대하여 327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8억 8천만원)
2014	4명에 대하여 167백만원을 지원(당초 사업예산규모 4억 1,500만원)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7076-233)사업¹¹⁰⁾은 창업점포지원사업(용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홍보비,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2014년도에는 계획현액 4억 4,8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함.

[2014년도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48	0	0	448	435	13	97.1	97.1

110) 2015년부터 “고용안정용자사업운영”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음.

나) 사업의 종료 검토

동 사업들은 이미 본 사업을 종료하였고 이전지원, 재계약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운영사업은 채권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원래 실업자 창업점포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실직여성가장, 전직실업자, 신규청년실업자 중에서 창업희망자에게 보증금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다만, 2007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실직고령자 등에게 보증금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임.

원 사업인 실업자창업점포지원사업의 경우(기종료)나 동 사업의 경우(사업종료예정)에 공통적인 부분은 향후 채권관리의 부분이라고 하겠음¹¹¹⁾. 현재 실업자창업점포지원사업의 경우에 채권관리나 결손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음(2014. 12. 31. 현재).

111) 동 사업은 다른 사업의 모델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출구전략을 더욱 신경써야 할 이유가 있음. 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용자(3054-304) 사업같은 유사사업에서의 전례가 되는 것임.

최근 시행된(2012년부터) 체불청산지원사업주용자 사업은 아직 채권회수(상환)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아니하나, 동 사업인 실업창업점포지원사업의 예처럼 향후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수율이 하락하고 회수저조가 고착화될 소지는 있는 것이라고 하겠음.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용자사업 회수실적과의 비교]

('15. 3월말 기준, 백만원, %)

용자사업명	회수대상금액	회수금액	회수율(누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475	364	76.6
임금체불생계비 용자	24,694	8,831	35.8
직업훈련생계비 용자 (전직실업자)	6,140	1,617	26.3
생활안정자금 용자	29,774	10,746	36.1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채권관리, 결손처분 현황]

채권관리 현황 ['14. 12. 31. 현재, 누적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소계	보증금	이자
건수	2,082	61	2,021
금액	4,508	1,209	3,299

결손처분 현황 ['14. 12. 31. 현재, 누적분] (단위: 백만원)

구분	소계	보증금	이자
금액	844	127	717

- '12년부터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어 채권회수만 진행되고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악성채권이 대부분으로 채권관리에 한계

점포지원사업 등의 경우 사업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채권회수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에도 종결을 앞두고 채권관리나 결손처분 등의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2016년 예산부터는 창업점포지원사업(1545-350)은 종료되나 여전히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비(7076-233)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 회수 등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후자의 사업에 있어서 채권회수 등의 방안을 실행할 이유가 현저함.

9) 자영업자 실업급여(1092-350)

가) 사업개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계획액 49억 9,700만원 중 36억 1,800만원(72.4%)을 집행하고 13억 7,900만원을 불용함.

[2014년 자영업자 실업급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다 음 년 도 이 월 액(D)	불 용 액 (E)	계 획 액
당 초	수 정 (A)						
4,997	4,997	0	4,997	3,618	0	1,379	5,795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2006년 사업주의 전직·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 자영업자에게도 폐업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이 시행되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연혁]

- '06년 사업주의 전직·폐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우선 도입
- '08.12.16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09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
- '09.2.23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반영
- '09.12.29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1.6.30.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의결
- '12.1.22 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실적 저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취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나, 제도 운용 결과 자영업자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14년 말 기준 16,985명에 불과하며, 2012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신규가입자보다 소멸자가 많아 가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단위: 명)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입 유지자	3,882	10,287	21,217	20,864	19,454	18,097	17,925	17,908	17,361	17,172	17,120	16,985
신규가입 자(A)	4,035	6,875	12,572	1,347	1,399	1,391	1,466	1,564	1,024	1,246	1,298	1,350
소멸자 (B)	153	470	1,642	1,700	2,809	2,748	1,638	1,581	1,571	1,435	1,350	1,485
증감 (A-B)	3,882	6,405	10,930	-353	-1,410	-1,357	-172	-17	-547	-189	-52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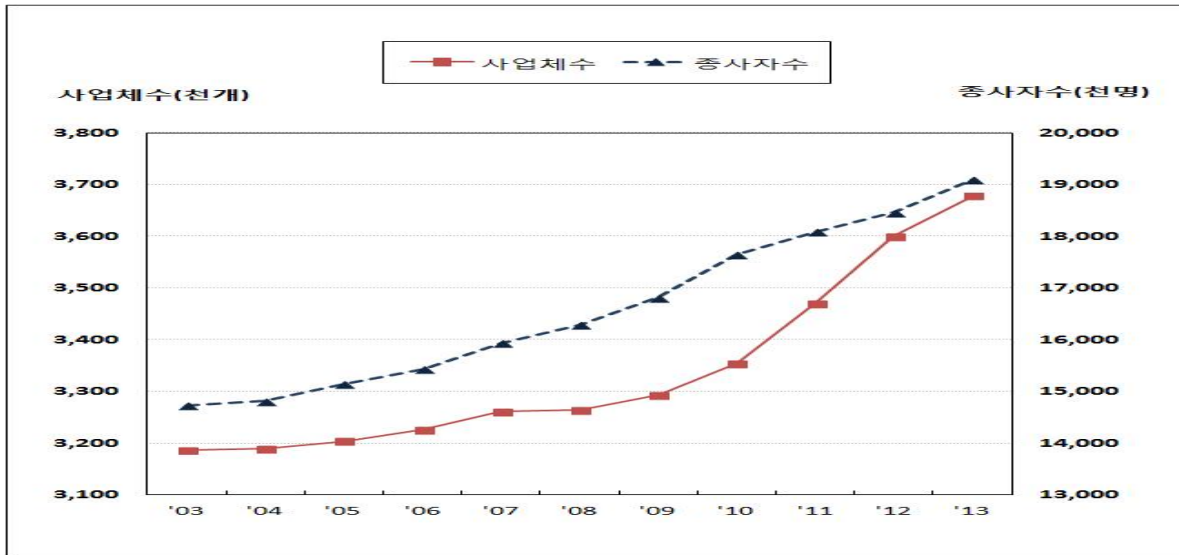
주: 가입유지자수는 해당 분기말 기준이고, 신규가입자수 및 소멸자수는 해당분기 누계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장기간을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적으며,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며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 것에 기인함.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도입 취지가 직업 지속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체 자영업자(376만개) 중 극히 일부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 더욱이 전국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가입자수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 제도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임.

[전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천명, 천개)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014. 9

따라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내실화하도록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직업능력개발사업(1100 프로그램)

1) 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2014년도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등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사업비는 1조 4,596억 5,300만원임.

1조 3,35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1,239억 1,2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91.5%임.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14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계	1,459,653	132	0	1,459,785	1,335,615	290	123,912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	399,554	15	0	399,569	370,247	0	29,322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213,254	0	-12,000	201,254	189,930	0	11,324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72,465	0	12,000	84,465	82,335	0	2,13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11,487	0	0	211,487	188,322	50	23,11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208,580	0	0	208,580	165,633	150	42,797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31,090	0	0	31,090	27,945	0	3,145
지역별훈련수요및훈련아수조사	714	117	0	831	728	90	13
국제직업능력측정프로젝트참여	165	0	0	165	74	0	91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장평가	5,205	0	0	5,205	5,025	0	180
일한장차격 연계형고졸인력양성	2,100	0	0	2,100	2,100	0	32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62,577	0	0	62,577	53,227	0	9,350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40,259	0	0	40,259	40,259	0	0
HRD확산 및 역량강화	1,718	0	0	1,718	1,718	0	0
숙련기술장려사업	23,352	0	0	23,352	23,352	0	0
외국인력고용지원	2,705	0	0	2,705	2,705	0	0
기술·기능인력양성	65,663	0	0	65,663	64,836	0	827

세부사업	1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14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능력개발훈련지원	8,289	0	0	8,289	8,289	0	0
신기술시설·장비확충	39,796	0	0	39,796	39,796	0	0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14,240	0	0	14,240	14,240	0	0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연수	7,867	0	0	7,867	7,867	0	0
신기술교육훈련매체개발	1,930	0	0	1,930	1,930	0	0
직업능력개발노후장비교체	9,500	0	0	9,500	9,500	0	0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용자)	5,643	0	6,000	11,643	11,196	0	44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30,000	0	-6,000	24,000	23,992	0	8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500	0	0	1,500	369	0	1,131

2) 근로자능력개발지원(1146-351)

근로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 계획액은 724억 6,500만원이었으나, 연도중 계획변경하여 계획현액을 844억 6,5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중 823억 3,500만원(97.5%)을 집행하였음. 계획변경 증액은 훈련참여자수 증가에 따라 훈련비용 지급액이 증가한 데 기인함.

[2014년 근로자능력개발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다 음 년 도 이 월 액 (D)	불 용 액 (E)	계 획 액
당 초	수 정 (A)						
72,465	84,465	-	84,465	82,335	-	2,130	92,801

가) 50세 이상 인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미흡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파견·일용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함)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도 퇴직 이후의 일자리를 재직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시켰음.

2014년 정규직 근로자 117,500명, 비정규직 근로자 91,500명, 대규모 기업의 5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4,3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결산결과 정규직 151,646명, 비정규직 133,768명,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2,182명을 지원하였음.

[2014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계획 대비 결산 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결 산	
	계획인원	금액	실시인원	금액
정규직	117,500	36,660	151,646	38,461
비정규직	91,500	34,963	133,768	42,721
50세 이상 대규모	4,300	842	2,182	640
합 계	213,300	72,465	287,596	81,822

50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현재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재취업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수요가 많지 않으며, 50세 이상 근로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향후 50세 이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147-350)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훈련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2014년 예산액 2,114억 8,700만원 중 1,883억 2,200만원 (89.0%)이 집행되었으며, 231억 1,500만원이 불용됨.

[2014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211,487	211,487	0	211,487	188,322	50	23,115	185,657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분류방식에 따라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 상향식 훈련과 하향식 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상향식 훈련은 수요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훈련종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것이며, 하향식 훈련은 정부가 종목 및 훈련인원 등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식 훈련은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훈련이 실시됨으로 인하여 취업가능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하향식 훈련은 산업계 수요에 맞춘 훈련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교육훈련 실시를 방지하고 구인구직수요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하향식 훈련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본격 도입함에 따라 상향식 훈련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내일배움카드제는 국가적 중요성이 있으나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인력공급이 충분치 않은 산업분야의 인력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생을 특별히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비교]

구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사업목적	기간산업·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향후 인력수요 증대 예상 직종에 대한 인력 양성·공급	실업자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취업 촉진
수혜대상	15세 이상 실업자(비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및 대학 최종 학년 재학자 등 포함)	청년 등 미취업한 전직/신규실업자
사업내용 (지원조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수강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단가를 기준으로 위탁 훈련기관에게 지급(전액 국비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을 훈련생에게 지급 * 기본장려금: 200,000원, 교통비·식비: 11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수강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훈련서비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에 지급(1인당 200만원 범위 내 훈련비 지원, 일부 훈련생 자기부담)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을 훈련생에게 지급 * 교통비·식비: 116,000원

주: 훈련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일반 참여자 구분 지급함

기간직종이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건설·기계·재료 등의 업종 중 인력이 부족한 시공, 조립, 용접 등의 직종을 의미하며, 전략직종이란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의미함.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국가기간·전략직종 외에 서비스산

업의 인력 공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비스직종을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동 사업의 지원분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분야의 위탁훈련기관을 선정함. 선정된 기관은 350시간 이상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교육훈련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함.

가) 예산 과다 편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3년간 불용액은 102억 8,500만원, 2013년 465억 7,000만원, 2014년 231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음.

[2012~2014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2	178,020	178,020	0	178,020	167,735	94.2	0	10,285
2013	200,748	200,748	0	200,748	154,178	76.8	0	46,570
2014	211,487	211,487	0	211,487	188,322	89.0	50	23,115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집행이 저조한 것은 훈련생 모집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실제 훈련인원은 목표

인원 34,500명보다 19.2% 많은 41,141명이며, 집행률이 76.8%에 불과하였던 2013년도 훈련인원이 목표인원보다 52.3%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훈련생 모집 부진이 집행부진의 주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011~2014년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내역]

(단위: 명, %)

연 도	목 표 인원	실시 인원(A)	수료 인원	중도탈락 인원	수료율
2011	18,940	25,199	18,414	6,785	73.1
2012	19,236	28,878	21,942	6,936	76.0
2013	25,000	38,070	29,216	8,854	76.7
2014	34,500	41,141	31,557	9,584	76.7

훈련인원 감소보다 인원당 투입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이 예산 집행부진의 주원인으로 보임. 예산 편성시 1인당 월 731,000원의 훈련비, 116,000원의 식비·교통비, 100,000~300,000원의 훈련장려금을 계획하여 1인당 평균 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인당 지출액은 45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2014년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결과]

(단위: 명, 천원)

예산안 편성			집행결과			
총지금액 (A)	예정인원 (B)	평균지금액 (A/B)	총지금액 (C)	실시인원 (D)	수료인원	평균지금액 (D/C)
211,487,000	35,220	6,004	188,322,000	41,143	29,226	4,577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엄밀히 추계하고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 또는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경우 예산상황에 맞추어 위탁집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동종직종 취업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훈련생 만족도와 취업률, 훈련생 수료율로 나타남. 2014년의 성과지표를 보면, 훈련생 만족도는 89.9점으로 성과목표 82.4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훈련생 취업률은 성과목표 83.1%보다 낮은 66.4%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 성과 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훈련생 만족도 (점)	목표	82.3	82.3	82.4	89.0	최근 3년 수준 감안하여 설정	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직업훈련 정보망
	실적	88.0	89.4	89.9	-			
	달성도	106.9	108.6	109.1	-			
훈련생 취업률 (%)	목표	83.0	83.0	83.1	70.0*	전년도 목표수준 감안하여 설정	[수료 후취업 자수(조기취업 포함)/수료자 수(조기취업 포함)] *100	직업훈련 정보망
	실적	66.1	63.8	66.4	-			
	달성도	65.4	55.2	79.9	-			
훈련생 수료율 (%)	목표	-	80.0	81.0	85.0	전년도 목표수준 감안하여 설정	[수료자수/참여자수 (조기취업 제외)] ×100 *당해년도 종료된 과정 대상	직업훈련 정보망
	실적	-	86.9	86.8	-			
	달성도	-	108.6	107.1	-			

동 사업의 목적은 인력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을 유인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 취업률보다는 훈련받은 직종으로 해당 인원이 취업하였는지가 사업성과의 중요한 요소일 것임.

그런데, 동종직종 취업률을 보면 2013년 51.5%, 2014년 42.5%로 나타나는 등 취업인원 중 훈련직종으로 취업한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실적(2015년 5월 기준)]

(단위 : 명, %)

연 도	목표 인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A)	취업인원			취업률 B/(A+C)	동종직종 취업인원 (D)	동종직종 취업률 D/(A+C)
				소계 (B)	조기 취업(C)	수료후 취업			
2013	25,000	38,070	29,539	22,173	3,845	18,328	66.4	17,203	51.5
2014	34,500	41,141	31,557	20,101	4,042	16,059	56.5	15,117	42.5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주: 1. 취업률은 훈련 종료후 6개월까지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4년 취업실적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취업인원에 조기취업 포함한 것으로 조기취업인원 제외하는 취업률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300만원이 한도인 반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1인당 지원금액이 457만원에 이르는 고비용 훈련임을 감안할 때,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동종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훈련기관 성과 평가시 취업률 반영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 변경하였으며,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취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기관 평가 반영은 사업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려움. 더욱이 실업자능력개발사업(내일배움카드제)에서도 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한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기로 한 것에서 교육훈련직종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상 동일직종 내에 취업한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기로 하는 등 훈련과 취업직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동일직종 취업률을 고려하여 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훈련이수자가 훈련분야 직종에 취업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희망분야와 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바, 훈련대상자에 적합한 훈련이 안내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48-35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액 2,085억 8,000만원 중 1,656억 3,300만원(79.4%)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7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1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208,580	208,580	-	208,580	165,633	150	42,797	229,59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동 사업을 위탁받아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2014년 포스코(주) 등 180개소의 공동훈련센터¹¹²⁾¹¹³⁾와 105,418개의 중소기업에서 209,117명의 훈련을 실시하였음.

가) 훈련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동 사업은 컨소시엄에서 자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를 교육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함. 구체적으로 정부는 선정된 공동훈련센터에게 시설·장비비, 인건비의 80%, 운영비·프로그램개발비의 100%를 보조하며,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는 7년 이상 훈련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이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타 단체의 시설 및 교육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업간 연계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기인하는 것임.

112) 둘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113)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함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권소사업 예산집행현황 및 훈련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백만원)	79,040	73,691	122,861	139,772	170,356	208,580
운영기관(개소)	96	102	134	158	168	180
훈련인원(명)	230,573	230,982	251,895	271,673	222,186	209,117
참여중소기업(개소)	110,907	105,778	120,950	114,771	99,040	105,318

그런데, 동 사업 예산은 2009년 790억원에서 2014년 2,08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훈련참여인원은 2009년 230,573명에서 2014년 209,117명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훈련인원 감소는 운영기관과 협약기업간 중복협약을 제한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체계 변경은 2013년에 이루어졌는데 2014년의 경우 2013년보다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훈련인원 감소의 원인을 사업체계 변경에서만 찾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¹¹⁴⁾

114) 고용노동부는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장기 채용예정자 훈련 비중 증대로 인하여 훈련인원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채용예정자 훈련 비중 증가 추이]

(단위: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230,982	251,895	271,673	223,186	209,117
항상훈련	225,337	244,159	260,031	213,663	194,003
채용예정자훈련	5,645	7,736	11,642	9,523	15,114
평균훈련인원	681,130	944,078	1,729,578	1,315,222	1,592,810

* “평균 훈련인원”이란 훈련 인원을 [(A과정 훈련수료인원×A과정 훈련시간)+(B과정 훈련수료인원×B과정 훈련시간)+...]=8시간으로 산정하는 인원을 말함.(1일 8시간 훈련 실시 시 훈련인원 1명으로 산정했을 때의 인원)

동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등이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여 산업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역량을 제고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훈련인원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홍보강화와 교육훈련 혜택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연례적 예산 과다 편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012년 61.9%, 2013년 85.8%, 2014년 79.4% 등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2	139,772	139,772	139,772	86,510	61.9	61.9	0	53,262
2013	159,356	170,356	170,356	146,183	85.8	85.8	0	24,173
2014	208,580	208,580	208,580	165,633	79.4	79.4	150	42,797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은 연례적으로 훈련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크게 증액시키고 있기 때문임. 2012년 집행액은 865억 5,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훈련인원을 대폭 증가

시킴으로써 하고 1,703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41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14년에도 전년 대비 22.4%의 예산을 증액시켰으나, 427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특성상 새로운 운영기관 발굴, 참여기관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훈련수요에 대한 파악 없이 평균 20%이상 빠르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예산 심사시 현실적인 훈련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인 훈련참여수요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숙련기술장려사업(1150-354)

가) 사업 개요

숙련기술장려사업은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숙련기술 홍보 등을 수행함. 동 사업의 2014년도 계획액은 233억 5,2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2014년 숙련기술장려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다 음 년 도 이 월 액(D)	불 용 액 (E)	계 획 액
당 초	수 정(A)						
23,352	23,352	0	23,352	23,352	0	0	27,424

숙련기술인은 대한민국 명장 및 우수숙련기술인으로 구분되며, 숙련기술전수를 위하여 숙련기술전수자를 별도로 선정·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중 선정된 자로,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에게는 일시장려금(2,000만원)과 연 1회 계속종사장려금(191~381만원)을 지급함.

우수숙련기술인은 7년 이상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로 선정 즉시 일시장려금(200만원)을 수여하며, 선정 이후 7년 이내에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 입학지원금을 지급함. 이외에 15년 이상 산업분야에 근무한 자 중에서 숙련기술전수자를 선발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며, 이들에게는 월 8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지급함.

동 사업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외에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민간 숙련기술인 단체, 기능경기대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

[숙련기술인 지원내용]

대 상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대한민국 명장	-명장증서(대통령), 휘장, 명패수여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 * 계속종사장려금은 선정이후 종사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해외산업시찰 -민간숙련기술자 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지원	-일시장려금 : 2,00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 191~381만원 (연1회)
우수숙련 기술자	-증서(고용노동부장관) -일시장려금 -입학지원금 * 입학지원금은 선정이후 7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일시장려금: 200만원 -입학지원금: 100만원(1회)
숙련기술 전수자	-전수지원금 * 전수지원금은 숙련기술전수자와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각각 전수기간(2~5년이내에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중 매월 지원 -민간숙련기술자 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지원	-전수지원금 숙련기술전수자 : 월80만원(2~5년간)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월20만원(2~5년간)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자	-상금: 2,240~6,720만원 *상금은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붙임3] -계속종사장려금 : 289~1,200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의 계속종사장려금은 입상연도, 입상등위,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민간숙련기술자 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지원	-상금:2,240~6,72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289~1,200만원 (연1회) ※2014년부터 505~1,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예정
민간숙련 기술인 단체지원	-작품전시회(민간숙련기술인 단체의 작품전시 및 참여에 드는 비용) -워크샵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봉사활동 개최시 재료에 소요되는 비용 -단체의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 및 시설지원	- 2013년 : 1.05억원 - 2014년 : 5억원

정부는 2014년 대한민국 명장 35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숙련기술 전수자 10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48개 직종에 대해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39개 직종 43명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로 선발하였음.

나)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

정부는 숙련기술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 외에도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활용하고 있음. 숙련기술적립금은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제2항115)에 따라 조성되는 자금으로 장려금 지급, 기능대회 개최 등에 사용됨. 2014년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수입은 4억 600만원, 지출은 3억 7,200만원임.

[2014년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총조성액(수입)			사용액(지출)				
운용 수입	기타 수입금	계(A)	숙련기술 전수지원	계속종사 장려금지급	장학금 지급	기능경기 지원	계(B)
56	350	406	0	248	6	118	372

115)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¹¹⁶⁾를 명시하고 있음.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다만, 「국가재정법」 제53조¹¹⁷⁾ 및 개별 법률은 예산외로 운영하는 자금을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외교부 빈곤퇴치기여금 등이 예산외로 운용됨. 예산외로 운용되는 자금들은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예산사업과 구별되는 지출이 있는 것이 일반적임.

116)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17)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의 운용자금 사례(일부)]

명 칭	소 관	근거법률	수 입	지 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 자가 부담	자동차사고 목격 포상금, 자동차사 고 피해예상사업, 재활사업 등
마사회 특별적립금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경마 수익 금의 일부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 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 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등
국제빈곤 퇴치기여금	외교부	「국제협력단법」	출국자 1인 당 1000원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 를 지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은 이들 자금과 같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국회의 예결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나, 타 적립금 등과 달리 별도의 특정한 수입이 없으며, 지출도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적립금 운용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구분됨.¹¹⁸⁾ 그러나, 실제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수입내역을 보면 2001년 이후 정부는 동 적립금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수입은 적립금 운용 수입금과 민간 기부금만으로 구성됨.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지출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¹¹⁹⁾에 따

118)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19)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라 숙련기술인에 대한 일시장려금, 계속종사장려금, 전수지원금 및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에 사용됨. 2012년과 2014년 정부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대한민국 명장의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일부 사용되었음.

[2012~2014년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조성 및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조성액(수입)			사용액(지출)				
	운용 수입	기타 수입금	계(A)	숙련기술 전수지원	계속종사 장려금지급	장학금 지급	기능경기 지원	계(B)
'12	251	370	621	132	4,072	4	319	4,527
'13	52	1,170	1,222	0	0	8	879	887
'14	56	350	406	0	248	6	118	372
합계	359	1,890	2,249	132	4,320	18	1,316	5,786

고용보험기금 내 숙련기술장려사업에서도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 동일한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대상에게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 적립금이 정부의

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국회의 예산 심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담당해야할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민간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으로 봄.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 별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이 민간기부금에만 수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도 정부 예산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숙련기술장려적립금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1190-351)

가) 사업개요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의 기반이 되는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임. 2014년 계획액은 56억 4,300만원이었으나 60억원을 계획변경 증액하여 계획현액은 116억 4,300만원임. 2014년 정부는 계획현액 116억 4,300만원 중 111억 9,600만원(96.2%)을 집행하고, 4억 4,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14년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5,643	11,643	-	11,643	11,196	-	447	25,000

나) 연도 중 기금계획 변경 지양 필요 등

일반적으로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적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자금을 대부함. 1개 기관에 연간 최대 20억원, 누적 60억원까지 대부하며, 소요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함. 2014년 12개 기업 및 직업훈련시설을 선정하여 111억 9,600만원을 융자하였음.

선정된 기업 및 훈련기관은 대상의 성격에 따라 연 1~3%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받음. 중소기업 및 우수훈련기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는 1%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은 2.5%,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은 3%의 금리로 이자를 부담함.

[대부 금리 및 기간]

대 상	대부금리	대부기간
○ 중소기업 사업주 · 사업주단체	1%	○시설 : 10년 이내 (5년거치 5년상환)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 · 사업주단체		
○ 우수훈련기관		
○ 일 · 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 공동훈련센터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5%	○시설 + 장비 : 10년 ○장비 : 평균내용연수
○ 대기업 사업주 · 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3%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그 밖의 사업주 · 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 · 직업훈련 사업주 등)		
○ 근로자단체		

정부는 예산 확정 후 사업 공고를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부 기업·기관을 선정함.

그런데, 201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의 배점을 증가하였음. 즉, 종전 사업주 요건에서 최고점이었던 중소기업은 35점(40점 만점)을 부여하되,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게 40점을 부여하며, 일학습병행제 참여 공동훈련센터도 4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대부대상자 심사기준]

(단위: 점)

심사 항목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 평가 (70점)	○신청기관 유형 (40점)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주·근로자 단체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업주	40 35 30 25 20
		훈련기관	<input type="checkbox"/> 일·학습 병행제 참여 공동훈련센터 및 우수훈련기관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직업훈련시설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훈련기관	40 30 25 20
	○ 훈련직종 (15점)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직종 <input type="checkbox"/> 사무관련 직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관련 직종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직종	15 11 7 3	
	○ 대부대상 (10점)	<input type="checkbox"/> 훈련장비 <input type="checkbox"/> 훈련장비를 포함한 훈련시설 <input type="checkbox"/> 훈련시설	10 6 2	
	○ 대응투자 비율 (5점)	<input type="checkbox"/> 30%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 30% 미만 <input type="checkbox"/> 11% ~ 20% 미만	5 3 1	
정성 평가 (30점)	○ 투자계획의 적정성(15점)	① 투자의 동기 및 기대효과 ② 투자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③ 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④ 대응투자(신청금액과 자체조달금액)의 타당성 ⑤ 투자 시설·장비의 종류 및 수량의 적정성	3,2,1 3,2,1 3,2,1 3,2,1 3,2,1	
	○ 훈련실시계획의 적정성(15점)	① 훈련실시계획 목적 및 실현가능성 ② 훈련교사 및 시설·장비·훈련생 확보 방안 ③ 훈련직종 선정, 교과운영·방법·인원의 타당성	5,3,1 5,3,1 5,3,1	
동점자 처리		상기항목의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①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②우수훈련기관, ③중소기업, ④훈련장비 단독 대부 신청기관, ⑤대응투자비율이 높은 신청기관 순으로 선정		

이와 같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우대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 대부기관 12개 중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7개 기관(62억 6,300만원)에 이르렀음.

[2014년 대부 기관 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 사유
(주)삼****	1,438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신*****	630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현*****	108	우수훈련기관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동***	1,980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비*****	114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주)대*****	370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주)자**	471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롯데*****	375	우수훈련기관으로 장비구입비 지원
현*****	1,066	우수훈련기관으로 시설구입비 지원
신*	1,260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시설구입비 지원
연*****	1,980	우수훈련기관으로 시설구입비 지원
삼*****	1,404	컨소시엄참여기관으로 시설구입비 지원
합 계	11,196	

2014년 일학습병행제를 최초 시작하였으므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기업들이 훈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시급히 지원할 필

요성은 인정됨. 다만,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직업훈련시설·장비를 확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실제 2013년 동 사업에서 4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시설·장비 비용을 대부하였으나, 2014년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일학습병행제 도입은 단순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학습문화 창달 및 조장에도 그 목표가 있으므로, 일학습병행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가 구축(驅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사업은 연도 중 기금계획을 변경하여, 6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2014년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 대부사업 기금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 변경	450	04	능력개발시설 장비비용대부	+6,000	같은 단위사업군(능력개발용자지원)인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예산을 동액 만큼 감액
합 계				+6,000	“

동 사업의 계획변경은 대부 금리 하락, NCS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을 개편함에 따라 장비수요가 증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것임. 이에 따라 3월 동 사업 공모 시 200억원이 넘는 대부 수요가 있었음.

정부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2014년 8월 자체 계획변경을 하였으며, 8월말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장비비용을 대부하였다고 함.

기금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으로, 신축적 운용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심의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기금계획 변경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NCS 적용 및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장비 대부 수요 확대는 사전에 예측가능하다는 점, 지원 훈련시설 등에 대한 급박한 지원 필요성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계획 확정 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계획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바, 향후 보다 엄밀히 기금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계획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1) 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고용평등실현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2014년도 기금변경액 418억 8,2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1조 48억 7,200만원 중 9,49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58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도 고용평등실현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액	계 획 변경액	전 기 이 월	계 획 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여성 고용 안정 지원	계	158,936	±1,296	-	158,936	153,084	24	5,82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55,075	-	-	55,075	54,965	-	110
	직장어린이집지원	78,984	1,296	-	80,280	80,264	-	16
	반듯한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22,732	△1,296	-	21,436	16,159	-	5,277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2,145	-	-	2,145	1,696	24	425
모성보호육아지원	698,211	41,882	-	740,093	740,062	-	31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계	103,769	0	20	103,789	54,360	0	49,429
	고용연장지원금	57,705	-	-	57,705	31,108	-	26,597
	임금피크제 지원금	29,066	-	-	29,066	12,495	-	16,571
	장년고용연구지원	150	-	20	170	170	-	0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	16,848	-	-	16,848	10,587	-	6,261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244	-	-	1,244	1,244	-	0	
고용환경개선용자	810	-	-	810	255	-	555	
합 계	962,970	41,882	20	1,004,872	949,005	24	55,843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1345-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은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2014년 계획액은 550억 7,500만원으로, 이 중 549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내역사업별 세부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4년							201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1,971	1,247	-	1,247	1,246	-	1	3,90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20,765	39,170	-	39,170	39,168	-	2	21,43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28,113	13,666	-	13,666	13,627	-	39	27,625
대체인력뱅크	992	992	-	992	924	-	68	992
합 계	55,075	55,075	-	55,075	54,965	-	110	53,953

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집행부진 및 실집행을 제고 방안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

당초 281억 1,3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144억 4,700만원을 내역변경(감)하여 계획현액 136억 6,600만원 중 136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불용처리 함.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상향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함.

이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인원이 당초 예상인원 5,702명에 못 미친 5,039명에 그쳤고, 지원단가가 낮은 대규모기업은 계획인원을 초과한 반면, 지원단가가 높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계획인원이 미달하였기 때문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기업규모별 실적]

구분	‘14년		‘15년 4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우선지원 대상기업	4,162명	3,115명	3,991명	1,482명
대규모기업	1,540명	1,924명	1,711명	582명
계	5,702명	5,309명	5,702명	2,064명

아울러 동 사업의 기업규모별 실적을 보면 대기업에 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대기업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업규모별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의 편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성과지표 부적정

이 사업의 2014년 성과지표를 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의해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 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각 내역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단순히 전체 지원대상 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 비율을 측정하고 있음.

이 사업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사업별로 지원방식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며, 각 내역사업별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성과지표 및 실적]

성 과 지 표	구 분	'12	'13	'14	'1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	목표	90.3	81.8	81.8	과거추세 반영	(1년 후 고용유지 근로자수/지원대상 근로자수) *100
	실적	81.6	83.7	8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의해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 수(%)	목표	18,000	25,000	25,355	과거추세 반영	지원대상 근로자수
	실적	23,462	27,503	27,931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그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의 성과지표 및 실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봄.

그러나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사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대체인력의 추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바, 이 사업은 육아휴직자 중에 대체인력 활용비율 등을 통해 대체인력 활용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비정규직재고용 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로 고용이 단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동 제도로 인하여 재고용률 및 고용유지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기존 고용유지율 외에 대체인력 활용 비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동 제도로 인한 재고용률 등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3)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1345-352)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2014년 계획액은 227억 3,200만원으로, 이 중 16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액은 대부분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민간경상보조)에서 발생되었음.

[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반듯한 시간선택제일 자리 창출지원	22,732	-	△ 1,296	-	21,436	16,159	-	5,277

가)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제도인데, 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 여성과 경험이 많은 퇴직근로자 등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장시간 근로해소와 유연근로의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2012~2017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 개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3만개로 전체의 39%를 차지하도록 제시하였지만 2015년 5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대책 발표 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 사업은 육아·가사, 체력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고령자 등에게 적합한 일·가정 양립형 시간제근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집행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최근 5년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A)	수정							
2011	6,760	6,760	-	6,760	1,817	26.9	26.9	-	4,943
2012	6,760	6,760	-	6,760	3,409	50.4	50.4	-	3,351
2013	10,563	10,563	-	10,563	4,919	46.6	46.6	-	5,644
2014	22,732	21,436	-	21,436	16,159	71.1	75.4	-	5,277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주기와 지급방식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 후 1년간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업승인 이후 예산 집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심사기준¹²⁰⁾ 및 지원 요건과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사업주의 낮은 제도 이용률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도 있는 만큼 2016년 예산안 심사시 금년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의 담보, 자발적인 전환 가능성, 차별금지 등 근로조건에 동일대우원칙이 보장되어야 함.

¹²⁰⁾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차별금지 등

이를 위해 먼저 전일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감소 이외에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시간제로의 전환이 기존 업무상의 지위나 승진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시간제근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원하는 시기에 전일제 일자리가 있는 경우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역전환 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013년에 (가칭) 「시간제법률」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법률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연도별 변경 내용]

변동 사항	'10년	'11년	'12년	'12.9.1	'13.1.1	'14.1.1	'14.4.15
지원 수준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임금의 50% (한도 60만원)	임금의 50% (한도 80만원, 대규모기업은 60만원)	
사업 명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컨설팅	고용창출지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우대	-	-	고용창출 100대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5점, 3년간)				
사업 계획 변경	1회	1회 (기존 승인 인원 대비 증감 규모 30% 제한)	1회 (기존 승인 인원의 실적과 예산상황 등 고려 승인)	제한 없음 (직무변경 불가) ※ '13.8.6부터 직무변경 가능		제한없음	
지원요건	고용유지	-	6개월 고용유지	3개월 고용유지	최초 3개월 고용유지		최초 1개월 고용유지
	제외자	-	동일사업장 퇴사자	동일 사업장 퇴사자(1년 이내)			동일 사업장 퇴사자(6개월 이내),
	감원방지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 ※ 지원대상자보다 나중 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1년 3개월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지원대상자보다 나중 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감원인원수의 2배수만큼 지원제한) ※ '14.4.17부터 시간제 감원시 감원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원제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과, 월 5회 초과시 해당월 지원제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과시 해당월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초과시 해당월 지원제한
지원금지급	운영	고용센터	수탁기관			고용센터 ※ 컨설팅은 위탁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6개월 단위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 3개월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1개월 단위 신청	
	감액	-	신규고용규모 3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	-			
	중복지원	고용보협 지원·장려금 하나만 신청	동일기간내 고용창출사업 2개이상 중복지원 못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대상에 대해 지원시 지원제한				

4)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1345-356)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일·가정 양립 실현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2014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계획액은 21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6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2,400만원은 불용 처리함.

[2014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세부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2,145	2,145	-	2,145	1,696	25	424	1,037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장시간근로 해소와 유연근로 확산을 통해 고용률 제고를 제안하였으며, 유연근로 확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 스마트워크를 확산할 계획을 수립함.

이에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2014년에 신규로 2개소를 계획하여 21억 4,500만원을 편성·집행함.

이 사업의 2014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3월 1차 공모결과 적격 대상이 없어 미선정되었고, 2차 공모결과 스마트워크BF 1개소를 선정하고 동년 9월 착수금 지급 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2014년 9월이 되어서야 선정되어 당초 계획보다 선정과정이 지연되었음.

민간에서 스마트워크 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의 스마트워크 사업은 육아연계형으로 스마트워크센터 내 또는 인접시설에 보육시설 등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사전 수요조사 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했으나,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봄.

또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률 현황을 보면 이용률 및 여성 이용자수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구축 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15년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 이용률 현황]

가. 여의도

(단위 : 명, %)

기 간	이용자 수	여 성		근무가능일수	이용률
		여성 이용자 수	비율		
14/12/01 ~ 14/12/05	2	0	-	5	1.25
14/12/08 ~ 14/12/12	36	10	27.78	5	22.50
14/12/15 ~ 14/12/19	14	3	21.43	5	8.75
14/12/22 ~ 14/12/26	18	2	11.11	4	14.06
14/12/29 ~ 15/01/02	10	2	20.00	3	10.42
12월 계	80	17	21.25	22	11.36
15/01/05 ~ 15/01/09	38	4	10.53	5	23.75
15/01/12 ~ 15/01/16	39	5	12.82	5	24.38
15/01/19 ~ 15/01/23	37	5	13.51	5	23.13
15/01/26 ~ 15/01/30	49	6	12.24	5	30.63
1월 계	163	20	12.27	20	25.47
15/02/02 ~ 15/02/06	92	12	13.04	5	57.50
15/02/09 ~ 15/02/13	92	12	13.04	5	57.50
15/02/16 ~ 15/02/20	34	4	11.76	2	53.13
15/02/23 ~ 15/02/27	52	10	19.23	5	32.50
2월 계	270	38	14.07	17	49.63
15/03/02 ~ 15/03/06	44	12	27.27	5	27.50
15/03/09 ~ 15/03/13	44	5	11.36	5	27.50
15/03/16 ~ 15/03/20	67	10	14.93	5	41.88
15/03/23 ~ 15/03/27	97	17	17.53	5	60.63
15/03/30 ~ 15/03/31	34	6	17.65	2	53.13
3월 계	286	50	17.48	22	40.63
15/04/01 ~ 15/04/03	52	8	15.38	3	54.17
15/04/06 ~ 15/04/10	78	10	12.82	5	48.75
15/04/13 ~ 15/04/17	96	13	13.54	5	60.00
15/04/20 ~ 15/04/24	99	14	14.14	5	61.88
15/04/27 ~ 15/04/30					
4월 계	325	45	13.85	18	56.42

※ 이용률 = (이용자 수)/(근무가능일수*좌석 수)*100

※ 근무가능일수: 월~금(공휴일 제외), 좌석 수: 32석

나. 대구

(단위 : 명, %)

기 간	이용자 수	여 성		근무 가능일수	이용률
		여성 이용자 수	비율		
15/03/17 ~ 15/03/20	53	16	30.2	4	15.8
15/03/23 ~ 15/03/27	81	19	23.5	5	19.3
3월 계	134	35	26.1	11	14.5
15/03/30 ~ 15/04/03	83	17	20.5	5	19.8
15/04/06 ~ 15/04/10	109	34	31.2	5	26.0
15/04/13 ~ 15/04/17	114	26	22.8	5	27.1
15/04/20 ~ 15/04/24	134	29	21.6	5	31.9
15/04/27 ~ 15/05/01	126	27	21.4	4	37.5
4월 계	566	133	23.5	24	28.1
15/05/04 ~ 15/05/08	105	22	21.0	4	31.3
15/05/11 ~ 15/05/15	136	27	19.9	5	40.5
15/05/18 ~ 15/05/22	144	25	17.4	5	42.9
15/05/25 ~ 15/05/29	126	21	16.7	4	37.5
5월 계	511	95	18.6	18	33.8

※이용률=(이용자수)/(근무가능일수*좌석수)*100

※근무가능일수: 월~금(공휴일 제외), 좌석 수: 84석

5) 임금피크제지원금(1347-351)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014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계획액은 290억 6,600만원으로, 이 중 12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65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43%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2014년 임금피크제지원금 세부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29,066	29,066	-	29,066	12,494	-	16,572	31,999

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7~2011)」 및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 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그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세분화하였음.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구 분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
지원요건	감액시점	• 55세 이후	• 55세 이후 (정년연장형과 연계) • 정년이후 (재고용형과 연계)	• 정년퇴직 이후
	임금감액률	•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기본조건	• 18개월 이상 근무 • 56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정년 55세 이상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지원내용	지급수준	• 피크임금 대비 1년차는 90%, 2년차는 85%, 3~5년차는 80%(300인 미만 사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80%(300인 미만 사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최대지급기한	• 5년	• 5년	• 5년
	최대지원금액	•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1,080만원 • 56세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720만원	• 1인당 연간 500만원	• 1인당 연간 600만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4년 6월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9.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한 후 5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에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현황¹²¹⁾]

(단위: 개소, %)

구 분	2012.6월	2013.6월	2014.6월
전체 사업장	193,675	221,342	224,806
도입 사업장	18,676(9.6)	18,274(8.3)	22,231(9.9)
300인 미만 사업장	191,779	219,353	222,750
도입 사업장	18,338(9.6)	17,906(8.2)	21,754(9.8)
300인 이상 사업장	1,896	1,989	2,055
도입 사업장	338(17.8)	368(18.5)	476(23.2)

주 : 정년 있는 사업장 대상

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중재 역할 제고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도입(2003년)된 것인데, 2013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2016년부터 시행)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상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협의사항이고,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경영계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경영부담의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연공급적 임금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60세 정년 연장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사

121) 공공부문의 경우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한 후 55개 기관(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20개)이 임금피크제 운영중에 있음.

항이므로 정년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임.

더구나 2015년 5월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고,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법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됨에 따라 정년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심해 합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동시장 안정화에 대한 양측의 인식은 같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양측의 중재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다) 임금피크제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2014년도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유형별 집행현황을 보면, 정년연장형 38.2%, 재고용형 82.9%, 정년보장형(기존수급자) 147.1%로 이 중 정년연장형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함.

[2014년 임금피크제지원금 유형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A)	이·전 용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임금피크제 지원금	29,066	-	29,066	12,494	-	16,572	43.0
●정년연장형	27,007	-	27,007	10,329	-	16,678	38.2
●재고용형	1,346	-	1,346	1,116	-	230	82.9
●정년보장형 (기존수급자)	713	-	713	1,049	-	-336	147.1

이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한 방편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노사합의 애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도입활용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데 기인한 점도 있으나, 2014년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제도개편과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도입에 따라 2013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한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을 세분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의 예산이 집행 가능하도록 임금직무체계 개편 지원, 노동계와 경영계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쟁해결 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변경 내용]

구 분	2012년 지원 요건	2013년 지원 요건	2014년 지원 요건
정년 연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 이후부터 감액 • 56세 이상 정년연장 • 피크시점 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 • 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10년 지원 •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 (월 50만원) 	좌 동	좌 동
근로시간 단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 • 임금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액 • 피크 대비 50%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5년 지원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 임금이 피크시점 대비 30% 이상 감액 • 최대 5년 지원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좌 동
재고용형	<p>유형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 • 르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 피크시점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p>유형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 	좌 동	좌 동

구 분	2012년 지원 요건	2013년 지원 요건	2014년 지원 요건
	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 피크시점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 85%)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6)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1347-356)

가) 사업개요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 사업은 중고령 구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201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168억 4,800만원 중 10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계획액 (A)	자체 변경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	16,848	-	16,848	10,587	-	6,261	62.8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가운데 장년취업인턴제(1336-302)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2014년에 ‘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에서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고, 인턴기간을 종료한 중고령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7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6개월간 매월 6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나) 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고용노동부는 당초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산출시 인턴 참여인원 8,000명에 당해연도 지급율 및 중도탈락율을 감안하여 168억 4,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014년에 지원금 계획액 168억 4,800만원의 37.2%인 62억 6,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4개월간의 인턴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연도 내 취업지원금 집행이 부진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당초 사업참여 인원 8,000명 기준으로 중도탈락율, 정규직 전환율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면 사업물량을 과다 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사업은 금년 사업경비의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2016년 예산안 심의시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장년인턴제 취업지원금 사업 중도탈락율 및 고용유지율 현황]

(단위: 명, %)

사업연도	인턴 채용 (A)	중도 탈락	수료 총료 (B)	수료 종료율 (B/A)	정규직전환(C)			지원 종료자 (D)	종료 후 투자자	지원종료 후 6월 시점 고용유지자(E)		
					소계	C/B	C/A			계	E/D	E/C
2013	6,518	1,127	5,391	82.7	4,283	79.4	65.7	4,283	432	3,851	89.9	89.9
2014	7,734	1,423	6,311	81.6	4,795	76.0	62.0	3,655	594	3,061	83.7	63.8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 산재기금 총괄

1) 산재예방요율제 운용 현황 점검

산재예방요율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위험성평가¹²²⁾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가 산재예방교육을 이수(4시간)하고 자체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체계를 연계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¹²³⁾

동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3년간 보험료율 20%, 사업주 교육을 받은 사업장은 1년간 보험료율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14년에는 총 2만 7,133개소의 사업장이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적용대상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의 약 8.2%에 해당함.

재해예방활동별로 보면, 위험성평가는 3,152개소(11.6%), 사업주교육은 2만 3,981개소(88.4%)로 나타나 대부분 사업주교육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고 있음.¹²⁴⁾

122)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1호).

123)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됨.

[산재예방활동 인정사업장 현황: 2014년]

(단위: 개소, %)

적용대상 (A)	산재예방활동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소계(B) (비율: B/A)
	30인 미만	30인 이상	소계	30인 미만	30인 이상	소계	
330,828	2,474	678	3,152 (11.6)	20,641	3,340	23,981 (88.4)	27,133 (8.2)

주: 적용대상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업장수는 2014년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업주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지역본부 6개소와 지사 21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기관별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교육횟수	교육참여인원	1회 교육인원
총 계	528	26,550	50.3
서울지역본부	41	1,261	30.8
서울북부지사	15	441	29.4
중부지역본부	31	2,285	73.7

124) 예방요율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2014년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2.9%로, 사업주교육 인정률(85.7%)에 비해 낮기 때문임.

[2014년 산재예방요율제 신청 및 인정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지원 신청	인정	인정율(%)
위험성평가 인정	24,486	3,152	12.9
사업주교육 인정	27,961	23,981	85.8

구분	교육횟수	교육참여인원	1회 교육인원
경기남부지사	20	2,475	123.8
경기서부지사	14	1,551	110.8
경기북부지사	36	1,762	48.9
부천시	28	1,184	42.3
경기동부지사	26	1,268	48.8
강원지사	9	190	21.1
강원동부지사	9	160	17.8
대전지역본부	21	1,134	54.0
충남지사	20	742	37.1
충북지사	8	1,059	132.4
광주지역본부	23	1,063	46.2
전남동부지사	15	418	27.9
제주지사	3	122	40.7
전남서부지사	10	201	20.1
전북지사	5	397	79.4
전북서부지사	5	187	37.4
부산지역본부	38	2,105	55.4
경남지사	38	1,454	38.3
울산지사	22	870	39.5
경북동부지사	14	709	50.6
경남동부지사	13	923	71.0
경북북부지사	17	661	38.9
대구지역본부	33	1,123	34.0
대구서부지사	14	805	57.5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

2014년 기관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총 528회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2만 6,55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1회당 50.3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기관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남부지사, 경기서부지사, 충북지사는 회당 교육인원이 각각 123.8명, 110.8명, 132.4명으로, 평균 회당 교육인원(50.3명)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주교육은 산재예방효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질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교육이 다수를 상대로 실시하는 집체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당 교육인원이 100여명을 상회하는 경우, 실질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또한, 산재예방요율 감면 효력은 1년간 유지되므로, 계속해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교육 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역별 사업주 교육 수요 및 향후 재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횟수를 조정하고, 매년 교육을 받는 사업주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보험료율 할인은 산재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보험료 감면은 2015년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 감면금액은 약 30억 2,000만원으로, 보험료 감면 첫

해인 2015년 감면총액은 약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¹²⁵⁾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제도를 다른 업종에 확대할 계획이나, 산재예방요율제 운용 실적에 따라 직접적으로 산재기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확대시행 전 비용 대비 산재예방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보험료 감면제도는 일반회계의 조세지출과 유사하므로, 산재기금계획안 심사 시 산재예방요율제도 운영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¹²⁶⁾

2) 경상이전수입 수납률 관리 필요

수입결산 중 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18.4%로 2013년도의 20.8%와 비교할 때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¹²⁷⁾. 이는 특히 가산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125)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126) 산재예방요율제의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나, 적용사업과 인하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127) 2013년도의 경우 경상이전 수납률은 20.8%이고 이 중 가산금 수납률은 33.5%,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은 20.4%로 나타났음.

[연도별 가산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징수 결정액	수납	수납률	징결	수납	수납률	징결	수납	수납률
가산금	14,284	5,450	<u>38.2</u>	16,080	5,384	<u>33.5</u>	16,062	3,855	<u>24.0</u>
기타경상 이전수입	527,427	155,116	<u>29.4</u>	541,079	110,012	<u>20.3</u>	579,292	105,545	<u>18.2</u>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 가산금의 경우 불성실사업장(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부과한 보험료가 당초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등 납부여력 부족으로 수납률이 저조했고, 2013년 이후 과오납액에 대한 우선 충당순위가 변경되어 충당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음¹²⁸⁾. 또한 ②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연체금, 급여징수금 부과사업장이 대체로 영세사업장으로서 매출감소, 휴업, 폐업 등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했고, 역시 2013년 이후 과오납액에 대한 우선 충당순위가 변경되어 충당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징수업무(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 징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고용노동부, 근

128)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추가함.

보험료징수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가산금 충당액 감소 부분.
 * 개정 전 : 체납처분비 ⇨ 연체금 ⇨ 가산금 ⇨ 급여징수금 ⇨ 보험료
 개정 후 : 체납처분비 ⇨ 보험료 ⇨ 연체금 ⇨ 가산금 ⇨ 급여징수금
 ※ 가산금 충당액: 1,122백만원('12년) → 873백만원('13년) → 433백만원('14년)
 ☞ 충당순위 변경 배경 : 과오납액을 보험료에 우선 충당하여 가산금,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에 대한 사업장 부담 완화

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간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향후 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수납률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수납률제고를 위하여 ① 건설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 성실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② 외부기관¹²⁹⁾ 징수자료와 연계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며, ③ 수납률이나 이월보험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④ 이 외에도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징수(수납)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방안도 필요하다고 봄.

3)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절차적 개선 모색 : 산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제공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제도¹³⁰⁾나 심사청구제도¹³¹⁾에 있어서 당사자 등(신청인, 가족, 신청대리인¹³²⁾ 등)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해오고 있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사 등에서 처리지연에 대한 안내문서를 신청인 등에게 보내고 있으나,

129) 조달청, 근로복지공단, 관세청, 국세청 등

130) 요양신청이나 재용양신청에 따른 승인, 불승인 단계를 말함.

131) 공단의 결정(처분)에 불복한 후 공단에 다시 심사청구하는 단계를 말함.

132)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포함함.

제도실무상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당사자 등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절차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¹³³⁾ 효율성·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산재보험 프로그램(4000 프로그램)

1)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 산재보험사업은 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계획현액 4조 874억 9,000만원 중 4조 769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05억 4,8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임.

[2014년도 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4,085,174	0	2,316	4,087,490	4,076,942	0	10,548	99.7
산재보험급여(4051-350)	3,930,488	0	0	3,930,488	3,926,559	0	3,929	1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4052-350)	44,120	0	0	44,120	42,641	0	1,479	9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4052-351)	1,323	0	0	1,323	1,285	0	38	97

133) 비교사례로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나의 소송사건 조회” 시스템이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4052-352)	1,874	0	0	1,874	1,814	0	60	97
사회심리재활지원 (4052-353)	2,836	0	0	2,836	2,813	0	23	9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4052-355)	5,888	0	0	5,888	4,604	0	1,284	78
케어센터 지원 (4052-356)	2,760	0	0	2,760	2,760	0	0	100
맞춤서비스지원 (4053-350)	3,816	0	0	3,816	3,738	0	78	98
산재보험 급여관리 (4053-351)	1,039	0	0	1,039	1,039	0	0	100
산재의료기관 평가 (4053-352)	407	0	0	407	370	0	37	91
산재병원지원(4054-350)	12,233	0	0	12,233	12,233	0	0	100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4054-351)	6,472	0	2,316	8,788	8,788	0	0	100
연구기관 지원 (4054-353)	8,506	0	0	8,506	8,228	0	278	97
산재보험 시설건립(4055-350)	4,078	0	853	4,931	4,909	0	22	100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16,448	0	0	16,448	16,310	0	138	99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4058-350)	15,038	0	0	15,038	14,930	0	108	99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4058-351)	2,154	0	0	2,154	2,150	0	4	10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4060-350)	22,083	0	0	22,083	19,810	0	2,273	90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융자)(4060-351)	3,611	0	-853	2,758	1,960	0	798	71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징수위탁지원은 집행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사업은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산재보험급여(4051-350)

가) 사업 개요

산재보험급여사업¹³⁴⁾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연금 등으로 구분됨¹³⁵⁾.

2014년도 계획현액은 3조 9,304억 8,800만원임. 이 중 3조 9,265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산재보험급여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930,488	0	0	3,930,488	3,926,559	3,929	99.9	99.9

134) 2014년도에 3조 9,265억 상당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4조 844억 5,000만원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음.

135) 각각의 명목은 세사업으로 표현됨.

나) 재해발생 신고제도의 운영 활성화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외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산재사고 이후 요양신청¹³⁶⁾ 등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접수될 경우 사고시점과 조사시점의 시차발생으로 인하여¹³⁷⁾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추후에 복기(復棋)형식으로 재해조사 및 요양신청심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재구성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이나 부실조사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사고와 관련한 신고·상담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입수·접수하게 되었는데, ① 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하여 상담원이 재해발생신고를 접수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도 있고 ②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재해발생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음.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 현황¹³⁸⁾]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고건수	74	203	207	378	193

※ 2014년도 신고건수 감소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홈페이지 정비 등으로 2014.8월부터 연말까지 인터넷 재해발생신고 접속을 차단한 것 때문임

136) 산재급여는 최초단계에서 요양신청이라고 실무상 용어가 되어 있으나 정확하게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절차일 것임. 실무용례에 따라 요양신청이라고 표현함.

137) 최소 1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대개의 경우 약 3~6개월 이내에 사고와 관련한 요양신청이 접수되는 편임.

138) 근로복지공단 제출 통계임.

이러한 사전 신고제도는 수혜자 중심의 제도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신속한 요양신청을 도우면서도 그 절차·내용을 안내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재해¹³⁹⁾의 원인·경과·조치 등을 초동단계부터 소상히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이러한 제도들은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충분히 근로자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그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임¹⁴⁰⁾.

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업무과중 해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관(공단 직원)의 조사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라 함)’의 판정을 거쳐 처분(결정)을 내리고 있음.

질판위는 매년 9,500건 이상의 질병사건을 심의하여 왔고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집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가 공정하게 조정되고 합리적으로 확대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질판위는 점차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¹⁴¹⁾ 특정지역의 경우 주당 3~4회의 회의개최로도 부족한 상황에까지 이른 실정임. 외

139) 현재는 사고에 한정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운용이 가능할 소지가 있음.

140) 아직 산재의 신고건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요양신청사건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수라고 하겠음.

141) 2011년 579회 -> 2012년 667회 -> 2013년 687회 -> 2014년 722회이며 2015년에는 심의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의횟수도 800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부 전문가 집단으로 운용하면서 보수체계가 낮은 편으로서 유능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최근의 업무과중이 발생하여 향후 인력·예산 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상임위원(부위원장)의 확충, 회의수당의 증액¹⁴²⁾, 질판위 인력의 증원, 위원 풀Pool의 확대를 통한 심의상시제도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질판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질판위는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는 백혈병, 직업성 암, 기타 특이질환 등에 대하여 소극적인 판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역할이 미흡하다는 대외적 비판이 제기되었음.

의학적, 법적 전문성을 고루 갖춘 질판위의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불승인 처분을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하는 사건이 다소 발생하면서, 질판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러차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음¹⁴³⁾.

142) 현재 13건 미만인 경우 17만원, 그 이상의 경우 2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10건 미만 20만원, 10건 이상 25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143)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직업성 암, 백혈병, 기타 질병(루게릭병, 빈혈, 다발성경화증, 베게네육아종 등)에 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라는 질의가 이어졌던 바임.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업무상 질병 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승인율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고, 연도별 소송 현황에서도 패소율이 10건 중 1~2건으로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연도별 업무상질병 처리현황¹⁴⁴⁾]

(단위 :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계	승인	불승인	승인율	계	승인	불승인	승인율
합 계	13,134	7,742	5,662	56.9	12,683	7,627	5,056	60.1
뇌심혈관질환	2,481	579	1,902	23.3	2,353	684	1,669	29.1
근골격계질환	8,363	5,327	3,036	63.7	8,100	5,446	2,654	67.2
직업성 암	168	54	114	32.1	185	66	119	35.7
기타	2,122	1,512	610	71.3	2,045	1,431	614	70.0

구 분	2014년				2015년1분기			
	계	승인	불승인	승인율	계	승인	불승인	승인율
합 계	12,498	7,678	4,820	61.4	2,988	1,819	1,169	60.9
뇌심혈관질환	2,231	676	1,555	30.3	538	171	367	31.8
근골격계질환	7,585	5,174	2,411	68.2	1,783	1,209	574	67.8
직업성 암	218	76	142	34.9	48	24	24	50.0
기타	2,464	1,752	712	71.1	619	415	204	67.0

144) 구분이 쉽게 각 질병을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기타로 크게 대별함.

[연도별 소송현황 및 패소율¹⁴⁵⁾]

(단위 :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계	승소	패소	일부승소	취하등	패소율	계	승소	패소	일부승소	취하등	패소율
합 계	560	385	85	10	74	15.2	598	385	81	25	107	13.5
뇌심혈관질환	323	235	55	2	31	17.0	322	225	53	10	34	16.5
근골격계질환	133	74	18	7	34	13.5	140	60	17	11	52	12.1
직업성 암	12	8	2	-	2	16.7	14	11	1	-	2	7.1
기타	92	68	10	1	7	10.9	122	89	10	4	19	8.2

구 분	2014년					
	계	승소	패소	일부승소	취하등	패소율
합 계	812	432	95	14	271	11.7
뇌심혈관질환	366	234	49	4	79	13.4
근골격계질환	150	73	10	8	59	6.7
직업성 암	13	5	3		5	23.1
기타	283	120	33	2	128	11.7

※ 해당연도 소확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에 대한 소송 현황임

이러한 통계를 보면 업무상 질환위의 제도적 확대 및 역량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건이 불복을 거듭하여 법원으로 가고 있으며, 그 중 11%~15% 상당은 질환위 및 공단의 판단이 번복되고 있음¹⁴⁶⁾. 질환위¹⁴⁷⁾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려면 법원의 판단과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145) 구분이 쉽게 각 질병을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기타로 크게 대별함.

146) 이 수치는 더 고려가 필요함. 이 중 공단 일부승소에도 마찬가지로 질환위(공단)의 판단이 일부 번복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소취하에도 원고소취하·공단재처분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질환위(공단)의 판단이 번복된 경우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147) 크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담당 직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질관위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법령·지침의 개정내용, 판정사례, 위원용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질관위의 경우 판정·처분의 내용이 사후에 반복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고 단순히 ‘법령·지침의 안내’나 ‘매뉴얼 제공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질관위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질관위 판정이 법원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라)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동 사업은 요양신청제도 또는 심사제도 등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의 성과지표를 “급여청구 평균처리기간”, “심사결정평균처리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 분	'12	'13	'14	'15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급여청구 평균처리 기간(일)	목표	15.1	14.7	6.805	6.647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13.6	14.1	4.643	-	
	달성도	111.03	104.26	146.56	-	
심사결정 평균처리 기간(일)	목표	48.0	48.0	45.0	45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45.8	45.3	44.8	-	
	달성도	104.80	105.96	100.45	-	

다만, 현재 처리기간의 성과지표는 단지 업무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재해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보험급여 전체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그에 관한 만족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보험급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수혜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제도의 수범자는 잠정적으로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업무처리의 속도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보완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¹⁴⁸⁾.

3) 맞춤형서비스 지원(4053-350)

가) 사업 개요

맞춤서비스지원 사업은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 개별 특성에 맞는 요양·보상·재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임. 이를 위하여 각 세사업으로서 ① 산재의료전문위원운영(21명) ② 의료영상저장전달장치PACS 추가설치 ③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④ 상담전용차량 배치(8대) ⑤ 잡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추진하였음.

2014년도 계획현액은 38억 1,600만원임. 이 중 3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148) 업무처리의 속도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이후 아무런 성과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맞춤서비스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816	0	0	3,816	3,738	78	98.0	98.0

나) 자문의사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필요

산재보험 자문의사제도는 요양신청단계부터 재요양 또는 재활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수시로 근로복지공단에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필수 제도라고 하겠음. 공단에서는 산재의료 전문위원제도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자문의사제도의 필요성은 큼¹⁴⁹⁾.

149) 자문의사제도의 소개

- 산재보험 요양(최초, 진료계획, 장애 등) 및 재활관련 의학적 자문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산재의료전문위원 · 상시자문의사 · 수시자문의사 제도 운영
- 자문의사는 산재의료전문위원(상근), 정기적 · 상시적으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상시자문의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수시자문의사(비상근)로 구분
- * 산재의료전문위원 : 공단 촉탁전문직 직원(주5일 근무)
- * 상시자문의사: 주 1~2회 공단 방문하여 의학적 자문 제공
- * 수시자문의사: 필요시 공단직원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학적 자문

[소속기관 상시 자문의사 현황]

(단위 : 명, '15.4.30.기준, 공단본부 제외)

연도	총계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치과	기타
'15.4월	190	104	60	17	3	1	1	1	1	1	0	1
'14년	185	98	61	16	3	1	1	1	1	1	1	1
'13년	172	93	65	11	1	0	0	0	0	1	0	1
'12년	176	96	66	11	1	1	0	0	0	1	0	0
'11년	177	96	68	10	0	2	0	0	0	1	0	0
'10년	174	94	67	10	0	2	0	0	0	1	0	0
'09년	133	68	53	6	0	3	0	0	0	1	0	2

자문의사제도는 산재의료전문위원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 해소하지 못하는 전문성 부족의 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미 각 지역마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동 제도는 점차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① 전체의 전문인력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 ② 최근 급증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추가배치 의견, ③ 특수 의역(과목)의 수요로 인한 배치 증대 의견¹⁵⁰⁾ ④ 수시자문으로부터 상시자문으로의 확대개편 의견 등이 있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소속기관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자문의사 제도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

¹⁵⁰⁾ 대체로 치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 비뇨기과 등임.

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참고자료 3: 소속기관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

자문의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의 요양신청단계부터 심사제도단계, 재요양 또는 재활 등의 단계 등까지 지속적으로 공단의 업무과정에서 의학적인 소견을 활용하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운용이 절실함.

자문의사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① 자문의사의 자문 실적에 대하여 각 자문의사 간에 그 결과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② 자문의사 풀(pool)을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의사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의사 전체적으로 수당을 상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③ 근로복지공단과 자문의사 그룹(Pool)이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수시 정보교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보체계(시스템) 등을 신규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④ 근로복지공단 본부 등이 각 지역의 자문의사 운영을 수시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시에 교정할 수 있는 제도운영팀 등의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⑤ 자문의사 간에 업무협의를, 회의 외에 자문의사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상시구성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음.
- ⑥ 자문의사 수당에 관

한 부분임. 기존에 수시자문의사는 방문당 9만원 상당으로 책정하던 것을 건당 3만원으로 개선하고는 있으나, 향후 상한제를 도입한다거나 사건의 경중이나 업무처리의 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지급도 필요하다고 보임¹⁵¹⁾. ⑦ 자문의사에 대한 지원확대에 관한 부분임¹⁵²⁾. 상시자문의사는 매번 근로복지공단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각종 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의 숙련도가 점차 향상되는 그룹이므로 수시자문의사에 비해 확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향후 상시자문의사 위촉 예산을 확대하고 상시·수시 자문의사 간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임.

4) 산재보험 급여관리(4053-350)

가) 사업 개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 급여관리사업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통한 산재보험급여 누수 방지를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정직한 산재보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151) 실제로 자문의사수당이 몰리거나 다소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도 있음.

특정지사의 특정 수시 자문의사(정형외과, 신경외과) 자문수당이 상시자문수당 이상으로 지급되는 부적합한 사례도 있음.

* 서울본부 정00 수시자문(정형) 724건, 성남지사 나00 수시자문(정형) 202건 & 박00 수시자문 190건, 전주지사 서00 수시자문(정형) 453건, 충주지사 김00 수시자문(정형) 715건, 등

152) 넓게 자문의사 군으로 볼 수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도 지원확대의 여지가 있음. 전문위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진료비 심사, 의료재활 부문에 대한 의학적 자문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개진, 공단직원, 상시·수시 자문의사에 대한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양질의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전문위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촉탁비용 인상과 함께 지속적 증원 노력이 필요함.

2014년도에는 계획액 10억 3,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주요사업 으로서는 부정수급의 적발, 부당이득의 징수,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금 지급, 부정수급조사 역량강화·업무지원 등임.

[산재보험 급여관리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039	0	0	1,039	1,039	0	100	100

나) 회수율 제고 논의

동 사업은 적발실적(건수, 금액)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채권 정리·회수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음.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동 사업의 성패여부는 회수율 (정리율)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므로,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과 부 정수급가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하여 회수율제고를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예방·적발 업무와 채권 의 회수·정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적절히 실 적 제고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임¹⁵³⁾.

153) 201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55개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던 부당이득 회수업무를 6개거점지역의 송무부 로 이관(집중화)하여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임.

동 사업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사례의 예방·적발이 강화될수록 이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채권) 회수율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인력·조직 등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인 실적 제고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임.

5) 산재병원지원(4054-350)

가) 개요

산재병원지원사업은 전국 10개 산재병원¹⁵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지차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시설로서 설립된 산재병원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요양과 전문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잔존 장애의 신속한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에 기여하고 있음¹⁵⁵⁾¹⁵⁶⁾.

154) 인천, 인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등 10곳임.

155)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11년도 평가대상 사업) 중 “산재근로자 의료사업 지원”에서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보완사항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156) 산재병원 현황자료

연번	시 설 명 칭	종별	위 치	설치 년도	토지면적 (㎡)	건물면적 (㎡)	병상수	진료 과목
1	인 천 병 원	종합병원	인 천	1983	59,757	36,520	404	14
2	안 산 병 원	종합병원	경기안산	1985	36,040	33,952	467	14
3	창 원 병 원	종합병원	경남창원	1979	28,838	23,407	299	20
4	대 구 병 원	병원	대 구	2012	26,737	26,487	206	5
5	순 천 병 원	종합병원	전남순천	1985	41,092	20,324	270	12
6	대 전 병 원	종합병원	대 전	1991	32,442	25,370	294	14
7	태 백 병 원	종합병원	강원태백	1977	35,215	30,461	535	13
8	동 해 병 원	병원	강원동해	1983	77,241	21,938	374	10
9	정 선 병 원	병원	강원정선	1988	44,665	11,291	210	3
10	경기요양병원	요양병원	경기화성	1985	60,121	7,495	159	3

2014년도 계획현액은 122억 3,300만원인데 전액을 집행하였음.

[2014년도 산재병원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2,233	0	0	12,233	12,233	0	100	100

나) 인력확충의 문제

산재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산재병원의 처우문제와 업무강도문제로 인하여¹⁵⁷⁾, 의사의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¹⁵⁸⁾, 간호직의 경우 신규인력(청년층 간호인력)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임¹⁵⁹⁾.

[의료사업 정원 대비 현원 현황(2014.12.31. 현재)]

(단위 : 명)

직종별 기관별		합계 (A+B)	소계 (A)	소속 기관 장	일반직	전산직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특정업무직 (B)	
													의사직	기타직
합계	정원	2,124	1,936	10	177	13	140	987	30	381	49	149	41	147
	현원	2,240	1,932	8	160	10	95	1,071	28	370	43	147	78	230
본부	정원	50	44	0	38	1	0	1	0	4	0	0	0	6

157) 시중의 민간병원에 비하여 처우부분은 비교적 낮고 업무강도는 비교적 높거나 동등하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

158)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지원자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159) 입원환자 2.5명당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는 의료 관계법령에도 못미치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법정인력에 비해 간호직의 현 정원은 297명 상당이 부족함.

직종별 기관별	합계 (A+B)	소계 (A)	소속 기관 장	일반직	전산직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특정업무직 (B)		
												의사직	기타직	
현원	63	55	0	36	10	0	5	0	1	3	0	0	8	
소속 기관	정원	2,074	1,892	10	139	12	140	986	30	377	49	149	41	141
	현원	2,177	1,877	8	124	0	95	1,066	28	369	40	147	78	222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케어센터 제외.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의사의 경우 처우 문제로 영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노력 중이고¹⁶⁰⁾ 간호사의 경우 역시 처우문제¹⁶¹⁾와 업무강도 외에 간호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면서 공급이 줄어 신규인력확보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므로 2016년 이후부터 인력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

[간호직 관련 처우문제나 업무강도 문제]

1. 민간병원과 처우문제

- 소속병원 간호직 초임 연봉은 26백만원으로 사립대병원 평균 34백만원, 민간중소병원 27백만원 등 민간병원 초임 평균 연봉 수준에 미치지 못함

[보건의료노조 3년 미만 직원 평균임금]

구분	사립대병원	특수목적병원	민간중소병원	비고
평균임금(백만원)	34	32	27	2013년 기준

160) 산재병원 의사직 평균 근속 연수 3.9년으로 잦은 결원에 따라 진료공백 등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례로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채용시 11회 채용 공고 실시하여 총 7개월 소요된 바도 있음.

161) 20대 신입간호사의 경우 초봉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약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함.(단순비교하자면, 민간병원 초임 3천만원대 초중반, 산재병원 2,600만원 상당 등으로 볼 수 있음.)

2. 업무강도

- 타 공공 의료기관 및 국립대학교병원 간호등급 2~3등급 수준이나, 공단 소속병원은 최하등급인 6~7등급 운영중으로 간호등급 7등급 기준 간호인력 1명당 6병상 이상 관리

※ 간호 2등급 : 간호인력 1인당 2.5병상~3.0병상 관리

[공공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 간호등급 현황]

구분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일산병원	평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급	2	1	2	3.6	2	4	4	4	4

구분	국립대학교병원										
	평균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급	2.6	1	2	3	2	3	3	3	3	3	3

그러나, 산재병원의 이러한 인력 부족의 문제는 2014년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분임. 특히 의사진의 확충문제와 간호인력의 부족문제¹⁶²⁾는 산재병원의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의견제시와 논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여 결국 해가 바뀔수록 사례가 누적된 측면이 있음. 현재의 의료전문인력 부족·결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다소 시급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162) 부족문제 외에도 기존 간호인력이 고령화되고 일부 휴직 등의 결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6) 연구기관지원(4054-353)

가) 사업 개요

연구기관지원사업은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임.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개요]

<p>재활공학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직무지원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제공 - 임상과 연계한 과학적 재활치료·훈련 기법 연구 및 보급 통한 산재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의 선진, 과학화 구현
<p>직업성폐질환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성폐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관련성 관련 전문조사(역학조사),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수행

2014년도 계획현액은 85억 600만원인데, 이 중 8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788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연구기관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8,506	0	0	8,506	8,228	278	96.7	96.7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운영 개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진폐 사망여부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역학조사와 진폐사망자문 등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상당한 업무과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첫째, 역학조사의 경우 최근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2013년 362건에서 2014년 1,153건으로 218% 증가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처리건수 또한 2013년 199건에서 2014년 610건으로 206% 증가함. 이에 따라 전문조사 처리일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즉, 2011년에 78.6일이던 처리일수는 2014년 157.1일로 약 2배 길어짐.

[전문조사 의뢰 / 전문조사 심의 결과 / 처리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전문조사 의뢰			전문조사 심의 결과				처리일수
	당해	이월	합계	합계	인정	불인정	기타	
'10	22	3	25	22	17	5	-	81.2
'11	67	3	70	62	45	16	1	78.6
'12	156	8	164	108	73	34	1	92.7
'13	306	56	<u>362</u>	<u>199</u>	108	84	7	123.9
'14	990	163	<u>1153</u>	<u>610</u>	301	275	34	157.1

둘째,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의 경우에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12. 1. 1부터 일괄수행하게 되면서 역시 업무과중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처리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자문조사 의뢰 / 자문조사 결과 / 처리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자문조사 의뢰			자문조사 심의 결과				처리일수
	당해	이월	합계	합계	인정	불인정	기타	
'12	298	-	298	186	105	79	2	99.0
'13	288	112	400	292	146	143	3	130.3
'14	256	108	364	251	130	118	3	131.0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늘어난 업무량을 반영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연구위원 2명씩, 책임연구원 1명씩 증원하였음. 그러나 인력미충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2014년 정원 21명 중 현원이 15명에 불과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이러한 역학조사나 자문조사 외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고유업무가 있으므로, 역학조사 등에 기관의 역량을 몰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201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정원 · 현원]

(단위: 명)

구 분	총계	소장	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전임 연구원	일반직	전문직
'12	15	1	2	3	3	2	4
'13	18	1	4	4	3	2	4
'14(정원)	21	1	6	5	3	2	4
'14(현원)	15	1	4	3	5	2	0

※ 현원에는 특정업무직 1명이 포함되지 않음

향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고 역학조사와 진폐사망자문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관련 인력(조직)과 운영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연도별 정원 및 인건비 예산]

(단위: 명,백만원)

구분	총계	소장	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전임 연구원	일반직	전문직	예산 (인건비)
'12	15	1	2	3	3	2	4	672
'13	18	1	4	4	3	2	4	913
'14	21	1	6	5	3	2	4	1,285

다.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4100 프로그램)

1)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결산 개요

2014회계연도 산재기금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의 계획현액은 3,287억 1,300만원으로, 이 중 3,255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합 계	328,713	325,545	3,168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91,400	91,285	115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43,184	42,168	1,016
안정인증및안전검사(4152-352)	7,497	7,139	358
유해작업환경개선(4153-350)	19,680	19,421	259
근로자건강보호(4153-351)	14,887	14,549	338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24,949	24,049	900
안전보건연구개발 및국제협력(4155-350)	8,400	8,254	146
산재예방시설건립(4156-350)	500	500	0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 (4156-351)	14,608	14,608	0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4157-350)	3,448	3,412	36
산재예방시설용자(4158-350)	100,160	100,160	0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에는 계획액 914억원 중 912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500만원을 불용함.

[2014년도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1,400	91,400	91,285	115
내역 사업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79,400	87,787	87,787	0
	산업단지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	10,000	1,613	1,613	0
	클린사업장 사후 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2,000	0	1,885	115

주: 산업단지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의 계획 대비 수요가 적어 집행가능금액(1,613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자금으로 변경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는 2014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산업단지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 ‘산업단지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¹⁶³⁾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163)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

동 사업은 당초 산업단지 당 10억원을 한도로, 10개소를 지원(소요비용의 50%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연도 내에 16억 1,300만원을 집행하는 데에 그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19개소가 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2개소는 지원결정을 자진 취소하였음. 지원신청 금액은 총 51억 8,800만원으로 이 중 48억 2,400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하였고, 2014년도 내에 16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에 잔액 2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14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신 청	지 원 결 정	지 급
개 소	10	19	19	7 (17)
금 액	10,000	5,188	4,824	1,613 (4,006)

주: 1. 신청 산업단지 19개소 중 2개소는 지원결정 자진취소, 미지급된 나머지(2,453백만원)는 2015년도에 투자완료되어 자금지급 완료됨.

2. 괄호는 2015년 지급완료된 건수 및 금액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와 같이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당초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고, 사업 준비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첫째, 2014년 지원결정건수(19건)는 당초 계획(10건)보다 많았으나, 개소당 지원액이 약 2억 3,600만원(계획은 10억원)에 그쳐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이는 산재예방시설의 설치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둘째,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2013년 말부터 부처 합동공모¹⁶⁴⁾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 규정이 2014년 3월에서야 개정¹⁶⁵⁾되었고, 이에 따라 신문공고를 통한 사업안내, 산업단지 방문 홍보 등이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신청 산업단지 투자계획 확인 및 결정 등은 7월 이후에 진행되어 2014년 지원결정액 중 연도 내 실제 집행된 금액의 비율이 40% 정도에 그친 것임.

그 외에, 2014년 지원대상자 결정 시 해당 사업의 재원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전원을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진 취소사례도 2건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신청접수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향후 사업 성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동 사업과 같이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 활용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4) 관계부처 합동, 「2014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246호, 2013.10.30.

16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4-12호, 2014.3.7. 개정)

3)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안전보건문화정착사업’은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사업임.

2014년에는 예산현액 249억 4,900만원 중 240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원을 불용함.

[2014년도 안전보건문화정착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안전보건문화정착	24,949	24,949	24,049	9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4년에는 이 중 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객들에게 안전보건정보와 사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청사에 안전보건홍보관을 설치함.¹⁶⁶⁾

안전보건홍보관은 2014년 10월 초에 개관하여 2014년 관람실적은 총 100여명에 불과함.¹⁶⁷⁾ 공단은 향후 울산 소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66) 안전보건홍보관 개요

-건립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신청사 로비 2층 일부

-사업규모 : 622㎡(188평)

-사업예산 : 950,000천원

-구성내용 : 홍보전시관은 3가지 테마(안전보건 정보제공, 분야별 각종 사례 전시, 안전체험 공간)를 기본으로 하여 설치·운영

167) 월 3~4회 부정기적으로 아동복지센터, 공단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전시관 관람을 실시함.

로 월 2~3회 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기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홍보관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활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고 2015. 5월에서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홍보관을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전국민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만성흡입독성시설 신축(4156-351)

‘만성흡입독성시설 신축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센터 내에 저농도·만성독성 화학물질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임.

2014년에는 계획현액 146억 80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음.

[2014년도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	14,608	14,608	14,608	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6억 8,900 만원을 포함한 계획액 152억 9,700만원 중 10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6,300만원을 이월하여 실적행률은 69.4%임.

당초 동 사업은 2014년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5년에 시험설비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사업 소요 일정 검토 결과 건축시공 기간과 시험설비 제작 및 설치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었으며, 건설공사와 시험설비 제작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성이 있어 2014년 일정을 변경한 바 있음.

[사업 추진 일정 2013년 12월 기준]

업무 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4	2/4	3/4	4/4	1/4	2/4	3/4	4/4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																			
설계용역	■	■	■	■	■	■	■	■	■	■	■									
설계VE 용역 (설계경제성 검토)			■	■	■	■	■	■	■	■	■									
기초공사 (발주포함)										■	■	■	■	■						
건설공사													■	■	■	■	■	■	■	■
시험설비 공사																	■	■	■	■

주: 당초계획 —■■■■■ 변경계획 ■■■■■■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2013.10, 1706쪽

그러나 2014년 추진 경과를 보면, 시험설비 제작 업체 계약이 2014년 12월 5일에서야 체결되는 등 사업추진일정이 변경된 계획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2014년 시험시설 신축이 지연된 것은 ①(건설공사) 연구·사무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경,¹⁶⁸⁾ ②(시험설비) 입찰추진과정에 과도한 시간¹⁶⁹⁾이 소요된 것에 기인함.

이와 같이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 예산이 2015년으로 이월되는 등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5년도 내 준공 및 2016년 시험가동 등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15년 5월 22일 현재 건설공사 추진율은 약 43%인데, 흡입시험시설의 설치에 약 3개월이 소요되고, 시험시설 설치는 건축공사가 약 80% 진행된 후 도입되어 조립·시공될 예정임을 감안하면,¹⁷⁰⁾ 흡입시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공정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2015년 12월 11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68) 설계 변경의 주요 사유는 독성연구를 수행할 연구원 등 60여 명이 근무할 연구·사무공간(780㎡)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음. 당초 설계에 연구·사무공간이 제외된 것은, 시험시설 구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사무공간은 향후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임. 그러나 추가로 확보 예정인 연구인력 등 60여 명이 근무할 공간이 없고,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험시설 내에 연구·사무공간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임.

169) 기술검토조달요청 2014.5.2., 시험설비 제작 업체 계약체결 2014.12.5.

17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2013.10, 1707쪽

라. 노동 행정지원 프로그램(7000 프로그램)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7084-209)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사업’은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제도를 도입하고, 사무대행실적에 따라 대행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¹⁷¹⁾[참고자료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개요]

동 사업의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임.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결산내역: 2012년~201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2년	7,835	7,835	6,914	88.2	921
2013년	7,835	7,835	6,985	89.2	850
2014년	7,393	7,393	6,990	94.5	40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2년 이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매년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임.

17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사업은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사업주지원금’,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으로 구성됨.

산재보험관리기구제도는 하역작업 및 하역근로자 노무공급체계와 관련이 있는 구성원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구(산재보험관리기구)를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주(보험가입자)로 의제하여 소속 하역근로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임.¹⁷²⁾

산재보험관리기구제도가 201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동 사업에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 지원금¹⁷³⁾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2년에 5억 1,8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2013년에는 3백만원, 2014년에는 1,500만원을 집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1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①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근로자공급사업자"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하며, 보험관계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2. 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소멸 사실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73) 징수사무지원금: 근로자 1명당 2,000원(분기별 지급)

피보험자관리사무지원금: 근로자 1명당 1,000원(분기별 지급)

보수충액신고지원금: 법정신고기한내(3월 15일) 신고시, 근로자 1명당 4,500원(3월말까지 신고한 경우 근로자 1명당 3,600원)(분기별 지급)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결산내역: 2012년~2014년]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불 용 액
2012년	518	0	0	518
2013년	518	3	0.6	515
2014년	488	15	3.1	47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당초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예산은 전체 보험료의 5%를 지원금으로 추정¹⁷⁴⁾하였으나, ①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이 저조하고, ② 과도한 예산 산출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먼저, 2015년 6월 현재,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 현황을 보면, 총 5개의 산재보험관리기구만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499명의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구성) 현황]

연 번	명 칭	성 립 일	구 성 지 역	하 역 근 로 자 수
1	중부권 농수산물시장 산재보험관리기구	2013.3.29	대전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21명
2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위원장 산재보험관리기구	2013.8.15	삼천포수협위원장	63명
3	통영수산업협동조합 위원장 산재보험관리기구	2014.1.1.	통영수산업협동조 합 위원장	52명
4	부산권 냉동창고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2014.7.1.	부산 서구 암남동 외 69 곳	1,233명
5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방어진 위원장 산재보험관리기구	2014.7.2.	울산수산업협동조 합 방어진위원장	30명

주: 하역근로자수는 2014년 상시근로자수 기준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174) 국세청의 납세조합 방식의 예에 따름.

당초 동 산재보험관리기구제도가 도입되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역근로자 등을 산재보험 내로 편입하여 하역근로자 등의 사회 안전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실제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 실적이 미흡하여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산재보험관리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당초 항만, 철도, 시장, 창고의 상시근로자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연간납부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간납부보험료의 5%(지원율)를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하역업체·화주)·이해관계자 단체(사업주·화주단체 등) 상호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 특수한 적용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모든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전제로 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6. 임금채권보장기금

가. 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1) 체당금지급(3053-303)

가) 사업 현황

“체당금지급” 사업¹⁷⁵⁾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면서(「임금채권보

17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⑦ (생략)

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등) 향후 동 사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14년도 계획현액은 2,633억 2,100만원이며, 이 중 2,632억원 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 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체당금지급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63,321 (당초:252,484)	0	0	263,321	263,209	112	100	100

나) 변제금 회수 제고 노력

동 사업은 1998년 노사정 공동으로 합의한 대로 파산·도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하고자 시행되었고 매년 4~5만 여명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사업주진의 경과 및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장수	인 원	금 액
합 계	29,695	640,581	2,701,150
'14	2,815	50,152	263,209
'13	2,665	44,741	223,919
'12	2,514	48,650	232,319
'11	2,541	50,230	235,552
'10	2,888	58,718	263,884
'98-'09	16,272	388,090	1,482,267

그런데 동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체당금을 구상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 상대) 변제금 징수(누계)는 매년 답보적이거나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미회수 채권 총액이 1조원을 육박하고 있음.

현재 각 체당금 지급사유별 체당금 지급현황 및 변제금 회수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점차 결손처리도 늘어나고는 있으나 미회수 변제금 누적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체당금 지급현황 및 변제금 회수현황]

□ 지급사유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명, %)

연 도	계	도산등사실인정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12년	48,650 (100)	32,926 (67.7)	5,025 (10.3)	10,699 (22.0)
'13년	44,741 (100)	32,229 (72.0)	3,029 (6.8)	9,483 (21.2)
'14년	50,152 (100)	32,538 (64.9)	4,939 (9.8)	12,675 (25.3)
총계	143,543 (100)	97,693 (68.1)	12,993 (9.1)	32,857 (22.8)

□ 체당금 지급사유별 회수현황

○ 도산등사실인정

(단위: 명, 억원, %)

연 도	회 수 대 상		회 수		결 손 처 리	
	사업자수	금 액	사업자수(%)	금액 (%)	사업자수(%)	금액 (%)
'14년	27,044	20,711	9,498(35.1)	7,502(36.2)	9,404(34.8)	6,147(29.7)
'13년	24,712	19,108	8,857(35.8)	7,117(37.2)	7,974(32.3)	5,188(27.1)
'12년	22,446	17,596	8,176(36.4)	6,717(38.2)	6,665(29.7)	4,226(24.0)
'11년	20,323	16,082	7,429(36.6)	6,225(38.7)	5,020(24.7)	3,041(18.9)

* 매년 말까지의 누계 자료임

○ 파산선고의 결정

(단위: 명, 억원, %)

연도	회수 대상		회 수		결 손 처 리	
	사업자수	금 액	사업자수(%)	금액 (%)	사업자수(%)	금액 (%)
'14년	726	1,485	403(55.5)	532(35.8)	177(24.4)	301(20.2)
'13년	547	1,245	314(57.4)	489(39.3)	132(24.1)	246(19.8)
'12년	412	1,058	225(54.6)	435(41.1)	98(23.8)	178(16.8)
'11년	321	851	180(56.1)	420(49.3)	69(21.5)	136(16.0)

* 매년 말까지의 누계 자료임

○ 회생절차개시결정

(단위: 명, 억원, %)

연도	회수 대상		회 수		결 손 처 리	
	사업자수	금 액	사업자수(%)	금액 (%)	사업자수(%)	금액 (%)
'14년	1,925	4,810	1,249(64.9)	2,510(52.2)	117(6.1)	302(6.3)
'13년	1,621	4,026	993(61.3)	2,104(52.3)	68(4.2)	156(3.9)
'12년	1,357	3,487	775(57.1)	1,623(46.7)	45(3.3)	108(3.1)
'11년	1,057	2,883	546(51.7)	1,273(44.1)	18(1.7)	48(1.7)

* 매년 말까지의 누계 자료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무자력·무재산으로 인한 제도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주의 재산·과세자료 등을 적시에 확보할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¹⁷⁶⁾ 변제금 회수의 실적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변제금 회수율(%)”을 두고 있는데 그 성과지표의 목표는 50%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동 사업에 따른 변제금 회수는 기금고갈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며 미래의 체불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성을 가짐. 변제금 회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근

176)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로복지공단이 단기목표및 중장기적 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추진하여 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임.

변제금 회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변제금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지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자구책으로 13개 채권관리 거점기관을 두어 회수율 제고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담당 직원이 동 사업의 변제금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융자사업, 신용보증사업 등과 관련한 원금·이자 등을 회수하는 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며, 변제금 회수 업무 외에 다른 고유업무가 있으므로 전담직원의 전문성·업무몰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에서 비롯하는 것임. 변제금 회수의 문제는 향후 미회수채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¹⁷⁷⁾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4: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회수실적 제고방안”]

177) 회수체계의 구축, 전담 조직·인력의 확충·배치,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 성과지표의 도입, 각 지역본부·지사별 성과 경쟁체제의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다)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노력

체당금은 경영이 악화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나,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체당금의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부정수급 반환율이 낮으므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당금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 도	'10	'11	'12	'13	'14
적발건수 (근로자수)	15 (169)	7 (27)	26 (55)	39 (324)	11 (213)
부정수급액	818	99	159	1,198	1,051

* 부정수급 유형: 위장폐업, 임금 등 부풀리기,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등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근로자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결국 전체 기금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신고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사후 적발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부정수급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으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과 달리 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정수급조기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보완 등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임.

다만,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체당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관리체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이 부정수급 조사 사업(4053-351)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에 비해 아직 뚜렷한 지표관리나 성과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 부정수급 문제는 철저한 조사나 형벌의 엄격한 집행¹⁷⁸⁾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체당금 지급단계, 변제금 회수단계 등에서 습득하고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나 근로복지공단직원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후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임.

178) 실제로 체당금 부정수급의 사례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임.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가) 사업 개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보전·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동 사업에 관한 협약서]

2014년 동 사업의 계획액은 202억 9,900만원이고, 이 중 197억원을 집행하고 5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0,299	0	0	20,299	19,700	599	97.0	97.0

[동 사업의 집행실적179]

○ 2014년도 사업실적

(건, 명,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사 건 수	36,971	42,957	49,093	61,869	59,703	59,002	64,425	66,706	67,338
인 원 수	90,740	109,907	114,048	145,871	130,675	127,781	136,218	134,056	125,992
구조금액	5,023	5,878	6,602	8,878	8,022	8,750	9,441	9,111	8,408

○ 2014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액(A)					소요액(B)					지출액(C)			미정 산액 (B)-(C)	잔액 (A)-(C)
	이월	출연금	이자	회수금	합 계	이 월	수 리 송 용	변호사 보 수	합 계	소송 비용	변호사 보 수	합계			
'06	1,405	3,205	37	1,371	6,018		3,339	2,287	5,626	3,339	2,287	5,626	0	392	
'07	392	6,083	3	4,030	10,508		7,472	4,035	11,507	6,851	3,295	10,146	△1,361	362	
'08	362	8,006	7	5,539	13,914	1,361	8,663	4,338	14,362	9,236	4,677	13,913	△449	1	
'09	1	9,377	1	7,422	16,801	449	10,712	5,687	16,848	10,759	6,042	16,801	△46	0	
'10	0	8,891	12	8,058	16,961	46	12,283	5,455	17,784	11,941	5,017	16,958	△826	3	
'11	3	9,317	4	9,028	18,352	826	12,238	5,525	18,589	12,580	5,772	18,352	△237	0	
'12	0	9,783	3	9,650	19,436	237	13,591	6,163	19,991	13,469	5,967	19,436	△555	0	
'13	0	19,867	※	※	19,867	555	12,423	6,102	19,080	12,545	6,535	19,080	0	787	
'14	0	19,700	※	※	19,700	0	13,046	6,151	19,197	13,046	6,151	19,197	0	503	

※ 회수금 : 인지대, 공탁금 등 법원납부 비용 중 소송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환급된 소송비용 전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은 소송비용 일부금액 (1/2)임

※ 2013년 이자(금3백만원)와 회수금(금8,041백만원) 국고세입 처리
2014년 이자(금3백만원)와 회수금(금9,178백만원) 국고세입 처리

179)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자료임.

나) 회수금 관리 노력 필요

동 사업에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 사건당 법률구조업무를 종료하면서 법원이나 상대당사자(패소상대방)로부터 받는 회수금¹⁸⁰⁾은 ① 인지대, 공탁금 등 법원납부 비용 중 소송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환급된 소송비용 등과 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은 소송비용 등임.

이 중 2013년도에는 회수금이 80억 4,1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91억 7,800만원이었음¹⁸¹⁾. 이러한 회수금은 이미 선납한 금원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는 부분(이하 “법원회수금”이라고 함)이 있고, 「민사소송법」 등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되는 부분(이하 “상대방회수금”이라 함)이 있음.

[동 사업의 진행절차]

< 고용노동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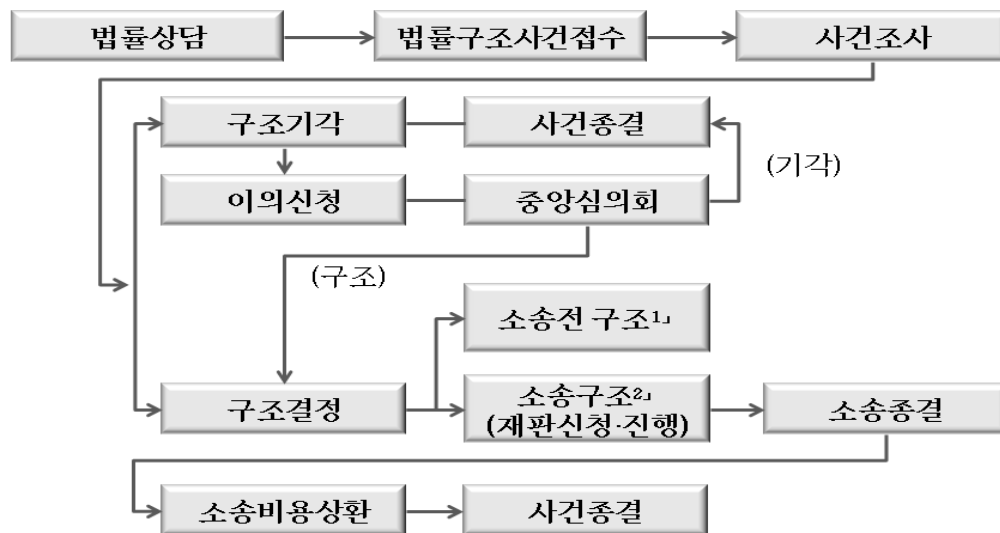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토록 안내→해당 근로자가 직접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요청→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실시

180) 위 그림에서 소송비용상환이라고 도식화되어 있음.

181)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간 협약을 통해 이 중 1/2만 고용노동부에 돌려주게끔 하고 있음.

- 사업과 관련한 월별비용정산이 이루어지고, 법률구조공단이 선납한 소송비용, 인지대, 공탁금 등을 회수하거나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반납하게 됨.

<대한법률구조공단>



- 1] 소송전 구조 : 소송 제기 전 화해 또는 조정 성립 사건
- 2] 소송구조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민사소송대리

이러한 회수금을 보면, 회수금 규모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50%상당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사업확대, 소액체당금제도시행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회수금을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회수금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회수금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임. 현재 회수금은 법원회수금과 상대방회수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법원회수금이 절차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회수될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상대방회수금의 경우 상대방의 무자력·연락두절·집행거부(방해)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 회수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속 지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상대방회수금을 집행하고 미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바가 있음.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권회수 업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회수금 관리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공기관 등 포함)가 행사하는 채권의 경우 재정원칙 상 지속적인 채권관리(체납·독촉)를 하고 회수불능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결손 등의 방식으로 불능부분을 처리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권관리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¹⁸²⁾. 따라서 동 사업에 있어서 체납·독촉부터 결손처분 등에 이르는 국가채권관리의 통상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채권회수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회수금 관리의 성과 제고 부분임. 2014년도의 경우 전체 회수금 중 상대방회수금은 전체 91억 7,800만원 중 12억 5,100만원으로서 13.6% 수준에 불과함. 특히 이 부분은 지난 10년간 회수율이 계속 떨어

182) 비교사례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체당금 회수 부분, 대위변제금 회수 부분 등을 공단의 각 지사(거점본부 포함)를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결손 등을 통해 채권손실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해 오고 있음.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동 사업의 체계를 개편할 경우 비교사례를 참조하여 전사적인 채권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이 부분은 바로 앞에 기술된 “채당금지급(3053-303)”에서 그 구체적인 현황과 지적사항이 드러나 있음. 이를 참고 하기 바람.

어지고 있고 회수금에 있어서도 변화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회수금 관리의 성과를 높일 필요성은 있다고 봄. 특히, 이러한 상대방회수금은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업으로 충분히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회수금(회수율)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지출금	회 수 금			
		전체 회수금		상대방 회수금	
	합계(A)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B)
2006	5,626	1,371	24.4	412	30.1
2007	10,146	4,030	39.7	701	17.4
2008	13,913	5,539	39.8	611	11.0
2009	16,801	7,422	44.2	1,071	14.4
2010	16,958	8,058	47.5	1,524	18.9
2011	18,352	9,028	49.2	1,445	16.0
2012	19,436	9,650	49.7	1,405	14.6
2013	19,080	8,042	42.1	1,278	15.9
2014	19,197	9,178	47.8	1,251	13.6


넷째, ‘소액채당금 제도’의 시행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채당금제도는 사업주의 도산·파산 등의 사유가 없이도 근로자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채당금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동 사업 또한 확대되리라고

예상됨. 다만, 소액채당금제도의 이면에는 체불사업주 등에 대한 적절한 원금·비용회수 등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무자력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액채당금제도에 있어서는 상대방회수금의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소액채당금 제도시행을 예고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포스터 일부]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아직까지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나요?
법원의 확정판결('15. 7. 1. 이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못받은 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대신 지급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 1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되었고,
* 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자인 경우에는 직장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 2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 '15. 12. 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얼마를 지급 받나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어떻게 하면 소액채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다.
- 2 체불금증확인서를 신청해서 발급받는다.
-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 무료법률구조는 최종 3달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 4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5 임금 완료

1350 | www.moel.go.kr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총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4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자금조달)				지출(자금운용)			
구 분	계획(A)	실적(B)	대비(B/A)	구 분	계획(A)	실적(B)	대비(B/A)
합 계	528,843	621,411	117.5	합 계	528,843	621,411	117.5
☐ 자체수입	300,446	367,052	122.2	☐ 사업비	208,928	208,544	99.8
고용부담금	280,158	341,958	122.1	고용장려금	141,740	141,729	100.0
가산금	728	547	75.1	출연사업비	66,685	66,312	99.4
기타경상이전수입	5,540	7,633	137.8	민간경상보조	503	503	100.0
용자원금회수	7,134	7,353	103.1	☐ 기금운영비	48,963	48,637	99.3
기타재산수입	6,703	9,393	140.1	공단 인건비	37,493	37,216	99.3
기타민간이자수입	183	168	91.8	공단 기금운영비	11,268	11,268	100.0
				기타 기금운영비	202	153	75.7
☐ 정부내부수입	25,000	25,000	100.0	☐ 정부내부지출	22,501	3,427	15.2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100.0	복권기금반환금	3,428	3,427	100.0
				공자기금 원금및이자상환	19,073	0	0.0
☐ 여유자금회수	203,397	229,358	112.8	☐ 여유자금운용	248,451	360,803	145.2

이 기금의 주요재원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¹⁸³⁾ 2.7%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¹⁸⁴⁾이고, 2014년에 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계획액은 2,801억 5,800만원이며, 3,419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음.

그 밖에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0억원이 전입되었고, 여유자금회수 2,293억 5,800만원 등 기금총액은 6,214억 1,100만원임.

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 달성하여 장

183)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구 분		의무고용률	비 고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3.0%	2%(‘91년) → 3%(‘09년)
	근로자	2.7%	2.3%(‘10년) → 2.5%(‘12년) → 2.7%(‘14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3.0%	2%(‘91년) → 3%(‘10년)
	기타공공기관	3.0%	2%(‘91년) → 2.3%(‘10년) → 2.5%(‘12년) → 3%(‘14년)
민간기업		2.7%	2%(‘91년) → 2.3%(‘10년) → 2.5%(‘12년) → 2.7%(‘14년)

* 외국의 의무고용률: 프랑스 6%, 독일 5%, 일본 1.8~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2.12.18)으로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그 밖의 출자·출연기관의 의무고용률이 ‘14.1.1부터 현재 2.5%에서 3.0%로 상향

184) 최근 6년간(2009-2014) 고용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말 기준)

연 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율
2009년	151,771	144,860	4,136	2,775	95.4
2010년	149,947	146,086	3,065	795	97.4
2011년	219,130	214,384	4,596	150	97.8
2012년	250,506	243,466	6,589	451	97.2
2013년	326,515	318,777	7,157	581	97.6
2014년	351,962	341,958	8,812	1,192	97.2

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417억 2,900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사업비와 기금운영비 1,149억 4,900만원, 민간경상보조 5억 300만원 등 1,188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3,608억 300만원을 적립하였음.

나.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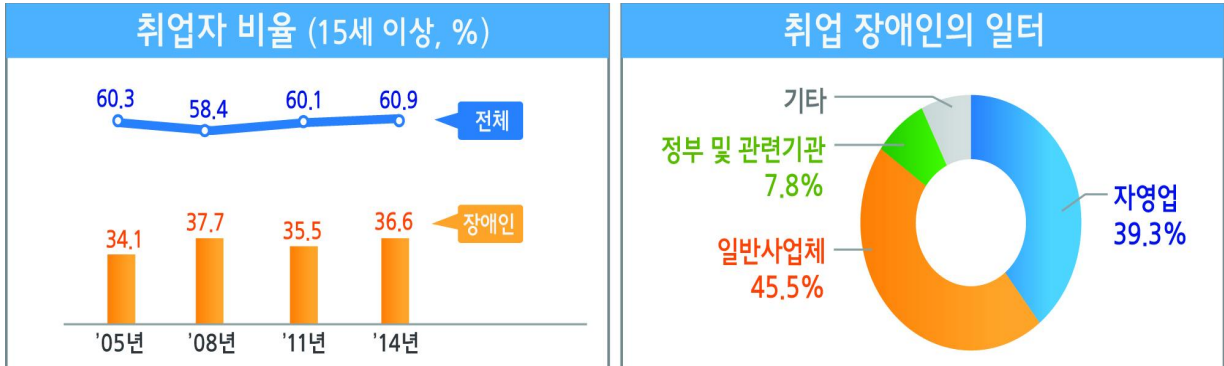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8,56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된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결과¹⁸⁵⁾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36.6%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사됨.

185) 장애인구 및 출현율 등

구 분	2005년	2008년 ¹⁾	2011년	2014년
• 장애 추정 인구수	214만명	-	268만명	273만명
• 장애 출현율	4.59%	-	5.61%	5.59%
• 장애 등록률	77.7%	-	93.8%	91.7%
• 후천적 장애 발생률	89.0%	90.0%	90.5%	88.9%
• 65세 이상 장애인구	32.5%	36.1%	38.8%	43.3%
•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1.0%	-	17.4%	24.3%

* 주 : 1) 2008년도 실태조사는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출현율 제시안됨

[장애인 취업률 및 실업률 동향]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의 경우 정보의 부족 및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사업장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으나, 장애인 일자리의 부족으로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제한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또한 2014년 결산현황을 보면 이 기금의 수입은 6,214억원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420억원으로 55%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471억원으로 지출액(6,214억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현황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는 2010년 1,461억원에서 2014년 3,42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장려금 지출은 고용부담금에 비해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증가주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장애인고용부담금(수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출)		차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0	146,086		152,050		-5,964
2011	214,384	46.8	129,227	-15.0	85,157
2012	243,466	13.6	128,074	-0.9	115,392
2013	318,777	30.9	139,250	8.7	179,527
2014	341,958	7.3	141,740	1.8	200,218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파른 증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및 의무고용주체의 범위 확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부담기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의 차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금고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보임.

기금의 지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지출이 고용부담금 수입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기금수지 악화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정책 사업을 확장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 등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입의 과소계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으로 2014년에 계획액은 2,802억원이고, 3,52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인 3,420억원을 수납하고 100억원은 미수납 및 불납결손 하였음.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	예산대 비수납액 (C/A)	수납율 (C/B)	미수납율 (E/B)
부담금	2,802	3,520	3,420	12	88	122.1	97.2	2.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고, 최근 2년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계획액 대비 실적액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50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담금 수입계획 추계를 면밀히 하여 수입계획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2년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년 수입(자금조달)				2014년 수입(자금조달)			
구 분	계획(A)	실적(B)	대비(B/A)	구 분	계획(A)	실적(B)	대비(B/A)
합 계	472,433	532,327	112.7	합 계	528,843	621,411	117.5
☐ 자체수입	305,310	351,381	115.1	☐ 자체수입	300,446	367,052	122.2
고용부담금	270,476	318,777	117.9	고용부담금	280,158	341,958	122.1
가산금	873	380	43.5	가산금	728	547	75.1
기타경상이전수입	4,999	6,487	129.8	기타경상이전수입	5,540	7,633	137.8
용자원금회수	21,777	17,254	79.2	용자원금회수	7,134	7,353	103.1
기타재산수입	6,647	8,101	121.9	기타재산수입	6,703	9,393	140.1
기타민간이자수입	538	382	71.0	기타민간이자수입	183	168	91.8
잡수입	-	-	-				
☐ 정부내부수입	33,000	33,000	100.0	☐ 정부내부수입	25,000	25,000	100.0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100.0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100.0
복권기금전입금	8,000	8,000	100.0				
☐ 여유자금회수	134,123	147,946	110.3	☐ 여유자금회수	203,397	229,358	112.8

라. 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1)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453-304)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를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지원의 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의 2014년도 계획액 149억 3,9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전년도 이월액 8억 8,300만원을 포함한 12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3,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계획 대비 실집행률은 85.7%임.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14,939	14,939	14,939	883	15,822	12,806	1,532	1,468	85.7

일반 표준사업장 지원은 표준사업장 설립시 실제 투자금액의 75%를 지원하되,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소 3억원(10명~15명)에서 최대 10억원(31명 이상)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2015년까지 MOU를 체결한 경우 실제 투자금액의 50%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임.

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집행관리 철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무상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공단은 무상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함.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8조 및 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처리규칙」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경영안정성 및 투자계획 심사 등을 통해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지원금 일부를 1차 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투자를 완료한 후 장애인표준사업장 2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무상지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해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이행 여부와 실제 투자금액, 신규고용의무 이행 사실 등을 확인하고 나머지 2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점검 결과¹⁸⁶⁾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3개소 사업주가 가짜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허위 투자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의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사전에 공단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2차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음.

향후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공단은 사업주의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무상지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법령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일반 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기능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표준사업장지원 경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18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감사원, 2015.2)

[2014년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세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 (A)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실 집 행 률 (B/A)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4,939	883	15,822	12,806	1,532	1,484	85.7
• 일반 표준사업장	12,060	650	12,710	9,756	1,532	1,422	80.9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395	233	2,628	2,582		46	107.8
• 관로지원 및 운영	484	-	484	468	-	16	96.7

이는 설립 추진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실제 투자실행 단계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경영사정에 따른 투자규모 조정 등으로 기업의 지원금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일반 표준사업장 지원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일정 조정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일반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명, %)

구분	연도	업체수				예산액	지원금액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률
		신청	선정	취소	유지					
일반 표준 사업 장	2007	57	20	11	9	10,000	3,270	276	202	61.6
	2008	42	15	8	7	7,540	3,780	146	121	39.7
	2009	43	20	5	15	7,872	5,825	295	241	64.4
	2010	66	17	1	16	6,323	5,935	417	339	47.2
	2011	59	16	4	11	5,865	5,795	203	156	53.1
	2012	45	18	2	9	5,325	5,291	203	175	52.2
	2013	67	27	1	26	8,844	8,402	398	304	49.3
	2014	82	27	-	27	12,060	10,638	257	185	38.0
	총계	461	152	32	120	63,829	48,936	2,195	1,723	49.8
자회 사형 표준 사업 장	2008	3	3	-	3	2,200	2,200	287	154	47.9
	2009	5	5	1	4	3,775	3,275	118	84	60.2
	2010	6	6	-	6	4,000	3,406	148	93	59.0
	2011	10	10	2	8	4,795	2,790	351	209	71.3
	2012	6	6	1	5	4,795	1,269	234	149	41.6
	2013	11	10	1	10	4,790	3,759	376	245	53.0
	2014	10	10	-	10	2,395	2,349	36	24	97.3
	총계	51	50	5	46	26,750	19,048	1,550	958	53.6

* 2014년도 선정업체는 시설투자 및 장애인 고용 진행 중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비교]

(2014.12.31. 기준)

구 분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 립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시 근로자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고용인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명 미만</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시 근로자수 의 100분의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시 근로자수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명 이상 30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 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p>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 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지 원 조 건	실제 투자금액의 75%를 지원하되, 사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음	실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되, 사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음										
지 원 한 도	10억원 ¹⁸⁷⁾	<좌 동>										
지 원 기 간	7년(고용의무기간) ¹⁸⁸⁾	7년(고용의무기간)										
사 업 장	174개소	46개소										
장 애 인 수(중 증)	3,269명(2,531명)	1,552명(961명)										
주 요 업 종	공산품, 식품, 제조업 등	콜센터, 세탁, 사무지원 등										

187) 장애인 10명~15명: 3억원, 16명~20명: 5억원, 21명~25명: 7억원, 26명~30명: 9억원, 31명 이상: 10억원

188)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공단 내규)

2) 장애인취업지원(1456-311)

가) 사업개요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직업적 제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를 제시하며, 취업알선 구인·구직 등 장애인 고용촉진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4년도 계획액 80억 3,700만원을 장애인공단에 전액 교부하여 78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장애인취업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장애인 취업지원	8,037	8,037	8,037		8,037	7,865	46	126	97.9

나) 사고이월 부적정

장애인공단은 용역개발비 낙찰차액,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등을 사용하여 2014년 12월에 당초 계획에 없던 중증장애인인턴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4,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건축설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를 말하며, 용역개발비는 전산용역 및 기술용역 등 국가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러함에도 장애인공단은 2014년 12월에 중증장애인인턴제 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용 등의 절차 없이 2개의 예산과목에서 집행한 점, 당초 계획에 없던 정보화시스템 개발을 연말에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점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향후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중증장애인인턴제 시스템 구축 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약금액	예산과목	금액	계약일자
중증장애인인턴제 시스템 구축	92	201-09 (시설장비유지비)	34	2014.12.17
		207-01 (용역개발비)	58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사업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사업의 201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192억 3,600만원 전액을 장애인공단에 교부하였으며, 장애인공단은 18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목코드	목 명	계 획 액	교 부 액	이·전 용 등	예 비	예 산 현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201	일반운영비	7,557	7,557	266	-	7,823	7,754	-	69	8,741
202	여비	248	248	20	-	268	267	-	1	276
203	업무추진비	59	59	-	-	59	58	-	1	72
204	운영수당	1,917	1,917	△288	-	1,629	1,158	-	471	1,762
207	용역개발비	190	190	-	-	190	169	-	21	310
208	훈련수당	958	958	-	-	958	480	-	478	701
209	잡금	-	-	-	-	-	-	-	-	49
210	기타직보수	21	21	2	-	23	23	-	-	21
402	시설비	2,485	2,485	-	-	2,485	2,485	-	-	1,059
403	자산취득비	2,161	2,161	-	-	2,161	2,161	-	-	1,320
404	보증금	3,640	3,640	-	-	3,640	3,596	-	44	-
합 계		19,236	19,236	-	-	19,236	18,151	-	1,085	14,311

가) 수요거점형 훈련센터 사업의 집행 부적정

수요거점형 훈련센터 사업은 공단 산하 5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이 있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임.

이 사업은 훈련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경비외에 훈련수당, 운영수당, 임차료, 건물관리비 등을 당초 10개월 운영을 계획하여 편성하였으나, 장애인훈련접근성과 훈련규모에 적합한 임차물건 선정에 애로가 있어 동 훈련센터의 실제 개소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은 2014년 9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음.

그런데 훈련센터 설립 경비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공단은 훈련수당,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불용예상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연말에 당초 계획에 없던 홍보비, 기념품구입,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였고, 운영수당(204목) 불용예상액에서 2억 4,0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시설장비 확충 등의 경비로 집행하였음.

이는 회계연도 말에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기획재정부, 2014)」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공단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수요거점형 훈련센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주요집행내역
	계	6,200	-	6,200	5,624	576	
	201(일반운영비)	907	240	1,147	1,115	32	
일 반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20	250	270	265	5	부동산중개수수료지급:34 인테리어설계용역:18 라디오광고료:48 훈련교재등구매:148 홍보물품제작:17
	02 (공공요금및제세)	8	10	18	17	1	근저당권등기등록세:13 업무용차량취득세,등록비:2 업무용차량종합보험등:1 홍보리플렛우편송부등:1
	04 (급량비)	102	- 90	12	8	4	스타벅스코리아등5개과정:3 스타벅스코리아등6개과정:4 케이디텍등3개과정:1
	07 (임차료)	367	- 220	147	137	10	임차료 납부(8~12월): 137
	09 (시설장비유지비)	382	290	672	664	8	관리비납부(8~12월):174 인테리어공사대금(조달청):4 16 장애인편의시설추가공사:11 전화,인터넷설비공사등:62
	11 (재료비)	28		28	24	4	전기전자실습재료:9 전자재료:8 훈련재료등:7
	203(업무추진비)	3	-	3	3	-	
	01 (사업추진비)	3		3	3	-	설치위원회회의등:1 유관기관업무협의를등2
	204(운영수당)	644	- 240	404	41	363	
	01(위촉수당)	644	- 240	404	41	363	외부강사위촉수당(9~12월) 등:40 설치위원회위촉수당:1
	208(훈련수당)	130	-	130	10	120	
	02 (직업훈련수당)	130		130	10	120	훈련수당(9~12월) 지급: 10
	403(자산취득비)	876	-	876	859	17	
	01 (자산취득비)	876		876	859	17	훈련용장비등:778 업무용차량등자산취득:81
	404(보증금)	3,640	-	3,640	3,596	44	
	01(보증금)	3,640		3,640	3,596	44	보증금계약금:360 보증금잔금:3,236

나)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형훈련사업 실적 저조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형훈련 사업은 훈련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훈련직종 교육이 가능한 폴리텍대학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1,900만원만 집행하고 편성액의 95.1%인 3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 함.

[2014년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형훈련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형훈련	384	-	-	19	-	365	5.7

이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의 34개 캠퍼스에서 연간 목표인원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1인당 월 116만원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2014년 교육실적을 보면 선박용접 1개과정의 13명만 교육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실적이 미진함.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형훈련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맞춤훈련직종 (업체명)	기 간	인원	산출근거	집행액
2013년	컴퓨터응용 프로그램 (삼성디스플레이)	'13.09.23 ~ '13.10.18 (132h)	14	1,571천원×14명	22
2014년	선박용접 유한회사 벅스코 등 2곳	'14.10.22 ~ 12.12	13	1,461천원×13명	19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은 장애인 맞춤형훈련 연계로 1회 훈련시 훈련기간 1개월이상, 훈련생 10명 이상 모집 및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대기업 등 맞춤형훈련업체에서 한번에 10명 이상의 구인 수요가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그러나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맞춤형훈련 실적이 1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맞춤형훈련업체 등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하였고, 사업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의하여 훈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봄.

8. 근로복지진흥기금

가.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3061-302)

가) 사업 개요

동 사업은 전국 6개소에 임대아파트를 운영함으로써 독신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2014년도 계획현액은 26억 5,500만원임. 이 중 2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655	0	0	2,655	2,653	2	99.9	99.9

직장여성아파트는 서울,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 등 총 6곳에서 운영중이며 입주정원은 1,634명임¹⁸⁹⁾. 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현황 및 소재지는 다음 표와 같음¹⁹⁰⁾.

189) 입주요건은 미혼 또는 기혼 독신여성근로자로서 월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임.

190) 직장여성아파트의 보증금은 40만원(작은방은 20만원), 임대료는 월 7만원(작은방은 4만 6,500원)임.

[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현황 및 소재지]

(단위 : 명)

아파트	입주정원	입주가능 인원	대기자 수	주 소
구로	200	0	1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35
부천	198	0	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작로292번길 41-9
인천	398	39	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17번길 57
대구	198	11	0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로36길 6
부산	400	47	0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15
춘천	240	20	0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15

나) 중장기적인 입주자 관리방안 마련 필요

직장여성아파트는 ‘입주 대기 장기화’문제, ‘장기공실’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입주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15.5) 서울구로와 경기부천 아파트의 경우 대기자수가 각각 188명, 23명에 이르고 거주기간을 경과한 장기입주자 문제¹⁹¹⁾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서울구로와 경기부천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대기자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이러한 과밀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적정화, 보증금 및 임대료 상향 등 대기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함.

191) 장기입주자 문제란, 일부 거주자들이 2년 거주기간 + 2년 연장기간을 보장한 운영방침(공단의 2011년 방침)에 불응하고, 10년, 20년 이상씩 서울구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 하였던 사건과 관련한 부분임.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져 2014.9에 대법원에서 아파트 퇴거 및 인도 부분이 전부인용되었던 사건임. 그러나, 이후 2014년 12월, 2014년 4월에 각각 집행이 무산된 바 있음.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어, 장기입주자 문제는 공단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구로나 경기부천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음. 공단인접의 장점이 사라졌다거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했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동안의 시설관리비용, 시설개선·유지비용 등을 상당히 활용하면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임¹⁹²⁾.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소재지에 따라 1급지(수도권 과밀지), 2급지(수도권 비과밀지 및 광역지자체), 3급지(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데, ① 거주기간·비용 등에서 각 급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② 각 거주지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마련할 필요도 있으며 ③ 운영성과가 미흡한 아파트의 경우 향후 점진적인 시설축소개편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음¹⁹³⁾.

다) 외부 기관의 지적에 따른 운영개선 필요

동 사업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외부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¹⁹⁴⁾에서의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국회

192) 실제로 각 아파트의 업무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단도 없었고, 각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193)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입주 인원이 줄어든다면 과감하게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휴시설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전체적인 운영차원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음.

19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도 고용노동부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42페이지 이하에 동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적절성을 검토한 바 있음. 그 요지는, **첫째**, 향후 재정기준을 줄이고 수지차

의 지적사항은 크게 ① 기금의 재정의존도를 줄이는 경영합리화 방안 모색 ② 응익자부담방식의 아파트관리운영¹⁹⁵⁾ ③ 입주자에 대한 자립의지 독려방식 모색 ④ 동 사업의 적절한 출구전략방식 모색¹⁹⁶⁾ 등에 관한 것이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누적된 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방식변경¹⁹⁷⁾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임¹⁹⁸⁾¹⁹⁹⁾. 앞으로 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업목적과 전체근로자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층을 위한 복지시설사업으로 개편하거나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여성센터의 경우처럼 여성근로자를 위한 거주지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전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동사업의 적절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셋째, 동사업에 참여한 입주자에 대한 자립의지 독려가 필요하다는 것임.

195) 현재 인근지역의 일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거주비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수준임은 사업수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시세분석을 통해 잘 확인하고 있음.

196) 비교사례였던 서울시의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은 현재 종료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일단 잠정적으로 미혼 독신 여성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 미혼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하고, 남녀 공히 취업,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폐지를 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197) 보증금, 자립금을 포함하여 임대기간 등에까지 운영규정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198) 2015.5. 경 연구입찰을 공고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방향이 모색되거나 중간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미지수임.

199)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임대료 상향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5%정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법리상 법정 기한 내의 경우라고 할 것이고 대부분 2년의 입주기간이 지나 새로이 갱신하거나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검토할 필요가 있음(임료 상한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판례 등).

둘째, 기획재정부는 기금목적에 비추어 이 사업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와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음. 기획재정부²⁰⁰⁾는 2013년도, 2014년도에 동 사업의 계속 필요성에 관하여 지적하였으며, 즉시적인 종료가 어렵다면 현 상황에서 “(전체)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라는 기금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사업의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거듭하였음. 이러한 외부의 지적을 참조하여 향후 기금의 운용방향에 맞춘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요약]

연도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10	휴양콘도지원이나 문화예술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등의 비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2012		근로자복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70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음
2013	기존 효율화(매각) 대상이었던 직장여성아파트 및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소수가 아닌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적으로 리모델링 등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종료(직장여성아파트)를 사전 전제하거나 가격이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매각하는 원칙(근로자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세워, 중기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의 유지를 권고함	

200)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금운용평가보고서 등

2)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3061-314)

가) 사업 개요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을 통하여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2009년에 「근로복지기본법(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선택적복지제도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새로이 규정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중소기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

2014년도 계획현액은 11억 7,600만원임. 이 중 1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14년도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176	0	0	1,176	1,131	45	96.2	96.2

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필요

동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중요하다고 볼 것임.

그러나, 동 사업 지속적인 추진에도²⁰¹⁾ 불구하고 기업복지제도²⁰²⁾를 도입한 사업장은 아직 미미한 숫자로서 그 증가율 또한 매년 5%상당에 머무르고 있음.

[연도별 지원 대상범위 현황²⁰³⁾]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업수(개소)	1,504,675	1,517,132	1,604,247	1,684,671
증가율(%)	-	0.82	5.74	5.01

[연도별 컨설팅 지원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업수(개소)	1,612	1,866	2,551	2,820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직 개별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업 관련 민간업체²⁰⁴⁾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나,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201) 2014년도에 2,820개소를 컨설팅 지원하였음.

202)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시혜적 복리후생이라기 보다는 복지포인트제도나 성과(인센티브)의 복지연계제도 등 제도를 통한 복지지원체계를 예로 들 수 있겠음.

203)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참조.

204)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 이지웰페어(선택적 복지), (사)한국EAP협회 등.

첫째, 선진기업복지컨설팅에 있어서는 컨설팅 사업의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봄. 동 사업을 통해 컨설팅의 지원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대상이 넓어지고 있으나, 컨설팅의 성과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임. 사업목적인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은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우회사주제도의 활성화, 중소기업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관행적인 목표 설정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²⁰⁵⁾. 이를 위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확보 및 컨설팅 비용 현실화 등 질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둘째, 다각적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제도(EAP)가 필요하다는 것임. 현재 동사업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있고, 직무스트레스, 관계갈등, 재무관리, 법률관리, 성희롱·성폭력 등 11개 분야에 걸쳐 있음²⁰⁶⁾. 이러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기존 방식대로 단순반복적인 상담에 머물러 있기에 그 사업범위나 목적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활성화할 여지가 충분함. 앞으로 감정노동관련 상담·지도, 근로자 근로능력 저하요소 관리²⁰⁷⁾, 선진적 인

205) 이러한 측면은 이제껏 동 사업 전반과 컨설팅 사업부분이 거의 변화없이 사업규모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6) (사)한국EAP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손실시간이 줄어들고 비효율근무가 감소되었다는 등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207) 이러한 근로능력 저하요소는 그 관리가 필요한데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충분한 근로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환경을 해치는 요소의 관리임. 쉽게 소속 근로자의 알콜 중독,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프로그램 외에도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사관리·성과관리 체계 도입, 전문분야 자문·컨설팅, 공공EAP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기존의 심리상담(고민·애로·문제 등 전반영역 상담)에 치중하였던 EAP사업의 저변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의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내용, 지원방식 등을 대폭 다변화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14)

가) 사업 개요

동 사업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고용보험기금) 사업의 대부대상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보증사고) 금융기관에 이를 대위변제하는 사업임²⁰⁸⁾²⁰⁹⁾.

2014년도 계획현액은 108억 1,700만원임. 이 중 107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건강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의미함.

208) 따라서 위 각 사업은 융자의 활성화 부분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고, 동 사업의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짐.

209) 참고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용자사업(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에는 동 사업(신용보증 대위변제)에서 회수를 검토하지는 않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회수율의 체계적 관리라는 문제는 그 관점이 동일함.

[2014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결산]

(단위 :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0,817	0	0	10,817	10,765	52	99.5	99.5

나)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화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체 또는 불이행 등의 보증사고²¹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위변제총액은 1,307억 3,900만원이며, 이 중 회수된 채권액은 440억 3,400만원임. 미회수채권은 867억 500만원인데 이 중 343억 7,500만원은 결손처분되어 관리채권액은 523억 3,000만원임. 이미 상당부분 결손처분되고 있으나²¹¹⁾ 아직도 여전히 많은 523억 상당(대위변제액의 40%)의 미회수채권(결손부분 제외)이 남아 있는 상태임.

210) 각 사업마다 다르나 사고율은 대개 4.5~6% 상당인 경우가 많음. 대위변제한 금액은 전체 신용보증액 대비 5.84로 측정되고 있음('02~'14년).

211) 이러한 결손에 대하여 201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관)에서는 “근로자 대상 용자사업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 많은 금액의 대손상각이 있으므로 결손을 줄이고 사업을 건전화할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된 바 있음.

[신용보증 구상채권 현황('02 ~ '14년)]

(단위 : 백만원)

신용보증액 (A)	대위변제(B)	채권회수(C)	미회수채권 (D=B-C)	결손처분액 (E)	관리채권액 (F=D-E)
2,237,208	130,739 (A 중 5.84%) (100%)	44,034 (33.68%)	86,705 (66.31%)	34,375 (26.29%)	52,330 (40.02%)

채권회수율은 매년 증가추세였다가 2011년에 감소한 후 그 후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2011년 29.29%, 2012년 29.84%, 2013년 31.82%, 2014년 33.68%)

채권회수는 사업의 영속적인 운영과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꼭 담보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향후 채권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¹²⁾.

첫째, 채권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화가 필요함.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국 6개 지역본부, 7개 거점지사 별로 담당자를 두어 방대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채권관리담당자는 동 사업에 따른 채권 외에도 채당금과 관련한 사업주 변제금, 기타 채권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채권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효율도 저하될

212) 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스스로도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수지개선을 위해 기금이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과업이고, 그동안 기금 내에서 비공식적·임의적으로 활용되던 분할상환 위주의 채무조정을 체계화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위 보고서, 26페이지 이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부분은 향후 예산 및 조직과도 연계하여 적극적인 구상이 필요함.

둘째, 채권관리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미 민간에서는 직접 회수전담인력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채권관리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연체가 시작될 경우부터 조기에 채권을 관리한다거나, 사후에 상환이나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 이자감면·분할상환 등의 유인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장기적인 채권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업수행주체로서는 현행 채권관리의 수단 외에도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를 지속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고²¹³⁾ 자료제공요청의 법적 근거²¹⁴⁾를 통해 선진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여지도 있음.

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손실의 보전방안 마련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2009년도부터 용자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그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²¹⁵⁾ 지속적으로 “각 기금의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해당 기금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보전하여

213) 근로복지공단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정보를 제공(등록)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14)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름.

215) 국회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에 해당 명목으로 전출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출금 편성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해결의 방안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고려하여, 타 기금의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구됨. 특히 중장기적으로 용자규모가 상승할 경우에 신용보증규모도 자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2년 예결위에서 '11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 타 기금사업의 대위변제로 인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적자 보전대책 마련
- ('12년 환노위에서 '13회계연도 예산 검토 시) 타 기금 대부사업의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비용을 모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13년 환노위에서 '12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 타 기금 대부사업의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비용을 모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14년 환노위에서 국정감사 시) 근로자 대상 용자사업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 많음 금액의 대손 상각이 있으므로 결손을 줄이고 사업을 건전화할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

Ⅲ.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는 184억 7,100만원이 배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예비비는 에특회계의 진폐위로금지급사업의 집행을 위해 에특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었음.

[일반회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특별회계 전출금	18,471	18,471	0	0

201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특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184억 7,1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에특회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진폐위로금 지급	18,471	18,471	0	0

장해등급 판정 관련 행정심판 취소 재결, 평균임금 관련 지침 변경, 사망자수 증가 등으로 인해 진폐위로금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임.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개요

- 30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관리·보험료 납부 사무를 위임·대행,
 - **(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개인노무사(2년이상 경력) + 개인세무사(2년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 * '14년말 보험사무대행기관은 969개소에 불과하나, 「보험료징수법」 개정 에 의해 대행기관으로 진입 가능한 2년 이상 경력의 개인세무사는 7,899명
 - **(대행업무)**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등
 - **(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지급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제2014-80호) >

구 분	지 원 내 용	
징수사무 대행지원금	건설업·별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한 경우(수납률 80% 이상), 반기별 16,000원 지원	
피보험자 관리 등 대행지원금	피보험자신고(고용)	분기별 12,000원(4명 이상 신고시 4,000원 추가지원)
	고용정보신고(산재)	
	보수총액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시 년 단위 지원 (1~4인 18,000원 / 5~29인 24,000원)
적용촉진 장려금	미가입사업장을 발굴, 성립신고 한 경우 1개소 당 40,000원 지원	

- **(업무 처리)** 대행기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행기관의 이름으로 고용보험시스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 보험 사무 신고 대행업무 수행

[참고자료 2] 고용영향평가사업 정산조서

위탁사업 정산조서

용역명 :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

(금액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A)	집행(정산)금액		차액(A)-(B)	비고
		산출내역	금액(B)		
인건비	책임연구원	33,206,635	3,018,785원×1명×100%×11월	33,206,635	-
	연구원	387,028,206	2,314,762원×10명×100%×11월 2,314,762원×8명×65%×11월	387,028,206	-
	연구보조원	351,478,736	1,547,342원×2명×100%×11월 1,547,342원×2명×65%×11월 1,547,342원×17명×55%×11월 3,094,684원×4명×100%×11월	351,478,736	-
	보조원	38,298,018	1,160,546원×1명×100%×11월 1,160,546원×4명×50%×11월	38,298,018	-
	소계	810,011,595		810,011,595	-
	경비	연구조사비	1,320,000,000	과제 연구조사비	1,283,414,667
여비		37,237,000	국내출장(김해, 대전, 안양 등) 국외출장(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30,781,444	6,455,556
유인물비		115,750,000	자료 복사 및 제본, 보고서 인쇄	114,345,825	1,404,175
전산처리비		84,020,000	시스템유지보수, 프린터 토너, 등	74,899,900	9,120,100
연구용재료비		58,000,000	기업정보DB, 도서자료 등	55,018,000	2,982,000
회의비		123,560,000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96,417,538	27,142,462
임차료		137,946,600	사무실 임차 및 회의실 임차	137,715,306	231,294
교통통신비		6,040,000	DM발송료 및 우편료, 사내출장비 등	5,857,180	182,820
소계		1,882,553,600		1,798,449,860	84,103,740
일반관리비	126,434,805		126,434,805	-	
이윤	-		-	-	
합계	2,819,000,000		2,734,896,260	84,103,740	

위와 같은 내역으로 예산이 집행(정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4. 12. 26

수탁기관명 : 한국노동연구원

대표자 : 이 인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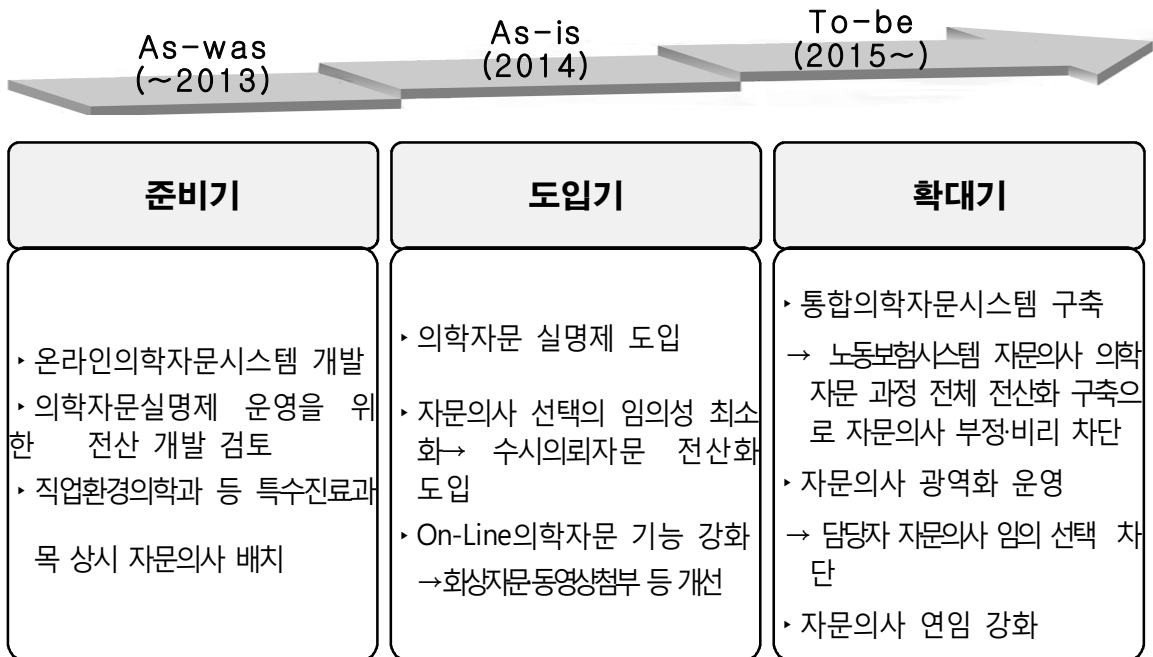
[참고자료 3] 소속기관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

소속기관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안)

I 추진배경 및 목적

- 의학자문시 담당자가 자문의사(상시, 수시 등) 임의선택에 따라 자문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추가 배치
 - 특수진료과목 상시 자문의사 위촉을 통해 권역별(거점지사별) 특수진료과목에 대한 자문의사회의 개최 지속적 요구
- 이에 자문의사 운영 문제점 해소와 자문실적 분석을 통한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안) 마련
 - 소속기관 자문의사 체계적 운영·관리와 투명성 확보

II 자문의사 운영 추진전략



III 자문의사 운영 현황

1. 진료과목별 자문의사 현황

○ 총 1,629명중 정형·신경 전문의가 39.2% 차지

- 전문위원과 상시 자문의사는 자문의뢰 사유가 많은 정형·신경외과 위주로 운영
- 수시 자문의사는 자문의사회의 운영과 특수 진료과 수시 자문 등을 위한 진료과로 위축

(단위 : 명, %)

구분	총계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치과	기타
계	1,629	388	251	65	90	193	75	153	75	68	88	183
전문위원	21	9	12									
상시	178	93	65	12	2	1	1	1	1	1	0	1
수시	1,430	286	174	53	88	192	74	152	74	67	88	182
(비율)	(100.0)	(20.0)	(12.2)	(3.7)	(6.2)	(13.4)	(5.2)	(10.6)	(5.2)	(4.7)	(6.2)	(12.7)

2. 의학자문 실적 현황

○ 직업환경의학 수시자문의사 추가배치에 따라 수시자문 건이 7.2% 증가하는 등 총 0.2% 증가

(단위 : 명, 건, %)

구분	요양환자수	계	전문위원	상시	수시
'14년 상반기	34,041	241,824	85,422	134,304	22,098
'13년 상반기	34,358	241,293	80,223	140,452	20,618
증감율	-0.9	0.2	6.5	-4.4	7.2

3. 자문의사회의 개최 현황

○ '14년도 상반기 자문의사회의는 832건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

-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자문의사회의 건수 47.7%로 대폭 증가

(단위 : 건, %)

구분	개최횟수	심의안건 내용				
		계	최초요양(재요양포함)	진료계획	추가상병	장해보상

'14년 상반기	832	13,928	430	3,676	853	8,440	529
'13년 상반기	677	11,334	550	3,731	781	5,713	559
증감율	22.9	22.9	-21.8	-1.5	9.2	47.7	-5.4

4. 자문수당 지급현황

- 자문의사회의 개최횟수 증가(장해등급판정 등)에 따라 자문의사회의 수당 22.2% 증가 등 총 7.6% 증가
 - 상시 자문수당은 특수 진료과목 추가 배치(6명)로 3.5%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상시	수시	자문의사회의
'14년 상반기	1,891	955	366	568
'13년 상반기	1,758	923	369	465
증감율(%)	7.6	3.5	-0.7	22.2

5. 전문과목별 수시자문 실적 및 수당 현황

- '14년도 특수진료과목 상시 자문의사 배치, On-Line 의학자문 도입 등으로 안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은 감소하였으나,
 - 근골격계 업무상질병 조사 지침 개정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수시 자문이 96.7% 증가하였고, 수당은 125.9% 증가
 - 한편, 소속기관 상시 자문의사 중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88.7%임에도 수시자문 실적이 각각 14.2%, 5.6% 차지

(단위 : %, 건, 천원)

진료과목	'14년 상반기 자문 점유율	'14년 상반기 자문실적	'13년 상반기 자문실적	자문실적 증감율	'14년 상반기 자문수당	'13년 상반기 자문수당	자문수당 증감율
정형외과	14.2	623	673	-7.4	55,150	59,720	-7.7
내과	15.1	660	627	5.3	52,570	52,428	0.3
안과	13.0	567	620	-8.5	49,100	55,980	-12.3
치과	14.9	651	589	10.5	54,140	50,710	6.8
이비인후과	9.0	393	393	0.0	34,520	35,370	-2.4
정신건강의학과	7.1	310	314	-1.3	25,800	28,020	-7.9
비뇨기과	6.7	293	317	-7.6	24,030	27,342	-12.1
신경외과	5.6	245	246	-0.4	21,490	23,140	-7.1
직업환경의학과	8.2	360	183	96.7	28,530	12,630	125.9

6. 의학자문 실명제에 따른 상시 자문의사 자문 실적 현황

- '14년도 상반기 정형·신경외과 상시 자문의사 1인당 자문실적의 편차가 큼
- 정형외과 최다 자문실적은 1,563건, 최저 자문실적은 38건으로 41배 이상 차이
- 신경외과 최다 자문실적은 1,036건, 최저 자문실적은 50건으로 20배 이상 차이

(단위 : 건, '14년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				신경외과			
최다		최저		최다		최저	
소속기관	자문건수	소속기관	자문건수	소속기관	자문건수	소속기관	자문건수
천안지사 최00	1,563	안산지사 이00	38	창원지사 김00	1,036	안산지사 하00	50
부천지사 김00	1,228	서울동부지 사 나00	64	영주지사 심00	817	대전지역본 부 고00	51
양산지사 공00	1,169	성남지사 홍00	69	부산북부지 사 조00	805	인천북부지 사 장00	62
부산동부지 사 김00	1,149	서울남부지 사 정00	112	대구북부지 사 황00	752	포항지사 이00	62
고양지사 안00	1,128	안산지사 박00	134	부산동부지 사 최00	710	대구지역본 부 김00	74

7. On-Line 의학자문 시스템 활용 현황

- 특수진료과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On-Line 의학자문은 462건이 실시되어 활성화 추세
- 다만, 직업환경의학 부문은 조사자료 대응량(동영상 등)과 재해조사내용 등을 직접 대면 확인하고자하는 자문의사의 성향에 따라 31건에 불과

(단위 : 건, %, '14년 상반기 기준)

구분	자문실적	점유율	의뢰건수	회신건수	회실폐기건 수	미처리
계	462	100	470	423	39	8
안과	207	44.9	209	197	10	2
이비인후과	85	18.4	85	79	6	0
비뇨기과	57	12.5	58	57	0	1
내과	53	11.5	53	42	11	0
직업환경의학 과	31	6.4	36	20	11	5
정신건강의학 과	29	6.3	29	28	1	0

※ On-Line 의학자문은 '14. 4. 1.부터 전면 개시

IV 운영상의 문제점

1. 자문의사 운영·관리체계 미흡

- 2014.3.1.부터 민원서류 의학실명제 도입됨에 따라 의학자문실적이 저조한 상시 자문의사에 대한 형평성 간존
 - 전체 상시 자문의사 1인 1회 평균 자문건수가 31.6건으로 파악되나 자문활용도가 저조한 자문의사에 대한 해촉을 통해 자문의사 내실화 필요
 - 이와함께 의학자문 과정 및 내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2. 자문의사 운영 탄력성 결여

-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조사 지침」에 의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은 대폭 증가하고 있고
 - 국회 등 외부에서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한 판정을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위촉 지속 요구
 - 예산 운영의 한계로 추가 확대 배치에 한계

3. 수시 자문수당 기준 불명확

- 현재 수시 자문수당은 1회 방문당 90,000원으로 되어 있어 자문 건수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소속기관마다 지급 사례 상이*하므로 기준 정립 필요
 - * 예) 1회 1건 90,000원, 1회 1-3건 90,000원, 1회 2건 또는 3건 180,000~210,000원 등 지급
- 한편, 특정지사의 특정 수시 자문의사(정형외과, 신경외과) 자문수당이 상시자문수당 이상으로 지급되는 부적합한 사례*
 - * 서울본부 정00 수시자문(정형) 724건, 성남지사 나00 수시자문(정형) 202건 & 박00 수시자문 190건, 전주지사 서00 수시자문(정형) 453건, 충주지사 김00 수시자문(정형) 715건, 등

V 개선방안(안)

1] 의학자문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의학자문 실명제 등)** 의학자문 실명제 도입으로 의학자문에 대한 책임성·공정성 강화하고 신규 위촉 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 교육(부서장) 실시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유도
- **(On-Line 의학자문 활성화)** 상시 자문의사 확대 배치를 통한 On-Line 의학자문 지원강화, 자문 과정·자문결과의 전산화를 유도, 자문제도의 투명성 제고
- **(자문수당 프로세스 개선)** 상·수시 자문수당 전산화
 - 수시 자문수당 지급에 따른 **자문소견을 노동보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함**으로써 의학자문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노동보험 전산 프로그램 개발 중(14.10~11월)이므로 추후 적용안내 통보 예정

- **(자문의사 평가제도 도입)** 위촉된 자문의사의 연임 기준을 강화하여 자문의사 연임 시 의 학자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 등 **자문의사 적격 여부를 재판단** 할 수 있는 자문의사 평 가제도를 도입

-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자문의사 재위촉에 대한 체계적 평가기준 구축

현행	개정(안)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통합의학자문시스템 전산화 구축 및 자문의사 광역화 운영

- 자문의사의 의학자문 과정 전산화 구축으로 자문의사 광역화 운영

- 노동보험시스템의 민원서류 접수 단계부터 자문결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의학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의학자문 전산시스템 방안 마련**하여
- 담당자의 임의 자문의사 선택 차단하고, 부정·비리 위험요소가 높은 추가상병·재요양 등 **통합의학자문시스템 단계적 운영**

※ 자문의사 자문시 재해자의 요양의료기관과 주치의사 알 수 없도록 시스템 통제

< '15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

추진내용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의학자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문의사 광역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본부 전산개발 사전 의뢰 '14. 12월 - 타 공공기관 벤치마킹 '15. 1월 - 관련 실·국 업무협약(TF팀 구성) '15. 2~4월 - 노동보험 시스템 전산개발 의뢰 '15. 5~10월 - 통합의학자문시스템 및 자문의사 광역화 단계적 운영실시 '15.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의사 평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연구센터 연구 '15. 3~7월 - 자문의사 평가방안 마련 '15. 8~9월 - 산재의료전문위원 워크숍 토론회 선정 '15. 10월 - 본부·소속기관 의견 수렴 '15. 10월 -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15. 11월 	

3] 자문의사 재배치

- 자문의사 의학실명제 실적에 따른 **소속기관별 자문의사 조정·배치**(붙임 2)
 - 상시 자문의사 격주 운영 도입(단, 안정적 예산 운영을 위해 단계적 확대 예정)

상시 자문의사 조정·배치기준

- ❖ 소속기관별 상시 자문의사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단계적 확대조정 예정)
 - 근무형태별 전문위원 상시 인원 반영(자문지원 포함)
 - 특수 진료과목*은 단계적 추가배치(권역별 수시자문의뢰 상위 지사 순위 적용)
 - * 내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 ❖ 소속기관별 자문빈도 진료과목 반영한 상시 자문의사 격주 운영 권장
 - 진료과목별 전문분야 고려한 동일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 조정 운영
 - [예 : A지사 신경(뇌) → A지사 신경(뇌) 격주, 신경(척추) 격주]
 - [예 : B지사 정형(관절) → B지사 정형(관절) 격주, 정형(척추) 격주]
 - 특수 진료과목 배치 시 권역별 배치 진료과목 & 지사별 자문의뢰 순위 고려
- ❖ 필요시 지사내지사간 진료과목 조정, 소속기관 협의시 진료과목 전환
 - [예 : A지사 신경 ↔ 정형 A지사 신경 ↔ B지사 정형]

- 특수 진료과목에 대한 안정적 자문의사회의 운영 및 On-Line 의학자문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상시 자문의사 단계적 추가 배치
 - 직업환경의학과 상시 자문의사 7명*과 수시자문의사 18명 신규 위촉 예정
 - * 안산지사, 부천지사, 천안지사, 경산지사, 청주지사, 광산지사, 포항지사 등

4 상시 자문의사 운영 강화

- **(상시 자문수당 지급기준 강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공단에 내방하여 상시작 정기적 자문 수행한 경우 월정액 90만원 지급 원칙(격주자문은 월 2회, 45만원)
 - 세미나 등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날에 자문 **미이행시 다른 날을 지정하여 자문실시**
 - ※ 월4회 자문수행이 안될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자문수당 공제
 - 예) 월 4회 기준 3회 자문한 경우 900,000원×3/4=675,000원 지급

5 수시 자문수당 기준 개선

- **(지급기준 조정)** 현재 회당 수시자문 수당을 건당으로 적용
 - 수시 자문수당 **1건당 30,000원 적용** (소속병원 수시자문수당 1건당 20,000원)
 - 적용일자 : '14. 11. 3.(월)부터 수시 자문의뢰 건
 - ※ 단가산정기준-타 공공기관 자문 수당(국민연금공단 장애자문건당 20,000원) 및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수수료 등 비교·검토한 수가로 보험급여국산재심사실 등 실국의 의견 반영하여 최종 단가 결정
 - 산재심사실은 소속기관과의 자문차별성에 따라 별도 운영(현행유지)
 - 심층 자문 필요시 온라인의학자문을 활용한 상시 자문의사 자문 권장

【 소속병원 소속 자문의사 수당 관련 】

- 소속병원 소속 자문의사 수당은 '10. 4월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이후 진료성과보상제도 지침 개정(11.02.28.)으로 '자문포상비' 명목 신설(자문의수당 55%수준*)
 - * 진료성과보상체계 강화 연구용역 결과 반영
 - 진료수익과 연계되지 않은 성과급으로 지사업무 수행에 따라 산재기금회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지방운영보상예산에서 지급
- 이후 진료성과보상제도 지침 개정 시('12.02.24.) 산재기금회계에서 집행되는 사유로 항목별 진료성과급에서 '자문포상비'가 삭제되었으나
 - 자문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으로 의학전문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수당이므로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관련 실·국 의견(보험급여국, 의료사업본부, 산재재활국)
 - 따라서 소속병원 소속 자문의사 수당은 현행 유지(상시자문수당 500,000원(1월 4회기준) 하되, 수시자문수당은 회당 50,000원에서 건당 20,000원으로 조정

VI

행정사항

- (자문의사 위축·해축·조정 조치) 소속기관장은 평균 자문실적이 저조한 상시 자문의사 등 조정검토 세부 내용[붙임2]에 따라 신규위축·해축 등 조정 조치 후
 - '14.11.28.(금)까지 소속기관별 상시 자문의사 위·해축 등 조정 결과를 [붙임 3]의 보고양식으로 보고
 - ※ 관련규정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7조 제2호 및 제5호 적용
 - 특수 진료과목 신규 위축 및 격주 운영 상시 위축의 경우 위축시작일은 '14.12.1.(월)부터 적용
- (통합의학자문시스템 전산화 구축) 자문의사의 의학자문 과정이 일률적으로 전산시스템화 되어 자문의사 광역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

【참고자료 4】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회수실적 제고방안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회수실적 제고 방안

I

- '14년 기준 변제금 누적 미회수액이 1조원에 달하여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강구

II

- 변제금 누적 회수실적

(’14. 12.말 기준, 백만원, %)

지급	회수	결손처리	미회수	정리율
2,701,149	1,054,315 (39.0)	674,964 (25.0)	971,869 (36.0)	61

* 일본의 체불임금대체지불제도의 '13년 기준 누적회수율은 25.2%임

- 공단 타 용자사업 회수실적과의 비교

(’15. 3월말 기준, 백만원, %)

용자사업명	회수대상금액	회수금액	회수율(누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475	364	76.6
임금체불생계비 용자	24,694	8,831	35.8
직업훈련생계비 용자 (전직실업자)	6,140	1,617	26.3
생활안정자금 용자	29,774	10,746	36.1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는 가동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변제금 회수업무의 환경과 상이함

III

()

- 회수환경의 악화

(단위: %)

구분	'12년	'13년	'14년
무재산 비율	49.1	50.7	63.6
부동산 비율	31.9	27.7	19.3

□ 사업주 재산파악의 지연

- 도산(가동중단)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됨
- 보험료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으로 내부정보(체납정보)를 활용한 도산업주의 재산 파악 불가
- 임금채권보장법령 상 사업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규정 불비로 자료제공의 강제수단 없음
- 건설교통부의 지적정보 회보시기가 해당금 지급 후 분기별 1회로 제한되어 사업주의 재산파악은 근로감독관의 도산여부 조사에 의존
 - * 도산사업장은 도산 당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허위 양도 및 경매개시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재산파악이 필수적임

□ 법정관리회사의 강제집행 및 최우선변제권 제약

- 회생회사
 - 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변제가 실시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제약
- 파산회사
 - 강제집행 불가하며 법원의 관리·감독관 행사 외 변제 강제 수단 없음
 -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채권자와 안분 배당
 - * 채권채권 중 우리 공단의 임금 및 퇴직금 대위금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체불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됨

□ 채권회수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미흡

- 타 기관과 달리 공단은 채권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모든 과정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 중급 이상의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업무경력이 필요
 - * 채관관리 거점기관 집적화로 축소된 회수인력 42명 중 2년 이상 업무 경력자는 20명에 불과
-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연 1회)과 주요 판례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으나 주로 업무매뉴얼, 동료직원의 경험 및 개별사건의 법률자문에 의해 업무를 습득하고 있어 심화 교육 과정이 필요
- 회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하고 있으나 업무부담(채권금액의 고액, 최우선변제대상)을 감안, 장기 경력자에 대한 인사가점 및 전보혜택 등 부여 필요

IV

□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산파악

- 고용노동부와 공단 간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재산내역 전산 연계·공유

-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내역을 공단에서 실시간 전산 조회 (실행 완료)
-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조사과정 중 확인된 재산내용의 공단 전산 송부 (추진 예정)
 - * 국토교통부의 재산회보는 체당금 지급 후 분기 1회로 정해져 있고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근거가 불비하여 고용노동부와 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정보공유가 채권회수에 가장 효과적 수단임
-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계약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을 통한 사업주의 거래채권 파악(실행 중)

□ 과세 및 거래정보 확보 및 기금수지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 사업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 개정 (추진 중)
 - *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계류 중
-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독촉절차에 있어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추진 중)
 - * 의원입법 발의 안 제출되어 국회 위원회 계류 중
 - ** 기대효과
 (시간) 소송절차 이행에 따른 특별송달 소요기간 및 변론기일 참석시간 절약
 (비용) 주소불명에 의한 본안소송 소요비용의 약 90% 절감 → 과거 3년간('12~'14) 비용 5억4천만원
- 파산사업장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재추진 예정)
 - * 타 재단채권자와의 안분배당(재단채권 중 임금 및 퇴직금의 비율이 낮음)으로 “무재산 사업장의 증가” 및 “과세정보 파악을 위한 법령 근거 불비”와 더불어 미수액 증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임
 - ** 기대효과: 파산사업장 회수금액의 3배 이상 회수 예상 → '14년 기준 파산사업장의 누적회수액: 532억원
- 부동산경매정보서비스를 이용, 도산 사업주 부동산과 관련한 경매사건 정보 파악(실행 완료)

□ 변제금 회수실적을 공단 내부경영평가와 연계

- 과거 5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베타분포 방식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여 미회수채권 최소화 및 회수 불가 채권의 적극 정리
- '15년 목표: 56.77%
 - 과거 실적: 53.32%('12년)→54.95%('13년)→56.27%('14년)
 - * (평가산식): [15년 12월말 현재 변제금 누적 회수액 / ('15. 6월말 현재 체당금 누적 지급액 - '15. 12월말 현재 누적 소멸정리 및 관리정지액)] × 100

□ 공단 및 소속기관별 회수 목표액 설정

- 공단의 변제금 회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소속기관별로 목표를 부여하여 현금회수 실적 향상 도모
- '15년 변제금 회수 목표액 : 94,612백만원
 - * '15년 기금운용계획 상 변제금 회수목표 87,128백만원 대비 7,484백만원(8.59%) 상향
 - * 전년 회수액 83,260백만원 대비 11,352백만원(13.63%) 상향
 - * 과거 3년 평균 회수액 87,499백만원 대비 7,113백만원(8.1%) 상향

□ 공단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권역별 채권 집중관리체계로 개편(55개소→14개소('12년)→13개소('14년))
- 법률자문을 온라인방식으로 개선 (실행 완료)
- 소송비용의 법인 신용카드 활용시스템 구축 (실행 완료)
- 대법원 전자공탁제도 도입 (실행 완료)
- 보증보험증권의 온라인 구매 및 본부 일괄 결제시스템 구축 (실행 완료)
- 사내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채권회수인력 전문성 강화 (하반기 추진 예정)
 - 일정기간 채권회수 경력이 있는 사내자격증 이수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및 전보혜택 부여
- 특이소송 적극 발굴을 통해 승소를 통한 회수금액의 2배 이상 회수
 - * 과거 3년간('12~'14) 특이소송 건수 132건, 평균 소가 4천만원 추정시 전체 소가는 53억임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동 사업에 관한 협약서
(2014년도에 개정된 것)**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변경협약서

2014. 12. .



고용노동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5. 6. 30. 체결한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금채불근로자들에 대하여 법률상담, 무료 법률구조, 기타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협약의 지원대상은 임금채불근로자로 하되, 지원대상 범위에 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는 국내거주의국민 근로자를 포함한다.

제3조(소요재원의 출연) ① “갑”은 “을”에게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소요재원을 출연한다.

② 출연금은 임금채불근로자 소송에 지출된 소송비용의 난이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변호사보수비용으로 하고, 매달 소요된 비용을 “을”의 출연금 지급 요청에 따라 다음 달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소송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출연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지급하고, 12월의 종결 사건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을”은 “갑”이 지원한 출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급된 출연금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과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을”의 비용과 노력으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비용의 1/2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갑”은 출연금에 대해 다음연도 1분기 중에 정산(불용금액, 출연금 집행내역 등)하고, 필요할 경우 출연금, 반환금 등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장부작성 및 열람) “을”은 “갑”이 지원하는 출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갑”은 동 장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① “갑”은 본 협약에 따른 “을”의 주요활동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매월 사업실적과 출연금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이행) ①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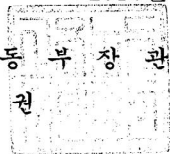
② “갑”과 “을”은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상대방이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성의 있게 협의·결정한다.

④ 본 협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겸 대행
손 기

